자치현안 정책 포커스 - 2024 - 제1호



자치현안
정책 포커스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입법정책담당관]

목 차

Ⅰ. 정부부처 주요 정책동향 (2024년 달라지는 시책)

《 행정자치위원회 》

1. 2024년 경제정책방향 (기획재정부) ····· 1
2. 기회발전특구 세액감면 신설 (기획재정부) ····· 11
3. 청년도약계좌 가입지원 강화 (금융위원회) ····· 12
4. 비전문 외국인력 특화훈련 확대 (고용노동부) ····· 13
5. 수의계약 적합성평가 강화 (조달청) ····· 14

《 환경복지위원회 》

6. 기초생계·의료급여 지원 확대 (보건복지부) ····· 15
7. 난임 시술비 지원 소득기준 폐지 (보건복지부) ····· 17
8. 24시 마약류 상담센터운영 및 예방교육 확대 (식품의약품안전처) ··· 19
9. 환경영향평가제도 합리적 개선 (환경부) ····· 20
10. 우리 바다에 대한 방사능 감시망 확대 (해양수산부) ····· 21

《 농산업경제위원회 》

11. 전략작물직불금 대상 확대 및 단가 인상 (농림축산식품부) ···· 22
12. 방치된 농기계 강제처리 제도 (농림축산식품부) ····· 23
13.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 조성 (농림축산식품부) ····· 25
14.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 시행 (고용노동부) ····· 27
15. 2024년 적용 최저임금 9,860원 (고용노동부) ····· 28
16. 소상공인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확대 (중소벤처기업부) ··· 30

《 문화건설안전위원회 》

17. 새로운 문화·체육·관광 정책 (문화체육관광부) ····· 32
18.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 확대 (고용노동부) ····· 34
19. 안전동행 지원사업 (고용노동부) ····· 36
20.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 (국토교통부) ····· 37

《 교육위원회 》

21. 늘봄학교 본격 도입 (교육부) ····· 44
22. 개정「학교폭력예방법」2024년 1학기부터 시행 (교육부) ··· 45
23. 유치원·어린이집 관리체계 일원화 (교육부) ····· 46

Ⅱ. 지자체 추진사업 사례

《 행정자치위원회 》

1. 자립준비청년 취업 역량강화 지원 (경기도) ····· 49
2. 저소득 다문화 자녀 교육활동비 지원 (인천광역시) ····· 50
3. 우수인재 해외유학비용 지원 (세종특별자치시) ····· 51

《 환경복지위원회 》

4. 어르신 병원동행서비스 운영 확대 (강원특별자치도) ····· 52
5. 서울시 마약관리센터 조성 (서울특별시) ····· 53
6. 국내 최초 전기 여객선 상용화 임박 (전라남도) ····· 54
7. 전국 최초 산림이용진흥지구 시행 (강원특별자치도) ····· 55

《 농산업경제위원회 》

8. 청년 농어업인 연령 50세로 상향 (경상남도) ····· 56
9. 충북형 도시농부 (충청북도) ····· 58
10. 그린수소 글로벌 허브 생태계 확장 (제주특별자치도) ····· 60

《 문화건설안전위원회 》

11. 전세사기 피해자 이사비 지원 (전라남도) ····· 61
12. 책 읽는 서울광장, 광화문 책마당 운영 (서울특별시) ····· 62
13. 지능형 CCTV 설치 확대 (서울특별시) ····· 63
14. 문화·체육·관광 행사 ESG 실천에 관한 조례 (경기도) ··· 64

Ⅲ. 주요 연구기관 발표 자료

《 행정자치위원회 》

1. 경제동향 ['24.1.] (한국개발연구원) ····· 67
2. '24년도 예산안 심의결과 주요내용 (국회예산정책처) ····· 69
3. 제1차 지방시대 종합계획 발표 (국회예산정책처) ····· 70
4. 기후변화 물리적리스크의 실물경제 영향 분석 (한국은행) ····· 71
5. 주4일제 사회와 전북의 대응 전략 (전북연구원) ····· 73

《 환경복지위원회 》

6. 노인일자리 확대를 위한 지자체 대응과 개선 방향 (지방행정연구원) ····· 75
7. 성인 발달장애인의 생애주기에 따른 정책욕구 분석 (국회입법조사처) ····· 79
8. 기후변화 취약계층의 사회적 취약성 실태조사 및 추진방향 (한국환경연구원) ····· 84
9. 전북의 생태 · 환경자산 정책 (전북연구원) ····· 88

《 농산업경제위원회 》

10. 생산가능인구감소 대응을 위한 기업 생산성 제고방안 (국제무역통상연구원) ··· 91
11. 주요국 축산부문 온실가스 감축정책과 시사점 (농촌경제연구원) ··· 93
12. 전라북도 소상공인 경영실태 및 지원사업 개선방안 (전북연구원) ··· 95

《 문화건설안전위원회 》

13. 전북대표관광지 육성사업 성과 및 발전방안 (전북연구원) ··· 97
14. 저출산 극복을 위한 주거지원 방안 (국회예산정책처) ····· 98

《 교육위원회 》

15. 지방교육재정 특별교부금 국회 보고 의무화 및 향후 과제 (국회입법조사처) ··· 99
16. 학교수업 내 에듀테크 활용 정도가 중학생의 교육적 성장에 미치는 영향 분석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연구정보원) ····· 101
17. 2023 교육기본 통계로 살펴본 한국 교육 현황 (한국교육개발원) ··· 105
18. 지방재정과 지방교육재정의 합리적 운영방안 (한국지방행정연구원) ··· 107

Ⅳ. 기타 참고자료

1. 광역의회 교섭단체의 의의와 과제 (한국지방행정연구원) ····· 115
2. 노동시장 격차 해소가 교육 과열 · 저출산 해결 열쇠 (중앙일보) ··· 117

Ⅰ. 정부부처 주요 정책동향

Ⅰ. 정부부처 주요 정책동향 (2024년 달라지는 시책)

1. 2024년 경제정책방향 (기획재정부)

《 행정자치위원회 》

◇ 경제운용 4대 기조 : 자유, 공정, 혁신, 연대 ⇨ "활력있는 민생경제"

1 민생경제 회복

○ 물가 · 서민생활 안정

① 상반기중 2%대 물가 조기달성 위한 총력 대응

② 서민 생활과 밀접한 핵심 생계비 부담 경감 노력 강화

③ 역전세 · 전세사기 등 피해 방지 및 서민 · 취약계층 주거지원 강화

○ 소상공인 · 취약계층 지원

① 소상공인 응원 3대 패키지* 시행

* (1) 영세 소상공인 전기료 감면 (2) 저리 대환 프로그램 (3) 부가세 간이과세자 부담 완화

② 취약계층 맞춤형 지원 및 중장년 일자리 지원 강화

○ 내수 · 수출 회복 가속화

① 세재 · 재정 인센티브를 통해 취약부문 중심의 소비 회복 지원

② 국내 지역관광 활성화 위한 내 · 외국인 정책지원 강화

③ '24년 수출 7천억불 및 해외수주 570억불 달성 뒷받침

④ 투자 조기 반등 위해 3대 분야 (세제 · 금융 · 애로해소) 특별지원

⑤ 역대 최대 외투 유치 (350억불) 및 유턴 촉진을 위한 지원 강화

○ 지역경제 · 건설투자 활성화

① (거점지역) 일자리 · 교육 · 도심융합 · 문화 등 주요 특구 본격 조성

② (인구감소지역) 「인구감소지역 부활 3종 프로젝트」 추진

③ (건설투자) 지역 중심 건설투자 활성화 위한 전방위적 지원 강화

2 잠재위험 관리

○ **부동산 PF 연착륙** : 선제적 유동성 지원, PF사업장 정상화

○ **가계부채 체계적 관리** : 가계부채 총량관리 목표설정, 고정금리 비율 확대

○ **공급망 안정 확보** : 공급망위원회 신설, 품목별 조기경보시스템 가동

○ **금융 안정 · 건전성 제고** : 금융 · 외환시장 '안정 노력' 지속, 건전성 관리

① 부문별 수급여건 개선 등 금융 · 외환시장 안정 노력 지속

② 시중은행 · 상호금융 · 저축은행 등 금융회사 건전성 관리

③ 한계기업에 대한 단계별 맞춤 지원 강화

3 역동경제 구현

○ **혁신 생태계 강화**

① 기업의 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과감한 규제완화 추진

② 첨단산업 클러스터, High5^{+} 등 중심 첨단산업 육성 가속화

③ 과학기술 글로벌 허브 도약을 위한 전방위적 R&D 혁신

④ 유망 · 성장업종 및 청년 친화 분야 등 서비스업 집중 육성

⑤ 중소기업 성장사다리 강화 및 벤처 · 창업 생태계 고도화

○ **공정한 기회 보장**

① 진입장벽 등 경쟁제한적 규제 완화를 통해 시장 역동성 제고

② 독점적 · 우월적 지위 남용 및 불공정 · 불법 행위 방지

③ 노동시장 선진화로 직무와 성과에 따른 공정한 보상체계 설계

④ 대 · 중소 상생협력 확산 등 경제 전반의 연대 강화

○ **사회 이동성 제고**

① 청년 · 여성 중심 경제활동 참여 촉진을 위한 정책지원 강화

② 저소득층 등에 대한 양질의 교육기회 보장

③ 고용 · 사회안전망 사각지대 해소 및 재기지원 강화

4 미래세대 동행

○ 재정 지속가능성 확보

① 미래세대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건전재정 기조 견지

② 지속가능한 국민연금·건강보험 제도 구축

○ 인구·기후위기 대응

① 글로벌 스탠다드 수준으로 외국인 정책 전면 개편

② 결혼·출산·육아친화적 사회 분위기 조성

③ 실버타운·퇴직연금 등 고령사회 대응기반 강화

④ 무탄소 에너지 확산, 저탄소 전화 가속화 등 통해 탄소중립 이행

⑤ 녹색금융·배출권제 등 기후대응 관련 지원 인프라 고도화

○ 미래세대 기회 확대

① 청년 취업 역량 및 인센티브 강화 등 일자리 기회 확대

② 청년 전용 금융상품 지원 확대 등 통해 자산형성 뒷받침

③ 도움이 시급한 취약 청년의 자립과 안정 지원 강화

별첨1 2023~2024 경제전망 요약

(전년동기비, %)

구 분	'22실적	'23년				'24전망
		1/4	2/4	3/4	연간e	
전망 전제						
세계경제*	3.5	-	-	-	3.0	2.9
Dubai 유가($/bbl)	96	80	78	87	82	81
실질 GDP	**2.6**	0.9	0.9	1.4	**1.4**	**2.2**
민간소비	4.1	4.6	1.6	0.2	1.8	1.8
설비투자	△0.9	5.9	4.7	△4.2	△0.2	3.0
건설투자	△2.8	1.9	1.7	3.8	2.7	△1.2
지식재산생산물투자	5.0	2.4	3.5	△0.9	2.1	2.7
경상GDP	**3.9**	2.3	1.3	4.3	**3.1**	**4.9**
취업자 증감(만명)	**81.6**	39.7	34.6	26.3	**32**	**23**
고용률(15세 이상, %)	**62.1**	61.2	63.2	63.2	**62.6**	**62.8**
소비자물가	**5.1**	4.6	3.3	3.1	**3.6**	**2.6**
경상수지(억달러)	**298**	△46	70	141	**310**	**500**
상품수지(억달러)	151	△99	64	171	310	550
수출(통관)	6.1	△12.8	△12.0	△9.7	△7.4	8.5
수입(통관)	18.9	△2.2	△13.2	△21.6	△12.1	4.0
서비스·본원·이전소득수지(억달러)	148	53	6	△29	0	△50

* IMF World Economic Outlook ('23.10.)

별첨2 '24년 경제정책방향 주요 정책 캘린더

□ : 행정자치위원회 관련 과제

1. '24년 1/4분기 주요 추진과제

정책 과제	부처·기관
· 과일류 21종 할당관세 신규 적용	기재부 등
· 공공기관 물가안정 기여를 경영평가에 반영	기재부
· 다소비 의약품 가격 주기적 공개	복지부
· 중소알뜰폰 전파사용료 일부 감면 연장 (~'26)	과기정통부
· 1학기 학자금 대출금리 동결 및 생활비 대출한도 확대	교육부
· 정책서민금융상품 대출한도 증액조치 적용기한 연장	금융위
· 캠코 개인연체채권 매입펀드 운영기한 연장	금융위
· 소형·저가주택 (APT 제외) 매입시 1년 한시 취득세 감면	행안부
· 소형·저가주택 (APT 제외) 매입시 1년 한시 청약 무주택자 지위 유지	국토부
· 등록임대사업자 주택공사 등에 1년 한시 소형·저가주택(APT 제외) 양도 허용	국토부
· 취약계층 대상 임대주택 (지방주택공사 운영) 재산세 경감	행안부
· 토지임대부 주택 토지임대료 부가가치세 면제	기재부
· 지분적립형 주택 공공주택사업자 종부세 합산배제 및 재산세 감면	기재부·행안부
· 저리의 신생아 특례 전세자금대출 (버팀목대출) 지원	국토부
· 영세 소상공인 전기료 한시 감면 (업체당 20만원)	중기부
· 자영업자·소상공인 이자부담 경감 (2.3조원+α) 등	금융위
·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 기준 상향	기재부
· 전통시장 소득공제율 한시 상향 (40 → 80%, '24.上)	기재부
· 노란우산공제 세제혜택 확대	기재부
·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대책 마련	중기부
· 상반기 추가소비 소득공제 (20%) 도입	기재부
· 노후차 교체시 개별소비세 인하 (△70%)	기재부
· 5등급 경유차 폐차지원금 지급 연장	환경부
· 여행가는 달 2월 개최	문체부
· 농어촌 민박 제도 개선방안 마련 및 빈집숙박 실증특례 확대	농식품부
· 단체비자 수수료 면제 대상국가 확대 (1→6개국)	법무부
· 제로페이 - 해외결제사 (7개) 간 연동 및 가맹점 확대	중기부
· 외국인 숙박 부가세 환급 대상 확대 (호텔업 7종)	기재부
· 중소기업 전용선복 제공 및 장기 운송계약 체결 지원	해수부

정책 과제	부처・기관
・수출 중소기업 세정지원 연장	국세청
・방산기술 신성장・원천기술 지정	기재부
・「찾아가는 수출지원 프로그램 설명회」 신설・운영	기재부
・임시투자세액공제 1년 연장	기재부
・일반분야 R&D 투자 증가분에 대한 세액공제 한시 상향('24)	기재부
・투자 익스프레스 신설	기재부
・2차 투자 활성화 대책 마련	기재부
・유턴・외투기업 운영자금 우대지원(수은)	기재부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지정・운영	교육부
・지역특화형 비자 신청 지자체・쿼터 확대	법무부
・지역활성화투자펀드 가동・운영	기재부
・'24년 한시 비수도권 개발부담금(100%)・학교용지부담금(50%) 감면	교육부・국토부
・주택공급 종합대책 마련	국토부
・PF 정상화 펀드 내 PFV가 부동산 매입시 한시 취득세 감면(~'25)	행안부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배제 1년 한시 연장	기재부
・공급망 안정화 프로그램(수은) 확대	기재부
・원자재 수입보험 대상 확대조치 연장	산업부
・해외자원개발 특별융자 감면비율 상향	산업부
・원유 유종별 비축비중 조정 및 국제 공동비축사업 추진	산업부
・비철금속 비축물량 확대 및 비축업체 인센티브 제공	조달청
・소상공인・자영업자 연체채권 매각 대상 확대	금융위
・개발제한구역 해제요건 완화	국토부
・규제샌드박스 종합 개선방안 마련	국조실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소재부품장비 특화단지 종합 지원방안 수립	산업부
・완전 자동화 항만 터미널 개장	해수부
・기술유출 범죄 양형기준 상향 조정	법무부
・과학기술 분야 출연연 특별채용제도 도입 및 통합적 정원 활용추진	과기정통부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대상에 도전적・혁신적 R&D 추가	과기정통부
・중소기업의 중견기업 성장시, 재정・규제 특례기한 연장	중기부
・서비스 분야 공공조달 개선방안 마련	조달청
・콘텐츠 분야 정책금융 우대보증지원 추진	중기부

Ⅰ. 정부부처 주요 정책동향(2024년 달라지는 시책)

정책 과제	부처・기관
• 국내 OTT 경쟁력 강화 및 해외진출 방안 마련	과기정통부
• K-미식벨트 조성 및 향토음식 진흥센터 설립 추진	농식품부
• 제5차 MICE 육성 기본계획 발표	문체부
• 디지털헬스케어・모빌리티 등 신산업 분야 규제 합리화	기재부
• 가칭플랫폼 공정경쟁촉진법 제정 추진	공정위
• 공공기관 채용박람회 개최	기재부
• 저소득층 중심 국가장학금 단가 인상, 근로장학생 선발 확대	교육부
• 자영업자 본인의 고용・산재보험료 필요경비 산입	기재부
• 제2차 건강보험 종합계획 수립	복지부
• 사이언스카드 우대요건 완화	법무부
• 숙련기능인력(E-7-4) 활성화방안 마련	법무부
• 부모급여・첫만남이용권 확대	복지부
• 직장어린이집 운영비 및 위탁보육료 지원금 비과세	기재부
•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확대	여가부
• 시간제보육 제공기관 추가 확보	복지부
• 실버타운 공급 활성화 방안 마련	기재부
• 「전기차 산업 활성화 방안」 마련	기재부
• 탄소포인트제 관련 '소상공인 지원포인트' 신설	환경부
• ESG 공시기준 마련	금융위
• K-Move 스쿨 확대 및 연수장려금 신설	고용부
• 일경험 체류비 지급 신설	고용부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급요건 강화, 청년도전지원사업 취업 인센티브 신설	고용부
• 혼인・출산으로 청년도약계좌 중도 해지시에도 정부지원금, 비과세 유지	기재부
• 장병내일준비적금 최소 가입기간 완화(잔여복무기간 6→1개월)	기재부

2. '24년 2/4분기 주요 추진과제

정책 과제	부처 · 기관
· 지자체 공공요금 가격안정 인센티브 강화(서민밀접품목 평가비중 확대)	행안부
· 주요 생필품 용량 · 규격 · 성분 등 변경시 정보공개의무 제도화	공정위
· 중소기업 재직 청년 전세자금 대출지원 대상 · 한도 확대	국토부
· 새출발기금 지원대상 확대	금융위
· '중장년 전직지원 활성화' 방안 마련	고용부
· 기회발전특구 신규 지정	산업부
· 기존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 1주택 취득시, 1주택자 간주(재산세)	행안부
· 농촌소멸 대응방안 및 수산업 · 어촌 활력 제고방안 마련	농식품부 · 해수부
· 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법 시행	국토부
· 공급망안정화위원회 구성 · 설치 및 3개년 기본계획 수립	기재부
· 10대 분야 킬러규제 개선	국조실
· 바이오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정	산업부
· 사이버보안 분야 민관 합동 펀드 조성	과기정통부
· 정부납부 기술료 개선	과기정통부 등
· 연구개발서비스업 경쟁력 강화방안 마련	과기정통부
· CVC 관련 M&A 규제 완화	중기부
· 이중구조 개선대책 및 근로시간 제도개편 보완방안 마련	고용부
· 빈일자리 해소방안 마련	기재부 · 고용부
· 고용위기지역 지정 기준 개편안 마련	고용부
· 우수인재 영주 · 귀화제도 개선방안 마련	법무부
· 비전문인력(E-9) 장기근속특례 도입방안 마련	고용부
· 전국 지자체 대상 사회통합지수 측정 및 지자체별 컨설팅 실시	법무부
· 퇴직연금 활성화 방안 마련	기재부 등
·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24~'38)」 수립	산업부
· 스타트업 특화 일경험 신설	고용부

3. '24년 하반기 주요 추진과제

정책 과제	부처·기관
• 체육교습업 가격표시 시행	공정위
•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연체 가산 이자율 인하	교육부
• 건강보험료 체납시 급여제한 제외대상 확대	복지부
• 저소득층 의료비 본인부담상한액 동결	기재부
• 온누리상품권 사용처 확대	중기부
• 기업가형 소상공인 육성법 제정 추진	중기부
• 의료통역 검정시험 합격자 사후관리체계 마련	복지부
• 우주항공청 - NASA 공동연구 사업 발굴	과기정통부
• 수출기업 쇼케이스, 한 - 중남미 무역포럼 추진	기재부
• 기회특구 입주 외투기업 현금지원 국비분담률 상향	산업부
• 국가·첨단전략기술 분야 유턴보조금 지원한도 상향	산업부
• 첨단업종 유턴기업 보조금 지급시 신규 해외투자 제한요건 폐지	산업부
• 도심융합특구 5대 광역시 선도사업 기본·실시계획 승인	국토부
• 문화특구 조성계획 승인 지자체 예비사업 추진	문체부
• 글로별 혁신 특구 추가 지정	중기부
• 특구제도 합리화 방안 마련	기재부 등
• 기존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 1주택 취득시, 1주택자 간주(양도세·종부세)	기재부
• 인구감소지역 관광사업체 관광기금 융자 우대금리 등 적용	문체부
• 제2차 중앙권한의 지방이양 과제 추가 발굴	기재부·행안부
• 산업·환경분야 부담금 경감방안 마련 및 부담금 관리제도 개편	기재부
• 경제안보핵심품목 지정	기재부
• 상호금융권 부동산·건설업 여신한도 신설	금융위

정책 과제	부처 • 기관
• 농지 관리제도 합리화	농식품부
• 소멸 고위험 지역에 가칭자율규제혁신지구 도입	농식품부
• 첨단산업 규제지수 개발	산업부
•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전력 적기 공급방안 마련	산업부
• 중소기업 생산성 향상 촉진법 제정 추진	중기부
• 중소기업의 중견기업 성장시, 세제지원 기간 연장(졸업 2년 연장)	기재부
• 중소기업 정부지원 개선대책 마련	기재부 • 중기부
• 벤처투자조합이 설립한 SPC의 배당소득 이중과세 해소 추진	기재부
• 서비스 성장 유망업종 전문인력 양성방안 마련	기재부
• 주류 제조 • 유통과정의 경쟁제한적 규제 개선	기재부
• 고향사랑기부금 세액공제 한도 상향 추진	기재부
• '일 - 가정 양립 지원 방안' 마련	기재부 • 고용부
• 통합고용세액공제 기본공제 상향, 추가공제 대상에 육아기 단축근로자 추가	기재부
• 사내대학 설립 • 운영규제 완화	교육부
• 고용보험 개편 및 실업급여 제도 개선 추진	고용부
• 치매관리의사 시범사업 실시	복지부
• REC 가중치 정기개편	산업부
• 직접전력구매계약(PPA) 전력망 사용료 지원 확대	산업부
• 「제4차 배출권거래제 기본계획('26~'35)」 수립	기재부 • 환경부
• 「배출권 거래 시장 선진화 로드맵」 수립	기재부 • 환경부
• 청년도약계좌 3년 이상 가입 후 중도해지시 비과세 적용	기재부
• 청년형 장기펀드 소득공제 일몰 연장, 가입요건 확대 검토	기재부

2. 기회발전특구 세액감면 신설 (기획재정부)

◇ 기회발전특구 내 창업기업 소득·법인세 감면제도 신설 ⇨ 지방투자 활성화 도모

1 관계법령

○ 「지방분권균형발전법」 제23조제4·5항

○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33,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0조의2

2 추진배경

○ 각 지방정부 주도, 4대 특구 (기회발전·교육자유·도심융합·문화) 조성

○ 기회발전특구, 비수도권에 기업의 대규모 투자를 유치하기 위한 정책수단

○ 세제혜택을 통해 사람과 기업이 지방으로 내려오도록 유도하는 것 뿐 아니라, 주거, 교육 등 제반 정주여건까지 고려한 종합 특구 조성 유도

○ 세제감면 이외에도 규제 특례, 재정지원 등 10종 이상의 인센티브를 패키지로 제공, 기업의 대규모 투자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 노력

3 주요내용

○ **(지원대상)** 기회발전특구* 내 창업 (사업장 신설 포함) 기업

* 지정절차 : '기회발전특구계획' 작성 (시·도지사→산업부장관) 심의·의결 (지방시대위원회) ⇨ 지정

○ **(감면율)** 과세연도부터 5년간 100% + 이후 2년간 50% 법인세·소득세 감면

○ **(감면한도)** 투자누계액 50% + 상시근로자수 X 1,500만원 (청년·서비스업 2,000만원)

○ **(기존 특구와의 차별성)** ① 지방 주도 '상향식 접근' ② '종합적 관점' 정책수단

※ 시행일 : '24.1.1. 이후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하는 경우부터 적용

<< 전북자치도 추진현황 >> **(소관부서 : 기획조정실, 기업유치지원실)**

○ 기회발전특구 지정 신청을 위한 기본계획안 마련 연구용역 ('24.2.~11.)

○ 4대 특구 유치 추진단 운영 ('23.10.~ / 단장 : 행정부지사)

3. 청년도약계좌 가입지원 강화 (금융위원회)

◇ 청년도약계좌 가입요건 완화 및 비과세 적용 확대를 통한 청년 자산형성 지원

1 관계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22, 제91조의24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3조의8

2 추진배경

○ 청년 전용 금융상품 지원 확대를 통한 자산형성 뒷받침

○ 보다 많은 청년이 도약계좌를 통해 중장기적 자산형성이 가능토록 가입지원 강화

3 주요내용

○ 전년도 소득 확정 이전(국세청, 매년 7월경)이라도 전전년도 소득기준으로 청년도약계좌 가입 가능('23.12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 전전년도 소득기준으로 가입 후, 추후 전년도 소득이 확정되더라도 과세 전환여부 미검증

○ 청년희망적금 만기자의 만기수령금 청년도약계좌에 일시납입 허용

* 청년도약계좌 비과세 적용 납입한도 개정 : (당초) 첫해 840만 원 → (개정) 첫 2년간 1,680만 원

○ 육아휴직급여도 소득으로 인정하여 청년도약계좌 지원대상 확대

* 전년도(또는 전전년도) 소득에서 육아휴직급여만 있는 청년도 가입 가능

※ 시행일 : 2024년 1월 1일

<< 전북자치도 추진현황 >> [소관부서 : 기획조정실]

○ 「전북청년 함께 두배적금」 사업(계속)

- 목 적 : 도내 근로청년 자산형성 지원 및 금융교육 → 생활안정기반 조성
- 사업비 : 1,760백만원(도비 980백만원, 시·군비 780백만원)
- 사업내용 : 본인 납입금(최대 10만원) 적립시 동일 금액 지방비 매칭 지원(2년 만기)

4. 비전문 외국인력 특화훈련 확대(고용노동부)

◇ 중소기업 내 비전문 외국인력 근로자에게 직무·언어 교육 제공 확대

1 관계법령

○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23조 및 별표 1

2 추진배경

○ 산업현장 인력난 대응을 위한 비전문 외국인력(E-9) 도입 규모 대폭 확대

○ 산업현장 수요에 맞는 숙련기술 습득을 위한 체계적 직업훈련 필요

3 주요내용

○ 대기업 등이 중소기업 내 비전문 외국인력(E-9) 근로자에게 직무·언어·문화 교육을 제공하는 'E-9 특화훈련', '24년부터 본격 확대

○ 입국 초기 3주 이상의 교육 종합 제공, 사업장 조기적응 및 장기근속 도모

* 입국 직후 사업장 배치 전 특화훈련과정 이수토록 운영하며, 기존에 근무 중인 외국인 근로자도 특화과정에 참여하거나 별도 과정 개설 가능

○ ('23년) 조선업 대상 시범운영 ('24년) 뿌리산업 등 타업종으로 확대

○ **(운영기관)** 대기업 등 공동훈련센터 ※ 현대3사, 삼성중공업, 케이조선, 대우조선

○ **(훈련대상)** 비전문 외국인력(E-9)

○ **(훈련내용)** 직무 + 언어 + 문화 교육

① 직무 훈련	② 한국어 교육	③ 문화 교육
(직업능력) 표준화 직무훈련 **(산업안전)** 산업별 안전보건교육	**(원활한 훈련수강 및 생활 영위)** 한국어 회화교육 및 원격훈련	**(초기 적응)** 한국 문화교육 등 **(정주화)** 인식개선, 심리상담 등
총 훈련시간의 70% 이상	총합하여 훈련시간의 30% 이하	

○ **(지원내용)** 공동훈련센터에 통·번역비, 숙식비 지원 및 훈련과정 개발 지원

※ 시행일 : 2024년 1월

5. 수의계약 적합성평가 강화 [조달청]

◇ 조달청 평가 업무 대행 확대 시행 ⇨ 조달평가 전문성, 효율성 제고 기여

1 관계법령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및 제30조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제10절

2 추진배경

○ 수의계약 평가대상 기업들의 평가 참여 시 불편 · 애로사항 해소

* 개별기관의 한정적인 평가위원 풀(pool), 평가 진행절차 미숙 등

○ 다양한 위원 풀 및 다수의 평가업무 경험 보유 전문가에 의한 평가 필요

3 주요내용

○ 조달청, 제안서 평가에 어려움을 겪는 수요기관을 위한 적합성평가* 업무대행 서비스 확대 시행 (평가대행서비스 수수료 : 사업금액별 차등)

* 적합성평가 : 협상계약 단일응찰 유찰 건에 대해 수의계약을 위한 제안서 적합여부 평가

○ 전문가로 구성된 조달청 평가위원 풀 중 사업분야에 적합한 평가위원 참여, 공정하고 전문적으로 진행

○ ('24년) 평가위원 규모 확대 (7천 3백여명→1만 명), 공공기관 평가위원 공동 활용

○ 온라인 서면평가 프로세스 도입, 사용자별 매뉴얼 제공, 평가과정 모니터링 등 다양한 평가 서비스 운영

※ 시행일 : 2024년 1월 (본격시행)

《 전북자치도 추진현황 》 [소관부서 : 기획조정실]

○ 「전북특별자치도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위원회」 운영

○ 조달청 평가 대행 서비스는 사업금액별 수수료 발생 → 사업건별 전북자치도 제안서 평가위원회의 평가 기능의 조달청 대행 소요 발생시 의뢰

※ ('22년 결산기준) 전북본청 수의계약 비율 : 22.90% (9개 도 단위 지역중 4위)

* 도 9개 자치단체 평균 (19.47%) 대비 3.43%p ↑

6. 기초생계 · 의료급여 지원 확대 (보건복지부) 《환경복지위원회》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생계급여 지원기준이 역대 최대 수준인 13.16% (4인 가구) 인상 및 수급자 선정기준 중위소득이 6.09% 인상
◇ 중증장애인 가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및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1 관계법령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의료급여법」

2 추진배경

○ 약자복지를 위한 저소득층 기초생활보장 강화

○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이나 부양의무자 요건 등으로 의료급여를 받지 못하는 비수급 빈곤층에 대한 의료 안전망 강화

3 주요내용

○ **(생계급여)** 2024년 지원기준 역대 최대 수준인 13.16%(4인 가구) 인상

* 2024년 기준 중위소득 6.09% 인상, 생계급여 선정기준 상향(기준 중위30%→32%)

** 4인 가구 월 최대 183만 4천원 수급 가능

○ **(주거급여)** 선정기준 상향(기준 중위 47%→48%), 기준임대료를 급지·가구별 1.1~2.7만원(3.2~8.7%) 인상

○ **(교육급여)** 교육활동지원비를 최저교육비의 100% 수준으로 인상

* 초등학교 46만 1천원, 중학교 65만 4천원, 고등학교 72만 7천원

○ **(의료급여)** 중증장애인 가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및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재산 급지기준 개편 및 공제액 상향 조정

* 단, 연소득 1억원 또는 일반재산 9억원을 초과하는 부양의무자가 있는 경우 미지원

※ 시행일 : 2024년 1월

<< 전북자치도 추진현황 >>

[소관부서 : 복지여성보건국, 건설교통국, 교육청 학교안전과]

○ **생계급여 사업** (계속)

- 목 적 :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최저생활보장 지원으로 생활안정 도모
- 사업비 : 485,895,348천원(국고 418,169,914, 도비 39,753,444, 시군비 27,971,990)
  * 기준중위소득 '23년 대비 6.09% 인상 및 생계급여 선정기준 상향(기준중위소득 30%→32%)
- 사업내용 : 의복, 음식물 및 연료비 등 기본적으로 필요한 급여 지원(가구단위)

○ **해산·장제급여 사업** (계속)

- 목 적 : 기초생활수급자 해산 및 장제에 따른 경비 지원
- 사업비 : 2,610,362천원(국고 2,246,521, 도비 213,567, 시군비 150,274)
  * 기초생활수급 사망자 증가로 장제급여 대상자(475명) 증가, 사업규모 3,274명
- 사업내용 : 해산급여(1인 700천원) 및 장제급여(1인 800천원) 지원

○ **주거급여 사업** (계속) *건설교통국 소관

- 목 적 : 주거비 부담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임차료(임차가구), 수선유지비(자가가구) 지급하여 주거안정 도모
- 사업비 : 110,402백만원(국비 95,762, 도비 8,808, 시군비 5,832)
  * 소득인정액 상향(중위소득 47%이하→48%이하)에 따른 지원 가구수 증가
- 사업내용 : 수급자의 주거안정에 필요한 임차료 및 수선유지비 지급(53,525가구)

○ **교육급여 사업** (계속) *교육청 소관

- 목 적 : 교육급여수급자 초중고생 교육비 지원으로 교육기회 보장
- 사업비 : 11,434,787천원(국고 9,897,000, 도비 918,727, 시군비 619,060)
  * 교육활동지원비 10% 증가(초등 증46천원, 중등 증65천원, 고등 증73천원)
- 사업내용 : 입학금, 수업료, 교육활동지원비 등 교육급여 지원

○ **의료급여(특별회계) 사업** (계속)

- 목 적 : 저소득층 의료보장 및 삶의 질 향상
- 사업비 : 628,542,875천원(국비 502,834,300, 도비 90,266,634, 시군비 35,441,941)
  * 기준 중위소득 전년대비 6.09% 인상 및 중증장애인 부양의무자 기준완화 등에 따른 대상자 증가
- 사업내용 : 진료비예탁금, 건강생활유지비, 임신출산진료비, 현금급여 사업비 등

7. 난임 시술비 지원 소득기준 폐지 (보건복지부)

◇ 난임 시술비 지원 소득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폐지⇨지속가능한 건강보험 제도 구축

1 관계법령

○ 「모자보건법」

2 추진배경

○ 지역에 따른 난임 진료 여건 격차 해소

○ 임신·출산 희망 난임부부의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저출산 문제 극복 노력

3 주요내용

○ 난임 시술 환자 증가세* 대응 및 건강보험 재정 중장기 지속가능성 제고

* '22년 난임 시술 환자 : 14만 458명, '18년 대비 16% 증가 / 평균 진료비 : 女(321만4829원), 男(21만8812원)

○ 난임 시술비 소득기준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폐지

* ('23 시행) 서울·부산·대구·인천·세종·경기·전남·경북·경남 / ('24 시행) 전국

○ 전국 모든 지역에서 시술 종류에 따라 1회당 30만원 (인공수정)에서 110만원 (신선배아 체외수정)까지 지원 가능

※ 시행일 : 2024년 1월

〈〈 전북자치도 추진현황 〉〉 (소관부서 : 복지여성보건국)

○ 「전북형 난임 시술비 지원」사업 (계속)

- 목 적 : 임신·출산 희망 부부에게 난임 소요비용 지원, 경제부담 완화
- 사업비 : 970백만원 (도비 485백만원, 시·군비 485백만원)

* '24년 사업량 : 횟수 소진자 추가지원 (78건), 지원대상 확대 (1,000건)

- 사업내용

① 난임시술 건강보험급여 횟수 소진자 추가 지원 (2회)

② 정부형 지원대상 소득기준 폐지로 인한 대상 확대, 난임 시술비 지원 (최대 110만원)

별첨 2024년 출산 · 양육분야 예산



<출처: 보건복지부 블로그>

8. '24시 마약류 상담센터' 운영 및 마약류 예방교육 확대(식품의약품안전처)

◇ 2024년부터 취약시간에 마약류 충동·갈망을 억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24시 마약류 상담센터' 개소
◇ 청소년 취약계층 등 마약류 예방교육 확대

1 관계법령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2 추진배경

○ 마약류 범죄 발생빈도가 야간시대(18시~09시)에 집중되는 등 중독 문제가 고위험화되는 추세지만 야간시간 대응체계 부재

3 주요내용

○ 365일 24시간 연중무휴로 마약류 상담센터는 시간·공간적 제약 없이 마약류 예방·재활을 위한 신속한 초기 대응 및 종합상담 서비스 제공

* 24시 마약류 상담센터를 통해 전국민 누구나 무료로 이용가능

○ 24시 마약류 상담센터를 통해 우리 지역의 중독재활센터 관련 정보를 확인하고 필요시 중독재활센터 연계 및 재활프로그램 참여 가능

○ 유아·청소년(초·중·고등학생, 학교밖 청소년) 196만명, 청년층(군인, 대학생 등), 학부모 등 성인 6만명 등 맞춤형 마약류 예방교육 확대 실시

※ 시행일 : 2024년 1월

<< 전북자치도 추진현황 >> (소관부서 : 복지여성보건국)

○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 사업 (계속)

- 목적·내용 : 마약류 중독자가 치료보호 전문기관에서 재활치료 후 사회 복귀 지원(마약류 중독 판별검사 및 진료비 지원 10명 지원)
- 사 업 비 : 20,000천원(국고10,000, 도비 10,000) ※ 국고 50%, 도비 50%

○ **「마약퇴치운동본부 전북지부 사업비」** 지원 (계속)

- 목적·내용 : 약물 오·남용 확산 방지 및 마약류 중독 예방 사업(홍보·교육, 상담 및 재활서비스 제공 등) 도민 건강 보호 및 건전한 사회 환경 조성
- 사 업 비 : 20,000천원(국고10,000, 도비 10,000) ※ 국고 50%, 도비 50%

→ 전북 내 마약류 사범 검거현황 증가('18년 85명, 22년 204명)에도 불구하고 관련 사업의 집행 실적 및 참여율 저조('20년· '21년 0명, '22년 3명 치료)하여 개선이 필요함

9. 환경영향평가제도 합리적 개선 (환경부)

◇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일부개정('23.12.19.시행)에 따라 환경영향평가 대상과 기준, 절차 등을 합리적으로 개선함**

1 관계법령

○ 「환경영향평가법」

2 추진배경

○ 환경영향평가 대상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어려움 개선

○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 간소화 등으로 불필요한 행정부담 완화

3 주요내용

○ (**전략환경 영향평가**) 민간투자사업 전략평가 적용 합리화, 약식 전략평가 대상에 소하천·하천기본계획 추가, 전략평가 협의내용 조정절차 신설

▪ (하수도사업) 다른 계획에서 전략환경평가 협의를 거친 경우 전략환경평가 면제
▪ (도로 · 철도사업) 사업규모 변경 비율 변경협의 재협의 등 판단 기준 산정시 최소 지역범위 적용, 최소 영향범위를 벗어난 부분의 증가로 규모를 판단
* 평가항목별 영향을 받게 되는 지역의 범위 중 가장 좁게 설정된 평가항목의 지역범위

○ (**환경영향평가**) 변경협의 요청기한(10일) 규정, 변경협의 대상 명확화, 발전사업용 전기저장장치(ESS)평가 규모(10만kM) 조정

○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이 경미한 사업은 평가대상 제외, 연접 규정에 따른 소규모 평가대상 판단기준 및 변경협의 기준 합리화

○ (기타) 초급 환경영향평가기술자 자격기준 조정

※ 시행일 : 2023년 12월

<< 전북자치도 추진현황 >> **(소관부서 : 환경녹지국)**

→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93조 (환경영향평가 등에 관한 특례)로 '환경영향평가 협의 권한' 반영, 전북형 지구단지 지정 등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수 있게 됨 (시행 '24.12.)

10. 우리 바다에 대한 방사능 감시망 확대 (해양수산부)

◇ 우리 바다의 해양방사능 측정·감시를 통해 해수, 해양퇴적물, 해양생물 등 매체를 대상으로 주기적으로 조사 및 결과를 공개하여 국민 안전성 확보

1 관계법령

○ 「해양환경관리법」

2 추진배경

○ 국내 해역으로의 방사성물질 유입 여부에 대한 감시 강화

3 주요내용

○ 2024년 해양방사능 감시망 (127개→165개) 확대

○ 정기조사(정밀분석)를 52개소에서 60개소로, 긴급조사(신속분석)를 75개소에서 105개소로 확대하여 우리 해역의 방사성물질 유입 여부 감시

* 원자력안전위원회 : 정기조사(정밀분석) 40개소, 긴급조사(신속분석) 33개소→38개소

○ '국민신청 방사능 검사 게시판' 운영('23.05.~)

* 국민이 원하는 지역과 품목의 수산물 방사능 검사 신청 및 검사결과 확인 가능

※ 시행일 : 2024년 1월

<< 전북자치도 추진현황 >> **(소관부서 : 새만금해양수산국)**

○ **「전북 해양 방사능 감시체계 구축」** 사업 (신규)

- 목 적 :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에 대한 실시간 모니터링 등을 통한 수산물 안전성 확보 및 도민 안전 강화
- 사업비 : 135백만원 (도비 100%)

* 현재 도내 방사능 검사장비(:감마핵종분석기)3대 보유(수산기술연구소 2대, 보건환경연구원 1대)

- 사업내용 : 방사능 감시체계 구축(방사선 검출기, 해수 보관통, 모니터링 프로그램)

→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배출과 관련 도민 불안감 해소를 위해, 도내 해역 방사능 정기적 검사와 측정 결과를 주기적으로 공개하여 (충남도 월1회→주1회 공개) 전북의 수산물 안전성 확보 필요**

11. 전략작물직불금 대상확대 및 단가 인상(농축산식품부) 《 농산업경제위원회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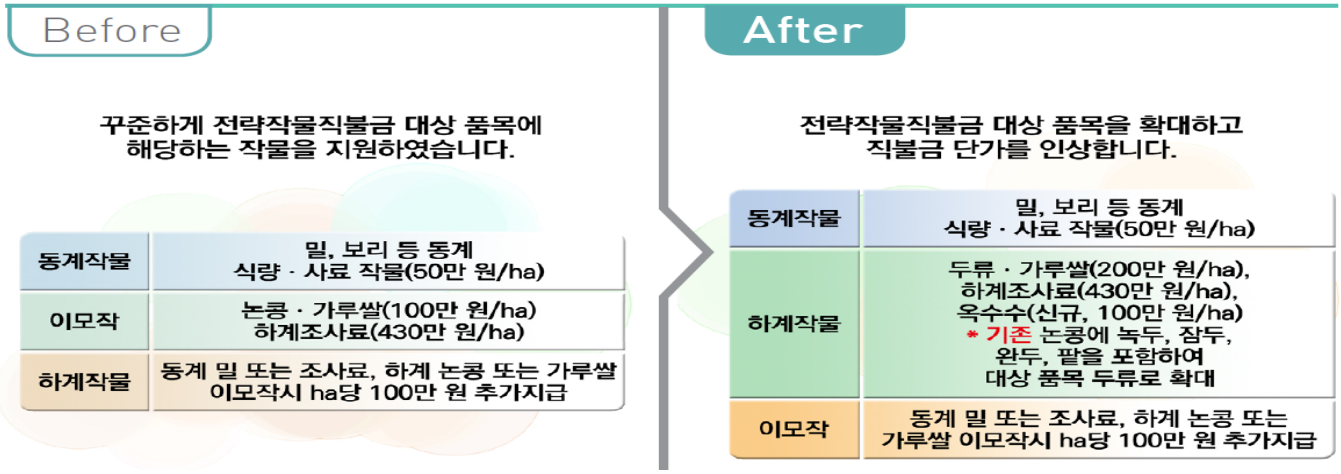
◇ 전략작물직불제 대상 품목 (두류, 옥수수) 확대 / 단가 (100만원 / ha → 200만원 / ha) 인상

1 추진배경

○ 논에 벼 대신 전략작물 재배를 적극 유도하여 쌀 과잉문제 선제적으로 대응 및 벼 외 식량작물의 자급률 제고

○ 쌀을 제외한 밀·콩 등 주요 작물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며, 식량자급률은 하락 추세

2 주요내용 ※ 시행일 : 2024년 1월 1일



《 전북자치도 추진현황 》 [소관부서 : 농생명축산식품국]

○ 전북자치도는 농도로서 지속적인 쌀값 하락과 쌀 소비량 감소에 따라 「전라북도 논 타작물 육성에 관한 조례」('23년 8월 제정)를 제정·시행하여 타작물 재배 지원 시행

* **(쌀 생산량)** '23년 전국 708천ha, 368만톤(P) (전북 107천ha, 57만톤p)
(쌀 소비량) '00) 93.6kg → '10) 72.8 → '21) 56.9 → '22) 56.7 (1인당 연간 쌀 소비량)
(쌀 값) '22년 수확기) 187,268원/80kg → '23.10.15.기준) 209,548원 (11.2%↑)

○ 농림식품축산부의 지원 대상 확대와 단가 인상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의 지원방향 및 지원방법*에 대한 논의 필요

* '23년 도 자체사업 6,500백만원(논타작물생산장려지원금, 밭식량작물시설장비지원 등)

12. 방치된 농기계 강제처리 제도 (농림축산식품부)

◇ 농촌 미관저해 및 토양오염 유발하는 무단 방치 농업기계에 대한 강제처리 제도

1 관계법령

○ 「농업기계화 촉진법」 2023년 6월 20일 개정

2 추진배경

○ '20년 농림축산식품부 조사 결과 우리나라 폐농기계는 1만 4천여 대임. 폐농기계 상당수가 도로나 타인의 토지에 방치되어 자연경관 훼손, 녹물·폐유 등의 유출로 토양 및 수질오염이 심각함

3 주요내용 ※ 시행일 : 2024년 6월 21일

○ 정당한 사유 없이 도로나 타인의 토지에 일정기간 이상 농업기계를 방치하지 못하도록 의무 부과 및 위반시 과태료 부과 규정

○ 지방자치단체장은 방치농업기계의 소유·점유자에게 수거·폐기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명할 수 있으며, 조치가 어려울 경우 방치 농업기계를 매각하거나 폐기할 수 있음

○ 방치된 농업기계인지 여부는 농업기계의 상태, 장소, 기간, 인근 주민의 진술 등 제반 정황을 종합하여 판단

<< 전북자치도 추진현황 >> (소관부서 : 농생명축산식품국)

○ 방치된 농기계 강제처리 제도는 '23년 「농업기계화 촉진법」 개정을 통하여 법제화

○ 제도 시행 전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방치된 농기계 현황을 파악하고, 전북특별자치도지사에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조례 제정 필요

별첨 「농업기계화 촉진법」(2023.06.20.) 주요 내용

제8조의7(농업기계의 강제 처리) ① 농업기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농업기계를 정당한 사유 없이 도로나 타인의 토지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사용하지 아니한 채 방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농업기계가 제1항에 따라 방치되고 있다고 판단되면 해당 농업기계를 일정한 곳으로 옮긴 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농업기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폐기 요청 또는 그 밖의 처분 등을 하거나, 그 농업기계를 찾아가는 등의 방법으로 본인이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

③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농업기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제2항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해당 농업기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를 알 수 없을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농업기계를 매각하거나 폐기할 수 있다. 이 경우 매각 또는 폐기에 든 비용은 그 소유자 또는 점유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농업기계를 매각 또는 폐기한 경우 그에 들어간 비용을 충당하고 남은 금액이 있을 때에는 그 농업기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잔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농업기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공탁법」에 따라 잔액을 공탁(供託)하여야 한다.

제9조의4(농업기계 폐기 등)

⑥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시·도지사는 농업기계의 폐기와 관련된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폐기 농업기계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제19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8조의7제1항을 위반하여 농업기계를 정당한 사유 없이 도로나 타인의 토지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사용하지 아니한 채 방치한 자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다만, 제1항제1호의 경우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부과·징수한다.

13.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 조성 (농림축산식품부)

◇ 동물보호 및 복지 증진을 위해 반려동물 관련 제도 개편

1 관계법령

○ 「동물보호법」(2024년 4월 27일 시행)

○ 「수의사법」(2024년 1월 5일 시행)

2 추진배경

○ 동물병원 진료비에 대한 소비자의 알권리가 보장되고, 진료 선택권이 증대됨

○ 동물보호 및 복지증진을 위한 반려동물 관련 제도 개편과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부모견 등록제 및 개물림 사고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

3 주요내용

○ 진료비용을 사전 게시해야 하는 동물병원이 기존 수의사 2명 이상 동물병원에서 2024년 1월 5일부터 모든 동물병원으로 확대 시행

○ 맹견사육허가제를 새롭게 도입하여 개에 의한 상해·사망사고 등이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개물림 사고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를 위하여 맹견을 사육하려는 사람은 일정 요건**을 갖추어 시·도지사에게 허가를 받아야 함

* 국내 개물림사고 건수(소방청) : ('17) 2,405건 → ('19) 2,154 → ('22) 2,216

** 동물등록, 맹견 책임보험 가입, 중성화 수술

○ 종전에 맹견을 사육하고 있는 사람은 제도 시행일(2024년 4월 27일) 이후 6개월 이내에 사육허가를 받아야 함

○ 맹견 품종이 아닌 개도 사람·동물에게 위해를 가하거나 공격성이 분쟁의 대상이 된 경우에는 기질평가*를 통해 맹견 지정

* 동물의 건강상태, 행동양태 및 소유자 등의 통제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평가 대상 동물의 공격성을 판단(「동물보호법」 제2조 제10호)

○ 동물생산업장의 부모견을 등록 대상 동물 범위에 추가하는 동물생산업 부모견 등록제 도입

※ 동물등록 비용 및 등록절차 이행기간 등을 감안하여 2년의 유예기간 부여

→ 2026년 4월 26일까지 동물생산업 부모견 동물등록 완료 계획

○ 반려동물행동지도사 국가자격 시험을 시행하여 반려동물 행동지도 및 관리 분야에 다양한 민간자격('23년 141개) 운영

○ 반려동물 양육 가구 증가와 함께 반려견 행동교정(소음·안전사고 등), 입양 전 교육, 기질평가 등 전문 지식·기술에 대한 수요가 높아짐에 따라 반려동물행동지도사 국가자격제도가 신설

《 전북자치도 추진현황 》 [소관부서 : 농생명축산식품국]

○ 동물병원 진료비 공시제 의무화 첫날 도내 10곳 중 1곳만 가격 표시를 한 것으로 나타나 지속적인 홍보와 과태료 부과 필요

○ 맹견사육허가제 도입에 대한 철저한 준비를 통하여 제도 시행 후 맹견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세심한 준비 필요

14.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 시행(고용노동부)

◇ 장시간 근로문화 개선 ⇨ 근로시간 단축 사업주 대상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지원

1 관계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9조(고용유지지원금의 지급 대상)

2 추진배경

○ 장시간 근로문화 개선을 위해 근로시간 단축 계획을 수립하여 기업 전반의 실근로시간(연장+소정근로)을 단축한 사업주 지원

3 주요내용 ※ 시행일 : 2024년 1월 1일

○ **(지원요건)** 사업주가 실근로시간 단축을 위한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근로자 1인당 주 평균 실근로시간이 2시간* 이상 감소한 경우 지원

* (단축 전 3개월 주 평균 실근로시간) - (단축 후 3개월간 주 평균 실근로시간)

○ **(지원 기간, 주기)** 실근로시간 단축 계획 시행일로부터 1년간, 3개월 단위

○ **(지원액)** 지원 인원 1인당 단축 장려금 월 30만 원(정액)

* 지원 대상 근로자의 30% 지원(최대 100명)

《 전북자치도 추진현황 》 (소관부서 : 기업유치지원실)

○ 전북자치도의 워라밸 지수는 전국 '최하위' 수준으로 적극적인 홍보와 제도 개선을 통하여 근로자들의 근로시간 단축 필요

○ 전국적으로 일과 생활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지자체의 관심이 필요하며, 도 차원이 양질의 양자리 창출을 위한 기업 유치 필요

15. 2024년 적용 최저임금 9,860원 (고용노동부)

◇ 2024년 1월 1일부터 최저임금 시간급 9,860원으로 인상

1 관계법령

○ 「최저임금법」 제4조

2 추진배경

○ 「최저임금법」 제4조에 따라 2024년 최저임금 시행

3 주요내용 ※ 시행일 : 2024년 1월 1일

○ 일급으로 환산하면 8시간 기준 78,880원, 주 근로시간 40시간 기준 월 환산액은 2,060,740원(월환산 기준시간 수 209시간, 주당 유급주휴 8시간 포함)

○ 최저임금은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되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고용형태나 국적에 관계없이 모두 적용

○ 다만, 수습사용중인 자로서 수습사용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자는 최저임금액의 10%를 감액할 수 있음

* (수습사용중이어도 감액적용 불가) ①1년 미만 근로계약 체결, ②단순노무종사자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

○ 매월 1회 이상 지급되는 임금이 최저임금에 산입되며, 2024년부터 매월 지급하는 상여금 및 식비, 숙박비, 교통비 등 근로자의 생활보조 또는 복리후생을 위한 성질의 임금은 최저임금에 전부 산입

연도		'19년	'20년	'21년	'22년	'23년	'24년~
미산입 비율	상여금	25%	20%	15%	10%	5%	0%
	복리후생비	7%	5%	3%	2%	1%	0%

《 전북자치도 추진현황 》 (소관부서 : 기업유치지원실)

○ 2024년 적용 최저임금에 대한 홍보와 안내를 통하여 최저임금 관련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계도 필요

○ 「전북특별자치도 생활임금 조례」에 따른 2024년 전라북도 생활임금 적용 안내

- 시간급 11,813원 / 월2,468,917원(209시간 기준)
- 전라북도, 도의회, 도 산하 출자·출연기관 등에 직접 채용된 노동자 또는 위탁계약을 체결한 자가 그 계약을 이행하는 소속 노동자

○ 최저임금과 생활임금의 적용을 통하여 노동자들의 복지증진과 지역경제의 건전한 발전 필요

16. 소상공인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확대 (중소벤처기업부)

◇ 소상공인 사회안전망 편입 촉진 ⇨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1 추진배경

○ 소상공인을 사회안전망 제도권으로 편입하기 위해 납입한 자영업자 고용보험료의 일부를 지원

2 주요내용 ※ 시행일 : 2024년 1월

○ **(지원대상)**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

* 소상공인기본법 시행령의 소상공인의 범위에 해당하는 자

○ **(지원내용)** 소상공인이 납입한 자영업자 고용보험료의 50~80%를 최대 5년간 환급

○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예산을 100억 원 증액*하고, 지원비율도 20~50%에서 50~80%로 상향

* ('23년) 50억 원, 20~50% → ('24년) 150억 원, 50~80%

〈 현행 〉

(단위: 원)

기준등급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6등급	7등급
월보수액	1,820,000	2,080,000	2,340,000	2,600,000	2,860,000	3,120,000	3,380,000
월보험료	40,950	46,800	52,650	58,500	64,350	70,200	76,050
'23 지원비율	50%		30%		20%		
'23 월지원액	20,475	23,400	15,750	17,550	12,870	14,040	15,210

〈 개정 〉

(단위: 원)

기준등급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6등급	7등급
월보수액	1,820,000	2,080,000	2,340,000	2,600,000	2,860,000	3,120,000	3,380,000
월보험료	40,950	46,800	52,650	58,500	64,350	70,200	76,050
'24 지원비율	80%		60%		50%		
'24 월지원액	32,760	37,440	31,590	35,100	32,175	35,100	38,025

《 전북자치도 추진현황 》 (소관부서 : 기업유치지원실)

○ 3년 이상 계속됐던 코로나19와 우크라이나·이스라엘 등 세계 곳곳에서 벌어지는 전쟁 영향 등으로 경기 침체가 심화되고 있음

○ 전북자치도 소상공인들이 각종 금융권 대출을 갚지 못하게 되면서 도내 지역신용보증 재단들이 대신 갚아주는 대위변제액이 전년 대비 최고 3배 이상 웃돌고 있는 상황

→ 소상공인들이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 및 제도 안내 필요

17. 새로운 문화·체육·관광 정책(문화체육관광부) 《 문화건설안전위원회 》

◇ 새로운 문화·체육·관광 정책으로 청년과 취약계층, 기업, 지역 중점 지원

1 '문화예술패스' 도입, 전통문화 활용한 창업 지원 확대 등(청년지원)

○ 청년 '문화예술패스'로 **연 최대 15만원 한도 순수예술**(공연·전시) 관람

2 문화·예술 분야 청년 창업 지원 확대

○ 청년창업가 발굴·지원 **'오늘전통창업' 지원 대상 확대**

- 초기 창업기업(창업 후 1~3년차, 최대 3년 1억원)

  → **도약기업**(창업 후 4~7년차, 최대 2년 1억 4천만원)까지 **확대**

○ 청년예술인 활동 기회 확대

- 국립예술단체 청년 교육단원 **'23년 95명 → '24년 295명 확대**
- **활동지원금** 및 전문 교육·상담(멘토링), 지역·기획공연 **출연기회 지원**

3 '문화누리카드',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 확대 등

○ 기존 **'문화누리카드'** 1인당 지원금 **연간 11만원 → 13만원** 확대 지원

○ 스포츠강좌 이용권 **대상 확대** 및 **지원금 상향**

- '23년 저소득층 유아·청소년(9만2천명), 장애인(1만4천명) 대상 9만5천원 지원
- **'24년 유아·청소년(12만명), 장애인(2만명) 대상 월 11만원 지원**

○ '이야기할머니' 사업 활동 영역 확대(유아교육기관 → 늘봄학교까지)

4 영상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 확대 등

○ 투자 대상 제한없는 '전략펀드' 조성

- **정부·콘텐츠 분야 민간기업 공동 출자**(6천억원 규모 펀드 조성)

○ 영상전문투자조합 출자(80억원 → 250억원), K-콘텐츠 펀드 출자 확대(1,980억원 → 3,400억원) **'24년 국내 콘텐츠 시장 1조7천4백억 규모 정책금융 공급**

○ 영상콘텐츠 제작 기업 **세액공제 규모 확대**

- 대기업 3%, 중견기업 7%, 중소기업 10%
  → **대기업 15%, 중견기업 20%, 중소기업 30%**

5 '여행가는 달' 확대, 디지털관광주민증 적용지역 확대 등

○ 매년 6월, 1회 진행했던 **'여행가는 달' 2회로 확대**

- 지역으로 여행하는 국민에게 각종 할인 혜택 등 콘텐츠 제공
- **걷기여행, 자전거 관광** 등 **웰빙을 융합한 프로그램 제공**

* 걷기여행 온라인 플랫폼 '두루누비'를 통한 국·영문 안내서비스 제공

○ **'디지털관광주민증' 발급지역 추가**, 대표적인 지역 관광 프로그램 운영

- '23년 15개 지역 → **'24년 최대 40개 지역**으로 확대

6 정책효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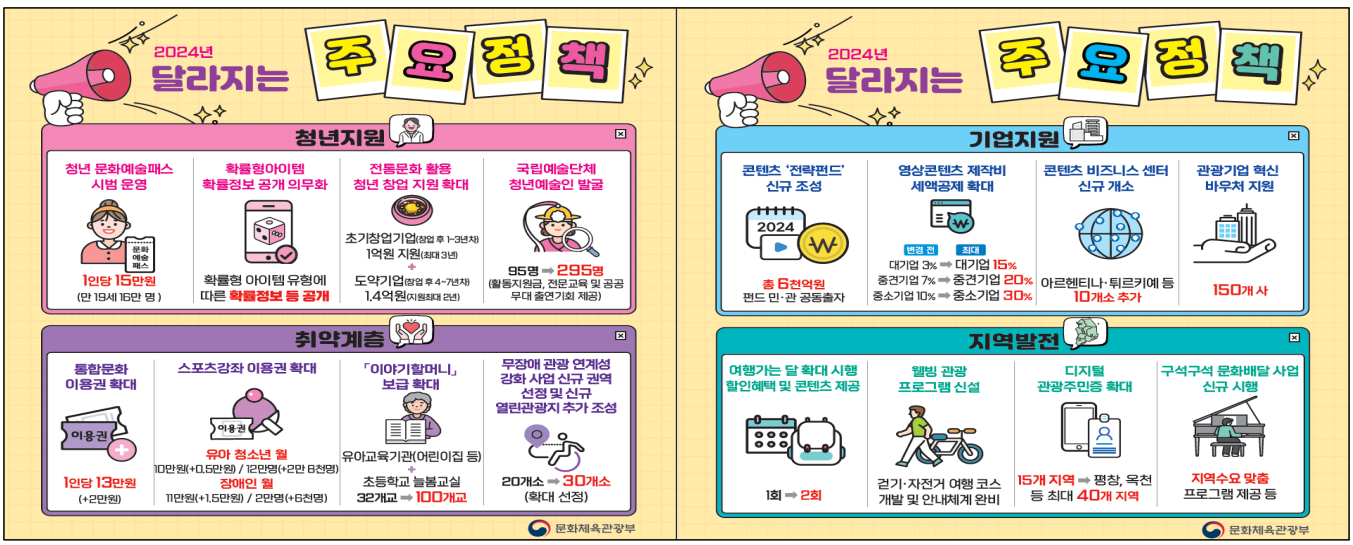
○ **청년의 경제적 부담 경감** 및 문화예술 현장의 **새로운 수요 창출**

○ 청년 '문화예술패스' 신설, '문화누리카드' **지원금 상향 등 민생 안정 뒷받침**

○ 인성 함양의 기회 제공, **어르신 문화예술인 활동 기회 제공**

○ 세계시장에서 경쟁하는 **콘텐츠 산업 활력 증대**

○ 국내 관광 활성화를 통한 **인구감소지역 생활인구 증가** 기대



18.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 확대 (고용노동부)

◇ **건설근로자 권익 보호위한 퇴직공제부금 신고 누락 방지 전자카드제 도입**

1 관계법령

○ 「건설근로자법 시행령」 제12조의2

2 주요내용

○ 인력관리 및 **퇴직공제부금 신고 누락방지**를 위한 **전자카드제 도입** ('20.11.27)

- **'24.1.1부터 모든 퇴직공제 가입대상 건설공사** (공사예정금액 공공 1억원 · 민간 50억원 이상 등 신규 입찰공고 사업장 적용)로 **전자카드제 확대 시행**

구 분	1단계 ('20.11.27~)	2단계 ('22.7.1~)	3단계 ('24.1.1.~)
공 공	100억 이상	50억 이상	「건설근로자법」에 따른 퇴직공제 가입대상 건설공사 (공공 1억, 민간 50억 이상)
민 간	300억 이상	100억 이상	

* 공사예정금액 규모에 따른 적용일 이후 **입찰 공고** (입찰 공고를 하지 않는 경우, 도급계약 체결하는 때) **하는 건설공사**의 사업장부터 **적용**

3 운영방식

○ **퇴직공제 근로일수 신고**를 위해 설치된 단말기에 **전자카드 직접 태그**

- **금융기관** (우체국, 하나은행)에서 **전자카드** 발급 후 출·퇴근 시 **사용**
- **원수급인**에게 전자카드 **단말기 설치·운영*** **의무** 부여

* 단말기 설치 · 운영 비용은 공사원가에 반영된 '퇴직공제 가입에 드는 금액 (노무비*2.3%)' 사용

○ 단, **3억원 미만 소규모 건설공사** 또는 **단말기 설치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건설공사**의 경우,

- 건설근로자공제회가 운용하는 **'이동통신 단말장치용 애플리케이션*'을 활용**하여 건설근로자 출 · 퇴근 내역 기록

* 위치정보 기반 전자카드 출 · 퇴근 등록 응용프로그램

별첨 건설근로자 퇴직공제

1 목 적

○ 법정 퇴직금제도의 혜택을 받기 어려운 **건설 일용근로자**의 **노후생활 안정**을 위해 **건설근로자 퇴직공제 도입** ('98.1.1 시행)

2 운 영

○ **건설사업주**가 **건설 일용근로자** (1년 미만 기간제근로자)를 **고용**하는 경우 공제회에 **퇴직공제부금** (1일 6,500원) **납부**

- 퇴직공제부금 : 퇴직공제금 6,200원 (건설근로자 몫) + 부가금 300원 (공제회 운영비 등)

○ **퇴직공제금** (1일 6,200원)

- 공제부금 납부일수 252일 이상 건설업 퇴직, 사망 또는 60세에 이른 경우
- 252일 미만 사망 또는 65세에 이른 경우 **건설근로자에게 지급**

3 대 상

○ **퇴직공제**의 **적용**을 받는 **건설공사**

①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 (전기·정보통신·소방시설·문화재 수리 공사는 제외됨)
②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
③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
④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공사**
⑤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문화재수리공사**

- 퇴직공제 당연가입 대상공사의 범위

유 형	구 분	범 위
공 공	국가·지자체 및 정부 출자·출연 법인 발주 공사, 정부 재출자기관 (자본금 5할 이상) 발주 공사, 민간투자 사업으로 시행되는 공사	**공사예정금액 1억원 이상**
민 간	민간공사 (공동주택, 주상복합, 오피스텔 포함)	**공사예정금액 50억원 이상** 또는 **200호 (실)이상**

19. 안전동행 지원사업 (고용노동부)

◇ 한시적 안전투자혁신사업 ⇨ 안전동행 지원사업 개편

1 관계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158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09조

2 추진배경

○ 산업안전분야 이중구조 개선을 위해 한시사업인 **안전투자혁신사업**을 **위험공정 개선 중심의 안전동행지원사업으로 개편**하여 지원

3 주요내용

○ **대·중소 안전보건 수준 격차완화**

- **(대상)**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또는 중소기업기본법령 상 '소기업' 기준 **제조업 중 뿌리공정**(주조, 소성가공, 표면처리), **고위험 6대 업종 사업장**
- **(지원)** 소요금액의 50% (최대 1억원)

○ **원·하청 안전보건 상생지원**

- **(대상)** 중소기업기본법령 상 '중소기업' 기준 해당 사외하청 사업장으로써 원청에서 공정개선 비용의 일부를 직접지원하거나 대·중소기업 상생협력기금을 통해 지원받는 사업장 또는 안전보건공단의 **대·중소기업 안전보건 상생협력사업**을 통해 **매칭지원 받아 실시한 컨설팅 결과 공정개선이 필요한 사업장**
- **(지원)** 소요금액의 40% (최대 8천만원)

4 정책효과

○ **위험공정의 개선을 통한 근로자들의 안전 강화** 및 사기 증진과 생산성 향상

○ **사업장 내 사고 발생률 감소**로 인한 **재해관련 비용 절감 효과**

○ 사업장의 경제적 부담 경감 및 해당 산업 종사자 삶의 질 개선

20.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 (국토교통부)

◇ 주택공급 확대로 주거안정 기반 강화 및 건설산업 활력 회복

1 관계법령

○ 「도시정비법」 제67조, 제68조

2 추진배경

○ 주택시장의 근본적 안정과 국민의 안정된 주거생활을 위한 수요에 부응하는 충분한 주택공급

○ 주택공급 부진은 거시여건 및 주택시장 침체에서 비롯

○ 강화된 규제로 인한 주택 구입·보유 부담, 전세사기 영향 등 수요 위축

3 주요내용

○ 국민 선택 제한 재건축 규제 전면 개선

- 패스트트랙 도입(준공 30년 도과시 안전진단 불요, 조합설립 시기 조기화 사업기간 단축)
- 재개발 노후 요건 완화(30년 이상 건축물 전체 2/3→60%, 촉진지구 50%)
- 1기 신도시 임기내 첫 착공, '30년 첫 입주 위한 선도지구 지정
- 전용펀드(미래도시 펀드) 통한 자금조달 등 새로운 정책수단 도입

○ 다양한 유형의 주택공급 확대

- 건축·입지규제 완화(세대수·방설치 제한 등), 건설자금 지원(기금융자 확대 등), 세부담 완화(원시취득세 감면)
- 소형 신축주택 주택 수 제외, 단기 등록임대주택 도입, 기업형 임대 등 활성화

○ 신도시 등 공공주택 공급

- '24년 민간참여 확대를 통한 14만호 이상 공공주택 공급
- 수도권 중심 공공 신규택지 2만호 추가 확보

○ **건설산업 활력 회복**

- **공적 PF 대출 보증 확대**, 불합리한 **과도한 수수료 계약 사항 시정**
- 지방 준공 미분양 세부담 완화 및 민간사업장 애로 해소(LH 사업검토 후 공공지원)
- 국토부 집중관리대상 예산 56조원(전년比 + 5.5조)의 35.5%, 19.8조원 '24.1분기 집중투자, 개량형 민자모델 구축 등 민자사업 적극 추진

4 정책효과

○ 민간 부문 **수요·공급 규제 개선, 주택건설 사업성 제고 신규 사업** 착수 및 **정체 사업** 재개 활성화

○ **공공의 공급물량 확대**, **민간참여 확대**를 통한 **공급 정상화 견인**

- 재건축·재개발 제도개선 등을 통해 '24 ~ '27년 동안 정비사업에 약 95만호(기존 대비 + 65만호) 착수하여 도심 주택공급 기반 확충
  * 30년 이상 아파트 173만호('22년 기준)가 재건축 착수 가능 대상
- '24년 공공주택 14만호 이상(전년比 + 6만호) 공급하고, 非아파트는 평년 수준 회복(12만호, 전년比 + 6만호)을 통해 54만호 이상 공급(인허가)

별첨 과제별 추진과제

추 진 과 제	조 치 사 항	일 정	소 관 부 서
1. 도심 공급 확대			
1 재건축·재개발			
▪ 안전진단 통과 의무시기 조정	도시정비법 개정안 발의	'24.2.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
▪ 사업주체 구성 조기화	도시정비법 개정안 발의	'24.2.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
▪ 신탁방식 효율화	도시정비법 개정안 발의	'24.2.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
▪ 노후도 요건 완화	도시정비법 시행령 개정	'24.4.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
▪ 기금융자 신설 및 보증대상 확대	기금운용계획 변경	'25.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
▪ 초과이익 제외 비용인정 확대	재건축초과이익환수법 시행령 개정	'24.3.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
▪ 공사비 갈등 예방 및 조기 해소	표준계약서 배포	'24.1.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
▪ 도시분쟁조정위 재판 효력 부여	도시정비법 개정안 발의	'24.2.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
2 노후계획도시 재정비			
▪ 선도지구 지정	선도지구 공모	'24.下	국토교통부 도시정비기획준비단
▪ 미래도시 펀드 조성	펀드 재원 조달방안 마련	'25.下	국토교통부 도시정비기획준비단
▪ 신도시 정비 전용 보증상품 출시	전용 보증상품 마련	'24.11	국토교통부 도시정비기획준비단
▪ 총괄사업관리자 운영	총괄사업관리자 지정	'25.上	국토교통부 도시정비기획준비단
▪ 공공기여금 유동화 추진	유동화 방안 마련	'24.10.	국토교통부 도시정비기획준비단
▪ 이주단지 조성	신도시별 이주단지 1개소 조성 착수	'25.下	국토교통부 도시정비기획준비단

추 진 과 제	조 치 사 항	일 정	소 관 부 서
3 소규모 정비·도심복합사업			
■ 소규모 정비 사업요건 개선	소규모주택정비법 시행령 개정	'24.4.	국토교통부 도심주택공급협력과
■ 소규모 정비 공공참여 확대	사업지 추가 공모 시행	'24.3.	국토교통부 도심주택공급협력과
■ 소규모 정비 절차 간소화	소규모주택정비법 개정안 발의	'24.3.	국토교통부 도심주택공급협력과
■ 도심복합사업 우선공급기준일 합리화 및 일몰연장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 발의	'24.3.	국토교통부 도심주택공급총괄과
■ 용적률 인센티브 및 기금융자 지원 확대	소규모주택정비법 개정안 발의	'24.3.	국토교통부 도심주택공급협력과
	HUG 내규 개정	'24.2.	국토교통부 도심주택공급협력과
■ 재정비촉진지구 노후요건 완화	도시재정비법 개정안 발의	'24.2.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
2. 다양한 유형 주택공급 확대			
1 공급 여건 개선			
■ 도생주 세대수 제한 폐지	주택법 개정안 발의	'24.2.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 도생주 방 설치 제한 폐지	주택법 시행령 개정	'24.4.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 도생주 주차장 기준 완화	주택건설기준 규정 개정	'24.4.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 중심상업지역 단일공동주택 건축 허용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	'24.4.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
■ 오피스텔 발코니 허용	오피스텔 건축기준 개정	'24.3.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
■ 신축 소형 주택 원시취득세 감면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발의	'24.2.	행정안전부 지방세특례제도과
■ 비아파트 융자심사기준 신설	대출업무시행세칙 개정	'24.2.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
■ PF 보증한도 확대 및 요건 완화	HUG 내규 개정	'24.3.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
■ 도생주 등 융자한도 상향	기금운용계획 변경	'24.2.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

추 진 과 제	조 치 사 항	일 정	소 관 부 서
2 소형주택 활용도 제고			
▪ 개인 소형 신축 주택수 제외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	'24.5.	행정안전부 부동산세제과
	소득세법 시행령·종부세법 시행령 개정	'24.5.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
▪ 임대사업자 소형 기축 주택수 제외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	'24.5.	행정안전부 부동산세제과
▪ 단기 등록임대 복원	민간임대주택법 개정안 발의	'24.2.	국토교통부 민간임대정책과
▪ 주택가격 산정방식 개선	공시가격 및 기준시가 적용비율 개정	'24.6.	국토교통부 민간임대정책과
▪ 공공지원 민간임대 대출기관 확대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개정	'24.2.	국토교통부 부동산투자제도과
▪ 기업형 사업자 기금융자 한도 상향	기금운용계획 변경	'24.2.	국토교통부 민간임대정책과
▪ 자율형 장기임대 도입	민간임대주택법 개정안 발의	'24.2.	국토교통부 민간임대정책과
▪ 신축매입약정 단가 현실화 및 물량 확대, 매입 평가방식 보완	LH 내규 개정	'24.1.	국토교통부 주거복지지원과
▪ 신축매입약정 PF 보증 도입	HUG 내규 개정	'24.2.	국토교통부 주거복지지원과
▪ 신축매입약정 용적률 인센티브 확대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	'24.4.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
3 전세사기 피해지원 및 예방 강화			
▪ 피해주택 협의 매수	피해주택매입업무처리지침 개정	'24.2.	국토교통부 주거복지지원과
▪ 전세임대 지원 신설	즉시 시행 가능	'24.1.	국토교통부 주거복지지원과
▪ 매입임대 요건 완화	피해주택매입업무처리지침 개정	'24.1.	국토교통부 주거복지지원과
▪ 금융지원 확대	전세사기피해자법 개정안 발의	'23.11. 기 발의	국토교통부 피해지원총괄과
▪ 지원체계 정교화	원스톱서비스 시행방안 마련	'24.1.	국토교통부 피해지원총괄과
▪ 법률전문가 연계 강화	법률전문가 연계방안 마련	'24.1.	국토교통부 피해지원총괄과
▪ 중개사 공제한도 확대, 지급절차 간소화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및 주택·상가임대차법 시행령 개정	'24.10.	국토교통부 부동산개발산업과
▪ 공인중개사 확인·설명 의무 강화	공인중개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24.2.	국토교통부 부동산개발산업과
▪ 임대관리업체 요건 강화 및 의무 부여	민간임대주택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24.5.	국토교통부 민간임대정책과
▪ 확정일자 확인 후 대출 사업 확대	RTMS 시스템 기능개선 후 시행	'24.4.	국토교통부 주택임대차기획팀
▪ 안심전세앱 고도화	안심전세앱 기능개선 등	'24.3.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

추 진 과 제	조 치 사 항	일 정	소 관 부 서
3. 신도시 등 공공주택 공급			
1 공공주택 공급 확대			
▪ 토지리턴제 확대 및 시행 연장	택지공급기준 개정	'24.1.	국토교통부 부동산개발산업과
▪ 민간참여사업 확대	LH 민간참여사업 공고	'24.3.	국토교통부 공공택지기획과
▪ 민간 단독 사업시행 근거 마련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 발의	'24.2.	국토교통부 공공주택정책과
2 3기 신도시 등 공공택지			
▪ 신규택지 발굴	신규택지 발표	'24.	국토교통부 공공택지기획과
▪ 수도권 신도시 토지이용 효율화	지구계획 변경 신청	'24.3.	국토교통부 공공택지기획과
▪ 신도시리츠 도입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개정 (필요시 기금·연기금, 금융 공공기관 등 자금운용 관련규정 개정)	'24.4.	국토교통부 도심주택공급협력과
▪ 지방공사 참여 확대	사업시행자간 사업참여비율 결정	'24.	국토교통부 도심주택공급협력과
▪ 조기 보상착수 의무화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개정	'24.3.	국토교통부 공공택지기획과
4. 건설산업 활력 회복			
1 자금조달 및 유동성 지원			
▪ PF 대출 대환보증 신설	HUG 내규 개정	'24.2.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
▪ 보증기관 상설협의체 구성	보증기관 상설협의체 구성	'24.4.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
▪ PF-ABCP의 대출 전환 확대	HUG 내규 개정	'24.1.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
▪ 책임준공보증 확대	공제조합 내규 개정(23.12)후 시행 중	'24.1.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과
▪ 비주택 PF보증 도입	연구용역 추진(건설공제조합)	'24.3.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과
▪ 건설사 특별융자 확대	공제조합 내규 개정	'24.3.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과

추 진 과 제	조 치 사 항	일 정	소 관 부 서
2 민간 애로 해소			
▪ 지방 준공후 미분양 임대주택 활용시 원시취득세 감면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발의	'24.2.	행정안전부 지방세특례제도과
▪ 지방 준공후 미분양 구입시 주택수 제외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	'24.5.	행정안전부 부동산세제과
	소득세법 시행령 종부세법 시행령 개정	'24.5.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
▪ 지방 준공후 미분양 구입시 1세대1주택 특례 적용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발의	'24.2.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
▪ 인구감소지역 1주택 추가 구입시 1주택 특례 유지	소득세법, 종부세법 개정안 발의	'24.9.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	'24.5.	행정안전부 부동산세제과
▪ 공공지원 민간임대 지분 양수 기준 완화	HUG 내규 개정	'24.2.	국토교통부 민간임대정책과
3 사업장 갈등 해소			
▪ 민관합동PF 조정위 기능 강화	연구용역 완료	'24.4.	국토교통부 부동산투자제도과
▪ 건설분쟁조정위 기능 강화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 발의	'24.5.	국토교통부 건설산업과
▪ 민간사업장 LH 매입후 정상화	필요시 사업장별 사업성 등 검토	'24.1.~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
4 건설사업 관련 리스크 완화			
▪ 수분양자 애로 해소	수분양자 정기적 안내 등	'24.1.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
▪ 하도급대금 체불 피해 방지	관계기관 합동 실태조사 추진	'24.1.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과, 공정거래위원회 신산업하도급조사팀
▪ 위기사업장 모니터링 체계 구축	건설산업 신속대응반 운영	'24.1.~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과
5 건설투자 활성화			
▪ 재정 집행을 통한 건설투자 확대	SOC 예산 조기집행 등	'24.1.	국토교통부 재정담당관
▪ 민자사업 확대	연 2회 정기평가 등	'24.	국토교통부 철도투자개발과

21. 늘봄학교 본격 도입 (교육부)

《 교육위원회 》

◇ 2024년부터 희망하는 초등학생에게 기존의 방과후와 돌봄을 통합한 종합 교육프로그램인 늘봄학교를 전국에 본격 도입함

1 추진배경

○ 교육기회 보장을 통한 교육격차 해소 및 사교육비 경감 등 자녀 양육 부담 완화로 여성 경력단절, 초저출산 문제 극복(국정과제 84-2)

2 주요내용

○ **(운영 확대)** '23년 전국 8개 지역에서 시범운영한 늘봄학교를 '24년 1학기 전국 2,000개로 우선 운영, 2학기 전국 모든 초등학교로 확대

○ **(대상)** 초등학교 1학년 학생

○ **(프로그램)** 학교생활 적응을 위한 놀이활동 중심의 예·체능, 심리·정서 프로그램, 대학·기업·지자체 등 지역사회 우수 교육자원을 적극 활용한 학생의 성장·발달 맞춤형 프로그램 등을 1년간 매일 2시간 내외로 무상 제공

○ **(효과)** 방과후와 돌봄 통합으로 학부모의 사교육비 경감, 양육 부담 완화

‹‹ 전북자치도교육청 추진현황 ››

○ 지역별 수요를 반영한 거점돌봄센터 구축·운영(자체형, 지자체 협력형, 위탁형 등)

○ 지역사회 자원을 활용한 학교 밖 늘봄 운영(교육지원청, 211개 기관)

22. 개정「학교폭력예방법」, 2024년 1학기부터 시행(교육부)

◇ **피해학생의 보호, 가해학생의 선도·교육 및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간의 분쟁조정을 통하여 학생의 인권을 보호**

1 관계법령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2 추진배경

○ 학교폭력 심의과정에서 피해학생을 두텁게 보호하고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강화

3 주요내용

○ **(시 행)** 2024년 1학기(2024. 3. 1)

○ **(가해학생)** 학교폭력 사안 발생 시 가해학생은 피해학생과 신고자에 대한 **접촉·협박·보복행위가 금지**(2호), 이를 위반할 경우 **6호 이상의 조치**(출석정지, 학급교체, 전학, 퇴학처분),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교육**이 긴급한 경우 가해학생을 **학교장 긴급조치로 학급교체**(7호)로 **엄정 조치**

○ **(피해학생)** 신설된 **피해학생 지원조력인**(전담지원관)**제도**를 통해 법률, 상담, 치유·보호 등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고, 가해학생이 행정심판·소송을 제기한 경우 **피해학생의 진술권을 보장**하여 **두텁게 보호**

○ **(대응력 제고) 교원**의 정당한 사안처리 및 생활지도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이 면제**, 국가 책무성 강화를 위해 **국가 수준의 학생 치유·회복 전문교육기관 설치 근거**를 마련

23. 유치원·어린이집 관리체계 일원화 (교육부)

◇ 이원화 체제로 인한 비효율과 격차 초래를 해소하고, 영유아 시기부터 일관되고 연속성 있는 교육·돌봄 정책 추진

1 관계법령

○ 「정부조직법」, 「영유아보육법」

2 추진배경

○ 유보통합 쟁점들을 책임있게 조율하여, 정책이 현장에 안정적, 조기 실현되도록 관리체계 일원화를 위한 기반 마련

3 주요내용

○ **(기본방향)** 보건복지부, 시·도청, 시·군·구청의 영유아보육 업무(정원, 예산 포함)를 교육부, 시·도교육청으로 이관

○ **(이관범위)**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영유아보육' 업무

○ **(이관전략)** 중앙 - 지방 순차 이관(先중앙, 後지방) 추진

- 안정적인 업무 이관과 서비스 전달을 위해, 「정부조직법」 개정('23.12.8.)에 따른 중앙부처 업무 이관을 먼저 추진하고, 후속으로 지방단위 이관을 위한 「지방교육자치법」 개정 등을 추진

《 전북자치도교육청 추진현황 》

○ 누리과정 운영 어린이집 급식비 지원(12,037명)

○ 관리체계 일원화를 위한 협의체 구성(추진협의회 4회, 추진단 운영)

Ⅱ. 지자체 추진 사업 사례

Ⅱ. 지자체 추진 사업 사례

1. 자립준비청년 취업 역량강화 지원 (경기도) 《행정자치위원회》

◇ 경기도내 거주 자립준비청년 대상 어학시험, 자격증 응시료 및 교육학습비 지원

1 추진배경

○ 도내 미취업 청년 대상 실질적 지원 정책 시행 필요

○ 자립준비청년 각종 사설시험 및 국가기술자격 등 시험 응시료 부담 해소

2 주요내용

○ **(추진경과)** ('23.上) 경기도내 1만 2,593명 청년, 5억 7,600만원 응시료 혜택

○ **(지원대상)** '23.1.1.부터 경기도에 주소를 두고 있는 청년 중 응시일 기준 미취업 상태

○ **(지원내용)** ※ 신청자 기준으로 지원

- 토익 등 어학 19종, 국가기술자격 544종, 국가공인 민간자격 95종 응시료 실비 지원
- 1인당 최대 지원금 : 30만원 / 시험당 최대 10만원까지 3회에 걸쳐 수혜 가능
  * 저가 시험 위주 응시 청년 위해 연간 총 10만원 범위에서는 4회 이상 지원
- 교육학습비 (학원비, 인터넷 강의 수강료) 지원, 취업관련 교육 프로그램 운영

3 기대효과

○ 경제적 자립이 어려운 시기의 자립준비청년 대상 취업 위한 응시료 부담 경감

○ 취업률 제고 및 자립준비청년의 지역 유입 유도

<< 전북자치도 추진현황 >> **(관계부서 : 기획조정실, 복지여성보건국)**

○ 「전북청년 지역정착 지원」 사업, 「전북형 청년활력수당」 사업을 통해 각각 일정 중위소득 기준으로 현금성 복지 지원 (6개월간 월 30~50만원)

○ 「자립준비청년 자립지원 체계구축」 사업을 통해 주거 · 학업 · 취업 · 의료 등 분야에서 1인당 400천원 한도 지원 (대상자 : 107명)

→ 단순 현금성 지원사업 탈피, 보조금 투입 실효성 제고 필요

→ 「전북특별자치도 자립준비청년등의 자립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3.6.16.제정)에 따른 취업 위한 자격시험 응시료 지원사업 '세분화' 시행 검토 필요

2. 저소득 다문화 자녀 교육활동비 지원 (인천광역시)

◇ 저소득 다문화가족자녀 대상 교육활동비 지원 ⇨ 학습격차 해소, 안정적 성장 지원

1 추진배경

○ 다문화가족 자녀의 성장단계별 진로 지원 확대 및 역량 강화 필요

○ 국정과제 이행속도 제고 (『다문화가족 자녀 맞춤형 지원체계 강화』)

※ 여가부, '24년부터 다문화가정 자녀 가구에 교육활동비 지원

2 주요내용

○ **(지원대상)** 중위소득 50% 초과 ~ 100% 이하 다문화가구의 7 ~ 18세 자녀

○ **(지원금액)** 연간 초등 40만원, 중등 50만원, 고등 60만원 차등 지원

○ **(지원내용)**

- 교재구입, 독서실 이용, 온라인 학습권 구매 등 교육활동비 지원
- 시내 군 · 구 가족센터 전담인력을 통한 사례관리

○ **(지원방법)**

-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예산으로 편성 (국 50%, 시 25%, 군 · 구 25%)
- 현금이 아닌 바우처 카드 형태로 지원

3 기대효과

○ 교육부의 기존 교육급여 (중위소득 50% 이하인 가구에만 지원)의 80% 수준으로 기존 교육급여를 받지 못하던 다문화가정 수혜 가능

○ 취약계층인 다문화 가정의 학력과 정서를 모두 고려, 종합지원 가능

《 전북자치도 추진현황 》 (관계부서 : 복지여성보건국, 교육소통협력국)

○ 다문화가족 자녀지원 사업 시행 (전주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 교육활동비 업무 관련 직원 (2명) 채용절차 진행中 (접수 : '24.1.22. ~ 24.)

→ 시군별 지원대상 현황 전수조사, 해당사업 적극홍보 및 신청절차 안내 (지원) 등 사업 수혜자 확대를 위한 방안 강구 필요

3. 우수인재 해외유학비용 지원 (세종특별자치시)

◇ 관내 소재 대학 및 대학원 졸업(예정)자에게 유학 장학금 지원, 글로벌 인재 육성

1 추진배경

○ 우수 인재 양성 지원 차별화 정책 시행, 정주여건 조성 및 지역발전 도모

○ 학업성적이 우수하나 경제적 이유로 해외 유학을 포기하는 학생 지원 가능

2 주요내용

○ **(지원대상)** 해외대학 석·박사학위 취득 희망하는 관내 대학(원) 졸업(예정)자

○ **(지원내용)** 최대 2년 (4학기) / 1인당 1년 기준 최대 5천만원

* 등록금 및 생활비 포함, 국비유학 장학생 일반전형 지급기준

○ **(지원자격)** 거주요건, 대학(원) 학업 및 외국어 공인어학시험 성적 등 충족자

* 거주요건 : 접수일 기준 세종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자/유학종료일까지 지속 거주

○ **(선발방법)**

서류심사 (100점) + 가점 (최대 10점)	면접심사 (100점)	최종선발
- 대학성적 : 30점 - 외국어성적 : 30점 - 자기소개서 및 수학계획서 : 40점	- 전공분야 : 50점 - 인성분야 : 50점	서류 (30%) + 면접 (70%)

3 기대효과

○ 세종형 우수인재 발굴·지원 → 지역 내 인적 인프라 구축

○ 관내대학 육성 및 지역 상생발전 → 교육으로 지역활력 도모

‹‹ 전북자치도 추진현황 ›› [관계부서 : 교육소통협력국]

○ 전북자치도 평생교육장학진흥원에서 인재육성을 담당하고 있으나, '글로벌 해외연수'는 '19년 이후 코로나19로 인해 취소된 이후 진행하지 않고 있음

→ 지역 인적자원개발 및 관내대학과 지역간 상생발전 차원에서 해외 유학 장학금 지원 제도 정비 (유학기간, 지원규모 등) 후 재실시 검토 필요

4. 어르신 병원동행서비스 운영 확대(강원특별자치도) 《환경복지위원회》

◇ 보호자 동행이 필요한 어르신에게 동행매니저가 병원 이용에 대해 전반적인 보호자 역할 수행

1 추진배경

○ 혼자 병원을 이용하는 데에 어려움을 겪는 어르신께 병원동행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보호자 부담 경감 및 노인돌봄 강화

2 주요내용

○ **(지원규모)** '23년 3개 시군 시범추진(춘천, 동해, 횡성) → '24년 14개 시군 확대 추진

○ **(지원대상)** 만 65세 이상 병원 이용 시 도움이 필요한 어르신 누구나 신청하여 이용가능하며 단, 서비스 이용료가 있으며 교통비는 자부담

* 이용료 기본 1시간 5,000원, 추가 30분당 1,500원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1,000원(기본 1시간 1,000원, 추가 30분당 500원)

○ **(지원내용)** 집과 병원 간 이동 동행, 접수·수납, 각종 검사실 및 시술실 이동 안내, 처방전 및 약품수령, 투약지도, 진료정보 보호자 전달 등

- '동행매니저 과정'을 이수한 자로서 노인돌봄 및 병원동행서비스에 대한 기본소양교육을 이수한 매니저가 동행

3 사업효과

○ 노인 인구의 증가에 따라, 거동이 불편한 노인가구, 어린아이가 있는 한부모 가정, 병원에 혼자가기 힘든 1인 가구 등 병원동행 편의 제공

<< 타 지자체 추진현황 >>

→ **현재 서울을 시작으로 경기, 인천, 강원도까지 확대 시행되고 있으며** '병원동행매니저' 는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간호사, 장애인 활동지원사 등 자격증을 소지한 자를 대상으로 고용 효과 및 어르신 돌봄 효과가 있으므로 사업의 수요조사 후 도입 여부 검토 필요

* 전주시 '어르신 병원동행 사업' 시범 진행 중('23.06.~)

5. 서울시 마약관리센터 조성 (서울특별시)

◇ **마약류 중독 위험에 빠진 시민들에게 하나의 시설에서 '검사-치료-재활' 등 의료 및 사회적 치료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하여 건강한 지역사회 일원으로 복귀지원**

1 추진배경

○ 분절적으로 제공 중인 마약류 중독자 '검사-치료-재활-사후관리 서비스'를 통합(One-stop)으로 제공하는 마약관리센터를 조성하여 급격히 증가하는 마약류 위협으로부터 시민 보호 강화

2 주요내용

○ 마약관리센터는 마약류 질환자의 '상담·치료·재활' 서비스와 '연구·교육'을 동시에 수행하는 **전국 최초 마약류 중독자 통합관리 공공시설**임

○ 마약류 문제에 조기 개입하고 실효성 있는 마약류 중독자 치료를 위해 정신질환 전문병원인 시립은평병원 내 '서울시 마약관리센터 설치·운영

○ 서울시민 누구나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며 '24년 10월부터 운영 예정

3 사업효과

○ 최근 급증하는 마약류 피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검사-치료-재활' 등 통합서비스를 제공하여 마약류 중독에 노출된 시민들을 보호

○ 민간 중심으로 운영되던 마약류 중독치료 서비스를 민·관이 협력하여 보다 촘촘하게 마약류 중독자 회복 지원 효과기대

《 전북자치도 추진현황 》 (관계부서 : 복지여성보건국)

→ 전라북도 **마약류사범이 '22년 204명으로 '18년 85명 대비 약 140% 증가**하였으나, 현재 추진하고 있는 마약류 관련 사업은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사업」과 「마약퇴치운동본부 전북지부 사업비 지원」사업으로 총 4천만 원의 예산이 전부임. 기존사업의 참여율이 저조하여 **마약류 예방과 근절을 위해 사업의 정비나 개선이 필요함**

6. 국내최초 순수 전기 여객선 상용화 임박 (전라남도)

◇ **탄소중립 실현으로 깨끗한 해양환경 조성을 위한 바다 위의 전기차, 친환경 전기 여객선 운항 준비로 '해양분야 미세먼지 제로화' 기여**

1 추진배경

○ 무탄소 전기 선박 개발로 해운분야 미세먼지 제로화

2 주요내용

○ 전기차도선* 개발(국내최초), 이동식 전원 공급 시스템 개발(세계최초)

* 여객선의 한 종류로 여객 및 적재구역에 차량 등 화물을 수송할 수 있는 선박

○ '24년까지 실증 운항 및 최적화 작업 끝나면 '25년부터 전기 선박 이용가능

* 전라남도 목포시(남항 일원)



3 사업효과

○ 기존 연료유 선박(디젤 연료)과 달리 매연이 없고 소음이 적어 쾌적한 환경에서 배를 탈 수 있음

○ 이동식 전원 공급 시스템은 도서 지역의 불안정한 전력 수급에 대비한 예비 전력으로도 활용 가능

<< 전북자치도 추진현황 >> **(관계부서 : 새만금해양수산국)**

→ **전기차도선은 전기만을 100% 동력원으로 사용하여 미세먼지, 탄소 등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지 않아 환경보호 효과**가 크며, **친환경선박 산업 육성으로 경제 파급효과**도 상당하다고 분석됨. **장기적으로 탄소중립 실천을 위한 해양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 도입 검토**가 필요함

* 2023년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개장 시, 국내 최초 순수 전기여객선 '정원드림호'를 운항하는 프로그램으로 관람객들의 큰 호응을 얻음

7. 전국 최초 「산림이용진흥지구」 시행 (강원특별자치도)

◇ 강원특별자치도에 특별히 완화된 산지규제 기준을 적용하는 전국 최초·유일한 새로운 개념의 지구로, 일정한 요건을 갖춘 지역을 진흥지구로 지정(3ha 이상)하고 규제를 일괄 완화하여 산지를 활용한 개발사업의 문턱이 대폭 낮아짐

1 추진배경

○ 「강원특별법」 산림 분야 특례 제정으로 '산림이용진흥지구'가 첫 명시

○ 「산림이용진흥지구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제정('23.11.)으로 산림이용진흥지구 지정 등 시행에 필요한 근거 규정 마련

2 주요내용

○ 보전산지에서의 행위제한과 산지에서의 허가 기준 완화 적용

- 진흥지구개발계획의 모든 사업·시설 허용, 경사도 25→35도, 표고 50→80%

○ 산림이용진흥지구 사업 추진 시 국유림 활용 대폭 확대

- 진흥지구가 지정된 경우 국유림의 재구분, 매각·교환, 대부, 영구시설물 설치 등

○ 개발을 위한 다른 법령의 관련 계획 ·구역 등 지정 및 수립 효과

- 관광지 및 관광단지의 지정, (민통선내) 생태적 산지전용지구의 지정 등

3 기대효과

○ 산림이용진흥지구 활용으로 산림 자원의 지역발전의 토대 마련

○ 산림이용진흥지구 지정으로 민통선 활용의 가능성을 높임

※ 2024년 6월 시행 예정

《 전북자치도 추진현황 》 (관계부서 : 환경녹지국)

○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50조(**친환경 산악관광지구 특례**)에 따라, 산악관광자원과 잠재력이 풍부한 지역을 산악관광지구로 지정 가능함. 산림자원의 훼손은 최소화하면서 합리적으로 산림을 관광자원으로 관리하는 친환경 산악관광 기반 마련이 필요함

8. 청년농어업인 연령 50세로 상향 (경상남도) 《농산업경제위원회》

◇ 청년농어업인 연령 '45세' ⇨ '50세 미만'으로 확대

1 추진배경

○ 「경상남도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23. 10. 10.)

2 주요내용

○ 고령화된 농업·농촌 현실을 반영하고, 인구유출을 최소화하기 위해 경상남도의 청년농업인 연령 기준을 확대

○ "청년농어업인"이란 도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면서 농업 또는 어업 분야에 종사하고 있거나 창업 또는 취업할 의사가 있는 사람으로서 18세 이상 50세 미만인 사람(제2조제2호)

3 타시도 사례

○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 · 지원에 관한 법률」(2020.5.19.제정)

- 후계농어업인: 나이가 50세 미만인 사람/ 농업 또는 어업을 경영하는 경우에는 총 영농 기간 또는 총 영어 기간이 10년 미만인 사람
- 청년농어업인: 농업 또는 어업 분야에 종사하고 있거나 창업 또는 취업할 의사가 있는 사람으로서 40세 미만(강원특별자치도, 경기도, 경상북도, 전라남도, 충청남도, 충청북도)

○ 「경상남도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 청년농어업인: 18세 이상 50세 미만(부산광역시, 광주광역시 광산구, 무주군, 옥천군, 장수군, 창원시, 평창군, 함안군

○ 「전북특별자치도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

- 청년농어업인: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경영체로 도내에 거주하는 만18세 이상 45세 미만(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도)

Ⅱ. 지자체 추진 사업 사례

≪ 전북자치도 추진현황 ≫ [소관부서 : 농생명축산식품국]

○ 전북자치도는 국비 지원 사업으로 청년창업농 영농정착지원(40세)을 「전북특별자치도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에 근거하여 지원하고 있음

※ 40~45세: 전북형 청년창업농 영농정착지원 사업

45세: 청년창업농 정책자금 이차보전, 청년창업농 영농기반 임차 지원, 청년농업인 생생동아리 지원 사업

○ 전북자치도는 대표적인 농도이며, 농촌지역은 노령층인구가 급격히 증가하여 초고령화사회에 진입하고 있음

○「전북특별자치도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개정 검토

- 청년농어업인 연령 기준 확대 (수혜대상 확대) 검토

* (현 조례) 18세 ~ 45세미만 (개정검토) 18세 ~ 50세 미만

-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어업인' 포함 검토

* (현 조례) '청년농업인'만 포함되어 있음

9. 충북형 도시농부 (충청북도)

◇ 75세 이하 유휴인력 대상 ⇨ 농업인력으로 육성하는 농촌일자리 사업

1 지원개요

○ 도시농부 ※ 기존 도시농부는 현행 자격 유지

○ 20세 이상 75세 이하의 농업경영을 하지 않거나 농업에 종사하지 않는 유휴인력 중 신규로 도시농부 활동을 희망하는 자

○ 농업경영체 최소 등록기준의 2배 규모까지 참여 허용

《 농업경영체 최소등록기준 및 허용 범위 》

◆ (노지) 농작물 재배 1,000㎡ → 2,000㎡ 까지

◆ (시설) 채소·과실·화훼작물 재배 660㎡ → 1,320㎡ 까지
고정식온실·버섯재배사·비닐하우스 330㎡ → 660㎡ 까지

◆ (가축) 330㎡ 이상의 농지에 축사관련 부속시설 설치
- 소 2마리 → 4마리까지 / 돼지 10마리 → 20마리까지
- 닭(육용) 1,000마리 → 2,000마리까지 / 닭(산란용) 500마리 → 1,000마리까지

○ **(수요처)** 도내 주소를 두고 영농을 영위하는 농가, 농업법인 등 농업경영체 읍면에 주소를 두면서 농산물을 주원료로(50% 이상) 사용하는 식품 제조업체

2 지원내용 : 도시농부중개센터 알선·중개를 통한 충북형 도시농부 인력 지원

○ 1인당 인건비(6만원) 중 2만4천원(도시농부 1일 4시간 근로 기준)

※ 수요처에서 도시농부 농작업 시 6만원 지급, 추후 시군에서 농가로 2만4천원 지급

○ 작업장까지 이동하는 교통비(거리에 따라 차등 지급), 교육참여 수당

○ 농업활동에 대한 도시농부 상해보험 일괄 자동가입 등

○ 수요처(농업인 및 농업법인)는 도시농부중개센터를 통하여 인력요청을 하고 농가-도시농부 매칭으로 농작업 진행

※ 고령, 여성, 장애 등 취약 농가와 재난·재해 피해 농가 우선 지원

○ 친인척이 도시농부 인력지원 대상으로 참여시, 보조금 지원대상 배제

※ 배우자, 직계존비속(배우자의 직계존비속 포함), 직계존비속의 배우자, 형제자매(형제자매의 배우자 포함)

3 사업경과

○ 2022년: 괴산·청주·보은 등에서 시범사업 실시

○ 2023년: 충북 11개 시·군 전역 확대 시행

○ 2024년: 도시농부사업 전산시스템 도입

‹‹ 전북자치도 추진현황 ›› [소관부서 : 농생명축산식품국]

○ 도시농부사업이 농촌 인건비 안정화, 지역 관광지·맛집 홍보 효과, 관계인구 증가 효과, 젊은이들의 농업에 대한 관심 유발 효과

○ 도시농부의 가족·친지들이 도내 관광지와 맛집을 방문하면서 관광 활성화 효과

○ 귀농에 관심 있는 도시민들이 도시농부로 참여하면서 귀농을 위한 작목 선택, 영농방법, 지역토착 주민과의 교류를 통해 안정적으로 농촌에 정착할 수 있는 영농실습장 역할

10. 그린수소 글로벌 허브 생태계 확장 (제주특별자치도)

◇ 그린수소 기반 에너지 생산·저장·활용 ⇨ 에너지 전환

1 추진배경

○ 정부의 2050년 탄소중립사회 실현을 위한 청정수소 공급체계 전환에 따른 그린수소 생산기지 구축

○ 그린수소 기반의 에너지 생산·저장·활용 등 에너지 전환을 위하여 그린수소 글로벌 허브 생태계 확장 조성 추진

2 주요내용

○ **(수소생산)** 재생에너지 활용 수전해를 통한 그린수소 생산확장

- 3MW 그린수소 생산기지 국내 최초 상용화 성공에 따른 본격 운영
- 12.5MW 그린수소 생산기지 구축사업 부지 확정(조천읍 북촌리) 및 착공
- 30MW 그린수소 생산기지 구축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진행절차 이행

○ **(수소보급)** 도내 주요 권역별 수소충전소 구축

- 국내 1호 함덕 그린수소 충전소 정식 상업운영
- 도내 서부권 민간 수소충전소 및 도심권내 이동형 수소충전소 구축 추진

○ **(국제협력)** 청정(그린)수소로의 에너지 전환 국제적 협력 플랫폼 구축

- 제2회 그린수소 글로벌 포럼 개최('24.6월 예정)
- 국제행사(P4G, COP 등) 연계 등 국제적 협력방안 모색 추진

《 전북자치도 추진현황 》 [소관부서 : 미래산업국]

○ 전북자치도는 「수전해 기반 수소생산기지 구축사업」 공모 사업 진행('22.6.~'25.5.)

○ '23년 「그린수소 생산클러스터 사업」 예타 통과 자진 철회

→ 향후 수소산업 육성 기본계획을 통한 새로운 로드맵과 정책 구상 필요

11. 전세사기 피해자 이사비 지원사업(전라남도) 《 문화건설안전위원회 》

◇ 전세사기 피해자 이사비 지원을 통한 주거 안정 도모

1 관계법령

○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3항, 제4항

2 추진배경

○ 최근 사회문제로 대두 된 전세사기, 깡통전세 피해자를 돕기 위한 세부 지원

○ 정부 특별법 제정, 피해 회복 추진 등 부처 합동 대응계획의 피해자 지원책 한계로 인한 이사비 직접 지원

3 주요내용

○ 전세사기 피해자 이사비 실제 비용 지원 (100만원 한도, 1회)

- 특별법상 전세사기 피해자 (피해자 등 포함)로 결정된 사람
- 피해주택 이사 후 도내 주택에 전입신고 완료 시

* 정부가 마련한 전세사기 피해 구제 정책 별개

《 전북자치도 추진현황 》 (소관부서 : 주택건축과)

○ 「비정상거처 거주자 이사비 지원」 사업 (계속)

- 목 적 : 최저 주거기준 미달 주택 및 비정상거처 거주자를 정상적인 거처로 이주할 수 있도록 이사비 지원
- 사업비 : 58백만원 (국비 29, 도비 29), * 국비 50%, 도비 50%
- 사업내용 : 가구당 40만원 내에서 이사비, 생필품 등 지원

12. 책 읽는 서울광장, 광화문 책마당 운영 (서울특별시)

◇ 일상 속 양질의 책과 정보·문화 향유가 가능한 시민 문화공간 조성

1 추진배경

○ 도심 속 독서·문화 활동을 즐기는 새로운 방식 제공

○ 공공 공간 활성화 및 시민들 간 소통과 교류 촉진

○ 자연환경과 문화를 결합, 도시생활의 질 향상 및 지속가능한 도시개발 촉진

2 주요내용

○ 열린 야외도서관 책읽는 서울광장 운영 ('23. 4 ~)

- 목 ~ 일 (주 4일), 평일 / 주말 맞춤형 책읽는 서울광장 운영

○ 보행광장 맞춤형 책문화 공간 '광화문 책마당' 운영 ('23. 4 ~)

- 책문화공간, 광장 북 캠핑, 북 버스킹 및 다양한 문화 프로그램 제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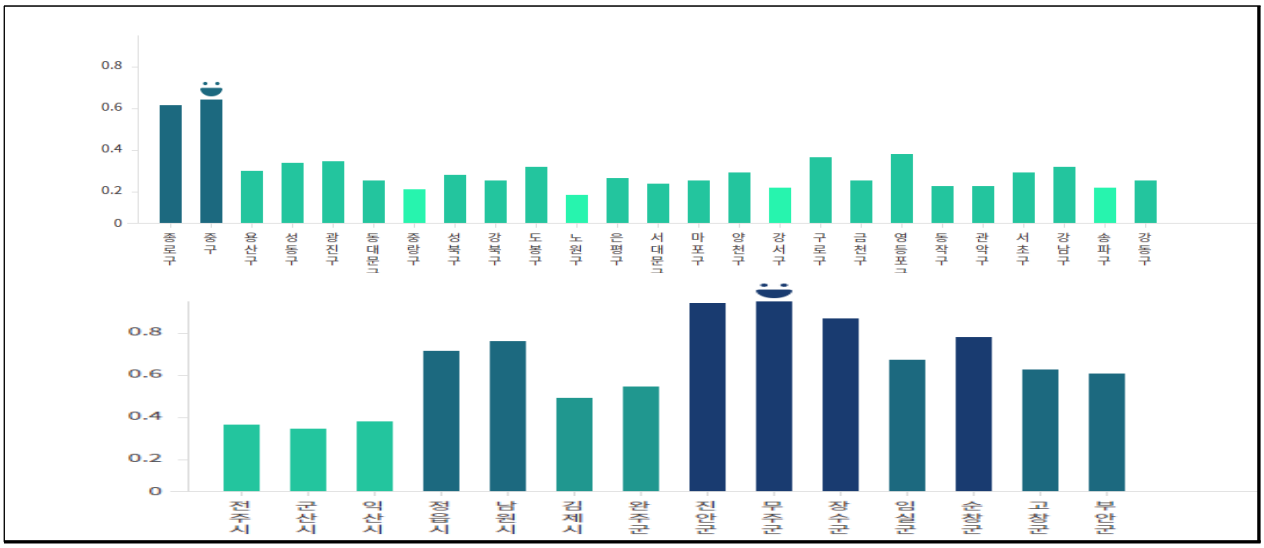
3 기대효과

○ 가족, 친구, 연인 등 일상에서 쉽게 찾고 이용 할 수 있는 도심 속 휴식공간 제공

○ 자기계발, 마음치유 등 프로그램 운영으로 '나의 행복지수 향상' 기여

- 도민을 위한 공간 조성 검토 필요 (도청 앞 잔디광장, 덕진공원 등)

* 삶의질데이터센터 (서울광장 : 중구, 광화문 : 종로구) 국민행복지수 여가부분 통계 자료



13. 지능형 CCTV 설치 확대 (서울특별시)

◇ 시 전역에 지능형 CCTV* 확대 설치 ⇨ 안전 사각지역 해소 및 시민안전 강화
* 지능형 CCTV : 관제구역 영상에서 상황발생을 자동으로 분석, 관제요원에게 알려주는 시스템

1 추진배경

○ '무차별 범죄' 등 시민 안전 위한 범죄 발생 예방 감시 시스템 필요

○ 통합관제센터 內 다수의 카메라를 소수 인력으로 관제하기 어려움

2 주요내용

○ 공원 · 등산로, 주거 · 상업지역, 하천변 · 산책로 등에 지능형 CCTV 확대 설치

* [서울특별시 지능형 CCTV 설치] (종전) 약 30% (변경) '26년까지 100% 전환

○ 딥러닝 (인공지능) 기술 활용, 배회 및 쓰러짐, 폭행 등 객체의 움직임을 감지하여 CCTV 통합관제센터 관제요원 화면 자동 전시 → 경찰관 상황전파

○ **(방범 CCTV 설치)**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안전사각지역 발굴 / 설치

○ **(노후 CCTV 교체)** 내구연한(7년) 경과한 CCTV 교체 (130만 화소→200만 화소)

○ **(지능형 CCTV 적용)** 기존 설치된 CCTV에 배회, 쓰러짐, 폭행 등을 자동 탐지할 수 있는 지능형 기술 적용 → 빠른 상황 인지 가능

3 기대효과

○ 안전사각지대에 지능형 CCTV 중점 설치, 이상동기범죄 예방 및 시민안전 보호

○ 경찰 · 소방 등 유관기관에 기존보다 빠르게 영상정보 제공, 신속한 대응조치

《 전북자치도 추진현황 》 (소관부서 : 도민안전실, 자치행정국)

○ 「방범용 CCTV 설치지원 사업」(계속) ※ ('24) 대당 400만원 X 150여대

→ 서울시 설치 지능형 CCTV : 대당 2,500만원

→ 도내 CCTV 설치 대수 대비 범죄율 변화, 시군별 통합관제센터 내 관제요원별 관리 CCTV 대수, 설치 가격 대비 효과 등 비교하여 지능형 CCTV 설치 고려 필요

14. 문화·체육·관광 행사 ESG 실천에 관한 조례(경기도)

◇ 행사 계획 및 운영에 ESG도입 탄소중립의 선제적 대응과 지속가능한 발전 실현 이바지

1 제정이유

○ 기후변화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 이를 해결하기 위해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 필요** 강조

○ 탄소중립을 위한 RE100 비전을 선포, 신재생에너지 사용 확대 등 정책 추진

○ **축제, 전시회, 공연 등 각종 행사 개최 시 대규모 일회용 폐기물, 음식물 쓰레기 등이 배출되어 탄소배출에 일정한 책임** 필요

○ 이에 행사 계획 및 운영에 이에스지(ESG)를 도입, **탄소중립의 선제적 대응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실현하는 데 이바지**

2 주요내용

○ '이에스지(ESG)'란 환경(Environment), 사회(Social), 거버넌스(Governance) 등 비재무적 성과를 중시하는 기업의 가치 평가 요소로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친환경 및 사회적 책임경영과 투명경영을 통해 지속가능한 발전을 추구하는 것으로 정의함(안 제2조).

○ 문화·체육·관광 행사를 개최·운영하는 데 있어 이에스지(ESG) 실천을 위한 고려사항을 규정함(안 제3조).

○ 도지사가 문화·체육·관광 행사의 이에스지(ESG) 실천을 위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5조).

○ 이에스지(ESG) 실천에 필요한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

○ 도지사가 문화·체육·관광 행사의 이에스지(ESG) 실천을 알리고 참여를 독려하기 위한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홍보 등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

○ 도지사가 문화·체육·관광 행사의 이에스지(ESG) 실천 확산과 활성화를 위해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

3 필요성

○ '지구온난화'를 넘어, '끓는 지구시대' 도래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이에 따른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 및 시스템 구축 필요**

○ 환경 보전, 사회적 가치 창출, 투명하고 효율적인 기업 지배구조의 강화 검토

별첨 경기도 문화·체육·관광 행사 이에스지(ESG) 실천에 관한 조례

[시행 2024. 1. 10.] [경기도조례 제7881호, 2024. 1. 10., 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 문화·체육·관광 분야 행사의 친환경적 개최 및 사회적 가치 증대를 위하여 이에스지(ESG)를 도입하여 지속가능한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이에스지(ESG)”란 환경(Environment), 사회(Social), 거버넌스(Governance) 등 비재무적 성과를 중시하는 기업의 가치 평가 요소로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친환경 및 사회적 책임경영과 투명경영을 통해 지속가능한 발전을 추구하는 것을 말한다.
2. “문화·체육·관광 행사”란 경기도(이하 “도”라 한다)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예산으로 개최하는 축제, 박람회, 전시회, 공연, 대회 등의 행사를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 문화·체육·관광 행사를 개최·운영하는 데 있어 이에스지(ESG) 실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할 수 있다.

1. 탄소배출 및 폐기물 저감 등 환경적 고려
2. 지역 사회에 미치는 영향 등 사회적 고려
3. 투명성 및 협업 등 거버넌스의 고려
4. 그 밖에 이에스지(ESG) 실천을 위한 사항

제4조(도지사의 책무)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문화·체육·관광 행사의 계획과 추진에 이에스지(ESG)를 실천하는 데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실천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적극 노력해야 한다.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도지사는 문화·체육·관광 행사의 이에스지(ESG) 실천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기본 목표 및 추진 방향
2. 실태조사 및 현황 분석
3. 이에스지(ESG) 실천 프로그램
4. 이에스지(ESG) 실천과 확산을 위한 교육 및 홍보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실태조사) ① 도지사는 효율적인 기본계획 수립 및 시책 추진을 위하여 이에스지(ESG) 실천에 필요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관련 전문 연구기관 또는 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7조(실천 교육·홍보 등) ① 도지사는 문화·체육·관광 행사의 이에스지(ESG) 실천을 알리고 참여를 독려하기 위한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홍보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다양한 이에스지(ESG) 실천 관련 정보를 수록한 안내서 또는 홍보 책자 등을 제작하여 보급할 수 있다.

제8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문화·체육·관광 행사의 이에스지(ESG) 실천 확산과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정부, 도내 시·군, 국내·외 기업, 기업 협의체 및 연구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9조(포상) 도지사는 문화·체육·관광 행사의 이에스지(ESG) 실천에 기여한 공적이 뛰어난 공무원, 도민 및 단체에 대하여 「경기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2024.1.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Ⅲ. 주요 연구기관 발표자료

Ⅲ. 주요 연구기관 발표자료

1. 경제동향('24.1.)(한국개발연구원)

《 행정자치위원회 》

‹‹ 요약 및 평가 ››

◇ 최근 내수 둔화 흐름을 보였으나, 반도체 중심으로 경기 부진 점진적 완화

□ 고금리 기조로 인해 소비와 투자 모두 둔화

○ 상품소비가 감소세를 지속하고 서비스 소비도 낮은 증가세 머무름

- 서비스소비 증가세 점차 둔화 : 숙박 · 음식점업 (-3.3%), 도소매업 (-1.5%)
- ('23.12.) 소비자심리지수, 시장금리 하락 등 영향으로 소폭 상승 (97.2→99.5)

○ 재고 수준 높게 유지 + 설비투자 소요 부진 + 건설수주 누적 감소 반영

- 이태원 참사로 인한 소비 위축 이후 기저효과, 소비자 재고 감소 (7.6%→-0.2%)
- 반도체 재고 높은 수준 유지, 특수산업용기계 감소세 확대 (-21%→-23.9%)
- 건설수주, 비용 상승으로 인한 사업여건 악화로 대폭 감소 (-29.5%)

○ 내수 부진 영향으로 고용증가세와 물가상승세 모두 둔화 흐름

- 서비스업, 내수 둔화 영향으로 숙박 · 음식점업, 정보통신업 중심 증가폭 축소
- 30대 (80.1%→79.6%), 50대 (77.6%→77.1%) 고용률 하락 / 20대 (61.1%→61.4%) 상승
- 고금리 기조로 인한 수요 둔화, 전체적인 물가 상승폭 축소

* 금융시장의 자산가격에 반영된 기대 인플레이션율도 점차 하락세

□ 수출 회복세, 경기 부진 완화의 주요인으로 작용

○ AI 서버용 수요 확대로 반도체 수출 대폭 증가, 자동차 수출도 양호한 흐름

- 반도체 수출 반등 (21.8%), 친환경 자동차 중심 자동차수출 높은 증가세 (17.9%)

○ 반도체와 자동차를 제외한 제조업의 부진도 점차 완화

- (일평균 기준) 반도체 (32.6%), 자동차 (28.4%)가 양호한 흐름, 이외 품목 (8.5%)도 부진 완화
- 수입은 에너지가격 하락에 기인하여 감소세 지속 (-11.6%→-10.8%)

《 시사점 》

1 물가관리 · 대응 부문 투입 예산 집중관리 및 핵심 생계비 부담 경감 노력

2 역전세 · 전세사기 등 피해 현황 지속관리 및 취약계층 주거지원 정책 강화

3 고금리 · 고물가 장기화에 따른 세밀한 소상공인 지원 정책 실현

4 중장년 고용안정 및 재취업 지원을 위한 일자리 지원 정책 강화

5 도내 지역관광 활성화를 위한 내 · 외국인 정책지원 강화

6 투자 조기 반등을 위한 정부정책 변화 추적/관리, 지방 투자(기업)유치 전략 강화

7 주요 특구 조성을 위한 지원(신청) 준비 만전

8 도내 인구감소지역 생활 · 방문 · 정주인구 확대를 위한 정책 세분화

9 지역 인프라와 결합한 유망 · 성장업종 집중 지원 및 청년 친화 산업 육성

10 지속가능한 지역 발전을 위한 재정 효율화 및 지방보조금 관리체계 강화

2. '24년도 예산안 심의결과 주요내용 (국회예산정책처)

≪ 요약 및 평가 ≫

◇ 약자복지, 미래준비 투자, 경제활력 제고, 국가 본질기능 수행 뒷받침 중점

□ 2024년도 예산 총수입은 612.2조원, 총지출은 656.6조원

○ 총수입은 전년 본예산 대비 13.5조원 감소, 정부안 대비 0.1조원 증가

○ 총지출은 전년 본예산 대비 17.9조원 증가, 정부안 대비 0.3조원 감소

□ 통합재정수지는 44.4조원 적자, 관리재정수지는 91.6조원 적자 전망

○ 통합재정수지는 전년 본예산 대비 31.3조원 악화, 정부안 대비 0.4조원 개선

○ 관리재정수지는 전년 본예산 대비 33.4조원 악화, 정부안 대비 0.4조원 개선

□ 국가채무는 1,195.8조원,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51.0% 전망

○ 국가채무는 전년 본예산 대비 61.4조원 증가, 정부안 대비 0.4조원 감소

○ GDP 대비 비율은 전년 본예산 대비 0.6%p 증가

□ 국가채무는 1,195.8조원,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51.0% 전망

○ 전년 본예산 대비 주요 증감분야

- 증가 : 보건 · 복지 · 고용 (+16.9조원), 국방 (+2.4조원)
- 감소 : 교육 (△6.5조원), R&D (△4.6조원)

○ 정부 예산안 대비 주요 증감분야

- 증가 : 산업 · 중소기업 · 에너지 (+0.7조원), R&D (+0.6조원)
- 감소 : 일반 · 지방행정 (△0.8조원), 국방 (△0.2조원), 외교 · 통일 (△0.2조원)

≪ 시사점 ≫ ※ 나라살림연구소, 『국회 증액 및 감액사업 리스트 공개 및 분석』 요약

1 지역 종교시설 관련 예산 대폭 증액

2 타당성용역 증액으로 대규모 사업을 국비 확보했다는 '현수막 예산' 다수 증액

3 '나눠먹기' 방식의 도로 등 지역개발 사업 다수 증액

4 부산지역의 예산 증액이 두드러짐

3. 제1차 지방시대 종합계획 발표 (국회예산정책처)

<< 요약 및 평가 >>

※ 지방시대위원회에서 발표한 종합계획을 국회 예산정책처에서 주요 동향으로 선정 / 요약

◇ 지방시대 5대 전략 : ① 지방분권 ② 교육개혁 ③ 혁신성장 ④ 특화발전 ⑤ 생활복지

□ 지방시대위원회, 「제1차 지방시대 종합계획 ('23~'27)」 발표 ('23.11.1.)

○ 주요목적 : 지방경제 체질 악화 극복, 교육과 정주여건 격차 해소

○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과 지방분권 5개년 종합실행계획을 포괄한 첫 통합계획

○ 중앙(17개 부처 · 청), 지방(17개 시도), 4대 초광역권 및 3대 특별자치권이 제출한 초광역권발전계획 반영

□ 전북도 주요 지역정책과제 (중앙부처 부문별 계획에 반영)

지역산업	교통인프라	지역숙원사업 등
국가식품클러스터 확대	새만금 인프라 조성	금융중심지 지정 여건 마련

□ 초광역권발전계획

구 분		주요 초광역 협력 사업
초광역권	충청권	첨단바이오헬스 산업생태계 조성, 미래모빌리티 클러스터 구축
	광주 · 전남권	친환경에너지 클러스터 조성, 차세대 모빌리티 생태계 구축
	대구 · 경북권	AI기반 지역특화로봇 개발, 모빌리티 핵심부품 및 차량플랫폼
	부울경	수소산업벨트 구축, 미래 모빌리티산업 육성
특별자치권	강원권	그린수소 저장 운송 충전 기기, 천연물 의약소재 상용화
	전북권	**바이오 헬스케어 산업화, 탄소복합소재 사업화**
	제주권	청정생물자원 활용 부가가치 창출, 디지털융합 관광산업 활성화

<< 시사점 >>

1 상향식 (지방정부 → 중앙정부) 계획수립 및 추진을 한다는 점에서 그간 균형발전 및 지방분권 계획과 차이

2 지역균형발전사업 최종 목적 : ① 정주여건 조성 ② 인구감소 대응

* 전북 인구감소 (만명) : ('20) 180 → ('21) 178 → ('22) 177 → ('23.12.) 175

3 중앙부처가 기획한 틀에 지역의 전략과제가 귀속되지 않도록, 지역 전문가 집단 및 주민들과의 지속 협의를 통해 계획을 수정/보완하는 노력 필요

4. 기후변화 물리적리스크의 실물경제 영향 분석 (한국은행)

《 요약 및 평가 》 ※ 본 연구는 집필자의 개인 의견임을 밝힘 (금융안정국 이지원 과장)

◇ (기후변화에 의한) 연 총강수량 증가는 장기적으로 지역내총생산(GRDP)에 부정적 영향

□ 연 총강수량 증가는 지역내총생산(GRDP)에 장기적으로 부정적 영향

○ 국내 기후 조건을 반영하여 피해함수를 추정한 결과, 연 총강수량 1m 증가시 지역내총생산(일인당 기준) 성장을 2.54% 하락시키는 영향

○ 산업별 연 총강수량 증가 관련 리스크 영향을 살펴보면,

- 실외에 노출된 생산활동이 많고 노동생산성에 영향을 상당히 받는 산업에서 부정 영향이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 건설업(-9.84%), 비금속광물 및 금속제품 제조업(-6.78%), 금융 및 보험업(-3.62%) 등에서 실질 부가가치 성장에 대한 부정 영향이 큰 것으로 분석되었음

□ 연 평균기온 상승에 따른 일인당 GRDP 성장 영향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으나, 일부 산업에서 유의한 영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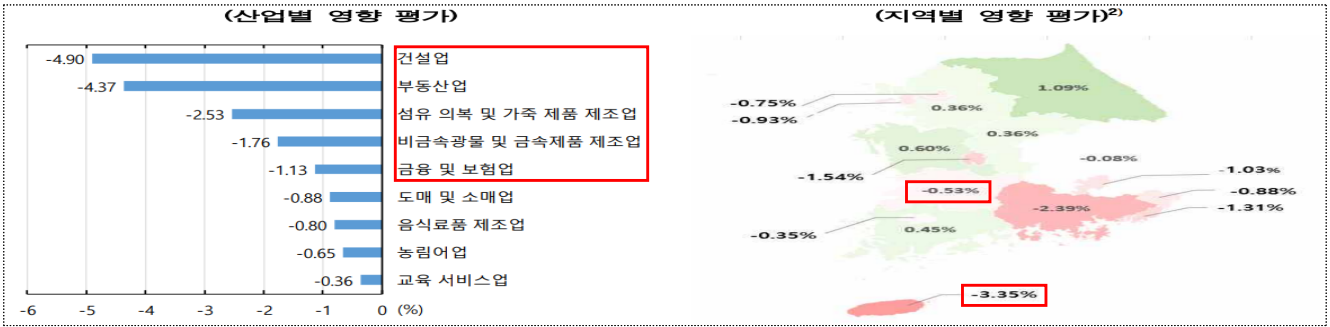
○ 연 평균기온 상승은 주로 서비스업의 실질 부가가치 성장에 장기적으로 부정 영향

* 평균기온 1℃ 상승시 도매 및 소매업(-1.85%), 부동산업(-1.73%) 등에 영향 추정

□ 연 평균기온과 연 총강수량이 실질 부가가치에 미치는 종합적 영향 및 기후변화 영향이 5년간 누적된다 가정하였을 때,

○ (산업별로는) 건설업(-4.90%), 부동산업(-4.37%) 등에서 피해 영향

○ (지역별로는) 남쪽에 위치하거나 도시·산업화 비중이 높은 지역에서 피해 영향



<< 시사점 >>

① 지구 평균기온 상승에 따라, 국내 기후조건이 다변화하여 현재까지 관측된 중간값보다 더 높은 수준의 평균기온과 총강수량 증가가 나타날 수 있음

② 또한, 홍수, 가뭄, 산불 등 급성 리스크로 인한 직접 피해 영향에 대한 예측은 본 연구에서 포함하고 있지 않아 이를 고려할 경우 피해 수준은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상됨

③ 기후변화의 물리적 리스크는 실물경제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으며, 이에 탄소중립에 대한 노력은 각 산업별 리스크 식별-평가-관리 과정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대응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함을 시사

④ 전북자치도는 탄소중립 지원센터 운영, 자동차 탄소중립포인트제 운영, 공공부문 목표관리제 탄소중립 지원사업, 기후위기 취약계층 대응사업 등 다양한 기후변화 정책을 추진 중임

⑤ 하지만, 기후변화가 그간 지역 내 산업별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피해 정도를 추정 및 예측한 데이터에 기반하기보단, 범국가적 목표 실현과 더불어 홍수와 가뭄, 폭우 등으로 인한 피해를 보상해주는 수준에서 사업이 추진되는 것을 경계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됨

⑥ 한편, 자치도는 올해부터 '환경보전기금'을 폐지하고 '기후대응기금'을 조성('24년, 2,813백만원/도비 100%)하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사업에 사용할 계획이며, 여기에는 관련 조례 제3조제2호에 의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조사·연구'의 용도도 포함되어 있음

⑦ 이에, 그간 기후변화가 지역에 미친 영향과 산업별 피해 추정치를 분석하고 취약 산업·업종별 데이터 산출 및 리스크 관리를 선행하여 그에 맞는 대응 계획을 체계적으로 수립, 추진해야 할 것임

5. 주4일제 사회와 전북의 대응 전략 (전북연구원)

《 요약 및 평가 》

◇ 주4일 근무제로의 전환을 준비하여 미래 먹거리를 창출하는 선제적 대응 필요

□ 근로시간 단축으로서 주4일 근무제

○ (개인 측면) '일-삶의 균형 (work-life balance)'과 '웰빙(well-being)' 촉진

○ (근로자 측면) 효율성 및 생산성 증진을 기대하는 일련의 흐름 표방

○ (추진형태)

- 근로일수 : 주4일, 주4.5일 등 다양한 방식으로 제시
- 근로시간 : 15시간 (초단시간)부터 69시간 (과잉노동)까지 광범위하게 논의

□ 근로시간 단축제도의 효과 / 전망

○ (긍정 전망)

- 근로자의 일과 삶의 부합도, 근로환경 만족도에 긍정적 영향
- 일-가정 양립에 긍정 영향, 근로시간이 증가할수록 우울감 수준도 순차적 증가

○ (부정 전망)

- 근로시간 감소가 삶의 질을 직접 상승시키지 않음 (직무만족 상승으로 이어져야 함)
- 임시 일용직에서만 효과가 나타나, 소득 감소 등 부정 영향 가중 가능성有

○ (산업적 관점) 서비스산업, 여가산업, 제조업, 보건 · 의료업, 소매업 등이 영향을 받으며, 분야별 영향력은 다를 수 있음

○ (경제적 관점) 임금 조정, 소비자의 지출 변화, 경제성장, 정부정책 등에서 이슈가 나타날 것으로 보임

《 시사점 》 ※ 전북의 대응 전략

1 주4일 근무제 선도 도시화를 통한 인구 유치

- 도내 희망기업과 노동조합 등과 협력, 시범사업 진행 및 성과 / 한계 분석
- 「전북특별법」 특례 (주4일 근무제 시범사업 특례)로 개발, '지역형 일자리 사업'으로 수행

2 주4일제 맞춤형 건강 · 취미 · 여행 기반 구축

- 국내여행 양극화 심화 예측 (경쟁력 있는 국내여행지 쏠림현상)
- (전북의 경우) 인구감소로 서비스업 인력 부족, 경쟁력 상실 우려
- 건강 · 운동과 취미가 연계된 여행 상품 (웰니스 여행) 고도화 시급

  → 건강 · 취미생활 연계 및 가족 단위 저렴한 여행객 유입방안 마련

  → 부족한 여가 서비스 인력 양성, 경쟁력 강화 필요

  → 저가이면서 질이 좋은 여가 콘텐츠 개발, 중저가 여가 중심지 마케팅 필요

3 여가시간 증가에 따른 여가시장 선점 방안 마련

- 지역특화 여가상품 개발, 브랜드화하여야 함
- 고급 및 중저가 관광, 유치원생 · 초등학생 대상 교육, 자연 친화적 치유, 레저스포츠 등 건강 · 취미생활 분야 집중 필요
- 시군별, 여가 분야별 브랜드 구축 → 이후 각 시군의 특화사업 연계 전략 추진

《 환경복지위원회 》

6. 노인일자리 확대를 위한 지자체 대응과 개선 방향(한국지방행정연구원)

〈〈 요약 및 평가 〉〉

◇ 초고령사회로의 진입에 대응하기 위해 통합적인 지원체계와 정책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더욱 세분된 노인인구의 구분과 역할 전환을 통해 적극적으로 사회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지자체의 대응을 요구함

□ 초고령사회로의 진입

○ **초고령사회는 전체 인구 중 65세 이상 고령인구가 차지하는 비율, 즉 고령화율이 20% 이상의 사회**를 의미함

- 통계청은 22년 기준으로 901만 8천 명의 고령인구(총인구 대비 17.5% 고령화율)가 25년에는 1,000만 명을 초과할 것(총인구 대비 20.6%)으로 전망하였음
- 하지만 이러한 고령화율은 지역 간 격차가 존재하며, 전남(24.5%), 경북(22.8%), **전북(22.4%)**, 강원(22.4%), 그리고 부산(21%) 등 인구감소 지역이 많이 포함된 광역지자체는 이미 초고령사회로 진입한 것으로 나타났음

○ **초고령사회로의 진입에 대응하기 위한 다각적이고 통합적인 지원체계와 정책 마련이 필요**함

- 신노년 세대, 이른바 베이비부머(1955~1963년생)들의 안정된 노후 준비와 더불어 노인 1인 가구 혹은 부부 가구 증가에 따른 맞춤형 돌봄·장기요양 제도 등 고령인구의 양적 증가와 함께 세분된 연령대별 특성(질적 변화) 등을 고려한 돌봄 제도의 지속적인 확대와 지원 정책 개선이 필요함
- **윤석열 정부는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사회"를 국정과제** 중 하나로 설정하고 "100세 시대 일자리·건강·돌봄체계 강화"를 세부 목표로 제시하였음 또한, 영국 정부도 2022년 7월 4일 50세 이상의 고령인구의 일자리 창출에 대한 정책을 발표하였으며, 은퇴를 앞둔 50대 구직자(jobseekers)들의 재취업프로그램을 강화하였음
- 따라서, 초고령사회로의 진입은 고령인구에 대한 국가와 사회의 인식변화와 함께 새로운 역할수행을 위한 정책수립과 지원체계가 필요함

□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종합계획

○ 노인일자리 사업은 고령인구가 활기차고 건강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의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으로 시작되었으며, 노인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지원하는 복지사업으로 사업유형은 <표1> 참고

<표 1> 노인일자리 사업유형

유 형		정 의	예 시
공공형(공익활동)		노인이 자기만족과 성취감 향상 및 지역사회 공익 증진을 위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봉사활동	老老케어(취약노인 안부확인) 취약계층지원, 보육시설 봉사 등 공익증진을 위한 프로그램
사회서비스형(재능나눔활동)		노인의 경력과 활동역량을 활용하여 사회적 도움이 필요한 영역(지역사회 돌봄, 안전 관련 등)에 서비스를 제공	가정 및 세대간 서비스, 취약계층 전문서비스, 공공전문 서비스 (공공행정업무지원) 등
사회서비스형 선도모델		지역 사회가 보유한 자원과 기업 등의 외부자원을 활용하여 신규 노인일자리 아이템 개발, 창출	돌봄,안전, 환경문제 등 지역사회가 당면한 현안을 해소하는 일자리 등
시장형	시장형사업단	노인에게 적합한 업종 중 소규모 매장 및 전문 직종 사업단 등을 공동으로 운영하여 노인일자리 창출	식품제조 및 판매, 매장운영(실버카페), 운송(실버택배) 등
	취업알선형	일정 교육을 수료하거나 관련 업무능력 있는 자를 수요처로 연계하여 근무기간에 대한 일정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일자리	시험감독 보조, 경비원 시설관리자, 가사도우미 등
	시니어인턴십	노인에게 기업 인턴 연계 후 인건비 지원 계속 고용 시 기업에 인건비 추가 지원	한식조리, 매장관리원, 영화관 보조원, 자동차 검사대행원 등
	고령자친화기업	노인의 경륜을 활용하여 경쟁력을 갖추고 양질의 노인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기업의 설립 및 운영지원	공모심사에 따른 기업 모집

※ 출처 : 보건복지부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홈페이지

○ 노인일자리 사업의 질적 고도화와 지역별 특성 고려한 지원을 위해 보건복지부는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종합계획을 발표함

- 현재 **제3차('23~'27년도) 종합계획**에서는 **"사회적 약자 복지 실현"과 "일자리 창출"에 중점을 두고 노인인구 10% 수준의 규모 확충 목표**
- 고령인구가 유소년인구(예: 초등 늘봄학교 사업지원) 돌봄과 함께 독거·거동불편 등 노인 돌봄 사각지대를 보완하는 프로그램(예: 老老케어)과 같이 아동, 노인 등 사회적 약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익활동형 일자리의 확대를 추진하고 있음

○ 노인일자리 정책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전달체계 개선 및 민·관 협력강조

- 사회적협동조합 등 신규 수행기관 진입 유도와 함께 지역 여건에 맞는 일자리 개발을 위한 지역협의체 확대 운영 등 지자체 역할이 주문됨
- 노인일자리 여기(www.seniorro.or.kr),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 민원서비스 항목에서 거주지 기반으로 신청할 수 있는 일자리 확인 가능

□ 광역지자체 대응 현황 및 향후 방향

○ 광역지자체는 노인일자리 포털 운영을 통해 지역사회 초고령화 시대에 대응하고 있지만, 초고령화 사회변화에 따라 더욱 세분된 노인인구의 구분과 역할의 전환을 통해 적극적으로 사회참여를 유도할 필요가 있음

- 서울과 부산 그리고 인천은 50+세대, 즉 중년에서 노년으로 넘어가는 40~60세대를 대상으로 직업교육 훈련, 일자리 연계·협력기관 구축 등 노인일자리 사업을 중장년층으로 확장하여, 안정적인 노후 정착을 지원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음

○ 현재 대부분 지자체 노인일자리 포털은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사업을 소개하고, 구직·구인 정보공유를 통한 재취업 지원으로 한정함

- 이에 광역지자체 차원에서 노인일자리 사업의 질적 확대와 함께 중장년 특화교육과 지역 커뮤니티 활동과도 연계하는 노력이 필요함

<참고> 노인일자리 포털 운영현황

광역지자체	노인일자리 포털	주요사업	운영기관(설립일)
서울	서울시50플러스포털 https://50plus.or.kr	50+ (중장년) 일자리 발굴 협력체계, 경력전환, 사회공헌 일자리, 창업지원	서울시50플러스재단 (2016.04.)
부산	부산 50+ 부산포털 https://www.busan50plus.or.kr	50+ (장노년) 활성 방향성 제시, 일자리 활성화, 종합 서비스 지원・연계	부산광역시 장노년 일자리지원센터(2016.10.)
대구	대구 노인사회활동 지원사업 https://www.daegu.go.kr/welf/index.do?menu_id=00000494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 소개	대구광역시 어르신복지과
인천	인천 노인인력개발센터 http://www.innojung.go.kr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네트워크, 컨설팅 및 교육사업, 공모사업	인천광역시 노인취업정보센터(2006.05.)
광주	광주 노인일자리포털 https://gjsenior.kr/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광주 동구 시니어클럽
대전	대전 노인취업지원센터 http://www.youngold.or.kr	구직 희망 노인의 상담, 알선, 취업	(사) 대한노인회 대전광역시연합회 (2004.09.)
울산	울산 노인복지관 https://www.ulsansenior.org	공익활동 관련 일자리 지원	울산광역시 노인복지관 (2004.06.)
경기	경기도노인일자리지원센터 https://www.gg.go.kr/oldman_job	노인일자리 개발 및 보급, 노인일자리 창출 및 지원	경기도노인일자리 지원센터 (20213.01.)
강원	강원 광역취업지원센터 http://www.gwds.or.kr	구직 희망 노인의 상담, 알선, 취업	(사) 대한노인회 강원특별자치도연합회
충북	충북 취업지원센터 http://www.cbnoin.co.kr	구직 희망 노인의 상담, 알선, 취업	(사) 대한노인회 충북연합회
충남	충남 노인일자리통합지원센터 https://smilesystem.kr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교육 및 컨설팅, 민・관 네트워크 협력	충청남도 노인일자리 통합지원센터 (2023.03.)
전북	전북노인일자리센터 https://www.jbsilver.net	노인일자리 사업발굴을 통한 일자리 확대 및 질적제고	전북노인일자리센터 (2013.01.)
전남	전남 사회복지포털 일자리정보 https://www.jeonnam.go.kr/contentsView.do?menuId=welfare0503010000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 안내	전라남도 노인복지과
경북	경상북도 일자리포털 https://www.jobgb.co.kr	-	경상북도 (2021.11.)
경남	경상남도 일자리종합센터 https://gyeongnam.work.go.kr	-	경남일자리종합센터
제주	제주복지넷 복지서비스 https://www.jejubokji.net/data/welfare-service/714?c%5B0%5D=1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 안내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제주지부

1) 검색을 통해 노인일자리 사이트 정보이며, 미운영 혹은 확인이 어려운 광역지자체는 일자리 포털 사이트 기재

2) 운영재단 혹은 센터의 연혁소개 항목을 기반으로 작성되었으며, 실제 설립일은 상이할 수 있음

7. 성인 발달장애인의 생애주기에 따른 정책욕구 분석 (국회입법조사처)

‹‹ 요약 및 평가 ››

◇ 성인 발달장애인의 생애주기에 따른 정책 연구에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분석하여 각 연령대에 부합하는 정책과제를 제시함
◇ 성인 발달장애인의 전반적인 복지 서비스 미충족 욕구가 높았고, 생애주기별로 청장년층은 재활병원의 미충족 욕구가 높았으며, 노년층은 직업재활시설 및 단기 거주시설에 대한 미충족 욕구가 큰 것으로 나타남

□ 연구 목적 및 현황

○ 한국장애인개발원이 발표한 통계자료에 따르면, **2021년 등록장애인 수는 약 265만명이며, 이는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5.1%에 해당하는 규모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임(한국장애인개발원, 2022)

- 발달장애인은 2021년 기준 255,207명으로 10년 전인 2011년(183,336명) 대비 39.2% 증가, 동 기간 전체 등록장애인 증가 폭(4.98%)보다 빠른 증가세임
- '장애인경제활동실태조사'에 따르면 15세 이상 발달장애인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30.1%로 전체 장애인 평균(37.3%)에 비해 낮음(한국장애인고용공단, 2022)
- '2021 장애인실태조사'에 따르면, 전체 발달장애인 가운데 일상생활을 타인의 도움 없이 수행할 수 있는 비율은 12.7%이며, 일상생활 시 주로 도움을 주는 주체 중 가족이 88.4%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남(보건복지부, 2022)

○ 2018년 문재인 정부는 **<발달장애인 평생케어 종합대책>**을 발표하여 발달장애인의 생애주기별 필요서비스를 분석해 개인의 요구와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을 강조하는 정책을 실시함. 이후 2022년 윤석열 정부에서는 이전 정책을 보완한 **<발달장애인 평생 돌봄 강화대책>** 발표

- 성인 발달장애인의 숫자는 약 18만 명이나 만 18세 이상 65세 미만의 성인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시행 중인 주간활동서비스는 2022년 보건복지부 예산 기준으로 그 대상자가 1만 명에 불과한 현실임(한국일보, 2022.10.22.)
- 발달장애인을 위한 실효성 높은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획일적인 서비스를 지양하고 생애주기의 특성에 따른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며, 생애

주기에 따라 어떤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고 어떤 미충족 욕구가 있는지에 대해 연속적으로 파악할 필요가 있음

□ 발달장애인 관련 입법 및 정책 현황

○ 발달장애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생애주기별 지원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2015년 11월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시행

○ 발달장애인법 제정을 계기로 개인별 지원계획 수립과 이를 위한 발달장애인지원센터 설치 근거가 마련됨. 발달장애인지원센터는 중앙센터를 비롯해 전국에 총 18개의 광역 센터가 설립·운영 중으로, 2023년 현재 발달장애인지원센터에서 실시되고 있는 주요 사업들은 <표 1>참고

〈표 1〉 발달장애인 주요 지원사업

<table>
<tr><th>구분</th><th>6세 미만
(영유아기)</th><th>6세 이상
(학령기)</th><th>19세 이상
(청년·성인기)</th><th>65세 이상
(노년기)</th></tr>
<tr><td>계획</td><td colspan="4">개인별 지원계획</td></tr>
<tr><td rowspan="2">권리옹호
·법률지원</td><td>-</td><td colspan="3">발달장애인 권리구제</td></tr>
<tr><td colspan="2">-</td><td colspan="2">공공후견지원사업</td></tr>
<tr><td rowspan="2">가족지원</td><td colspan="2"></td><td colspan="2">발달장애인 가족휴식지원사업</td></tr>
<tr><td colspan="2">발달장애인 부모상담지원사업</td><td colspan="2">-</td></tr>
<tr><td>교육</td><td>-</td><td colspan="3">성인권 교육사업</td></tr>
<tr><td>부모교육</td><td>영유아기
발달장애인
부모교육지원사업</td><td>성인전환기(만12세~18세)
발달장애인
부모교육지원사업</td><td colspan="2">-</td></tr>
<tr><td rowspan="2">돌봄</td><td>-</td><td>청소년발달장애인
방과후활동서비스</td><td>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td><td>-</td></tr>
<tr><td>-</td><td colspan="2">발달장애인 긴급돌봄서비스</td><td>-</td></tr>
<tr><td>의료</td><td>-</td><td colspan="3">발달장애인 거점병원·행동발달증진센터(전국 10개소)</td></tr>
</table>

보건복지부(2023) 〈발달장애인 지원사업 안내〉를 바탕으로 재구성

○ 발달장애인의 생애주기를 고려한 서비스 제공이 주목받게 된 것은 2018년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교육부가 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발달장애인 평생케어 종합대책'이 계기가 됨

Ⅲ. 주요 연구기관 발표자료

○ 윤석열 정부 출범 후, 2022년 6월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발달장애인에 대한 지원을 120대 국정과제 중 하나로 지정해 추진(대한민국 정부, 2022)

○ 기존 정책 한계를 극복하고 대통령 국정과제를 실현하기 위해 보건복지부는 발달장애인 평생돌봄 강화 대책을 발표(2022.10.) <표 3>참고

〈표 3〉 발달장애인 평생돌봄 강화대책 주요 내용

영역	주요 내용
최중증 발달장애 돌봄서비스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 개발 및 제공
	주간활동 하루 8시간 지원, 긴급돌봄 시범사업 시행
소득보장	장애인연금(38.8만 원→40.2만 원), 장애수당(4만 원→6만 원) 인상
조기개입	발달장애 정밀검사(70%→80%), 발달재활(6.9만 명→7.9만 명) 확대
자립지원	시설장애인 자립 지원체계 구축 시범사업 확대(200명→400명)
가족지원	부모·가족을 위한 상담 지원 등 확대(2.5만 명→3만 명)
예산	발달장애인 지원 예산 21.5%(447억 원) 증가

보건복지부(2022) 〈발달장애인 평생돌봄 강화대책〉을 바탕으로 재구성

□ 결론 및 시사점

○ **모든 연령층에서 미충족 욕구가 높은** 것으로 나타난 서비스 유형인 **장애인의 권익 보호와 평생교육 확대 필요**

- 현재 성인 발달장애인의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공공후견인을 2022년 1,263명에서 2023년 1,563명으로 확대 중이며, 공공부문(국민연금공단 수탁) 주도로 발달장애인의 재산을 관리해주는 공공신탁시범사업 시행(보건복지부, 2022)
- 정부 및 공공이 수탁자가 되어 발달장애인의 재산을 관리해주는 제도가 아직 없는 현 상황에서, 향후 발달장애인의 경제적 학대를 예방하고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공공신탁제도를 보편적으로 도입·시행할 필요가 있음
- 경제적 측면뿐만 아닌 일상생활 전반에 관한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권익옹호센터의 확대 도입 필요

- 현재 장애인 평생교육 운영기관은 전국 282개소(국립특수교육원, 2022)로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는 전국적으로 33개소이며 이 중 25개소는 서울시에 소재, 각 지자체가 센터 확대 도입 등으로 접근성을 개선할 필요가 있음

○ **젊은 발달장애인을 위한 의료지원체계 확충 및 의료 접근성 확대 필요**

- 현재 발달장애인의 체계적인 의료지원과 도전적 행동을 치료하기 위한 거점병원·행동발달증진센터를 10곳에 설치·운영(보건복지부, 2022)이나 전국 17개 광역지자체 가운데, 9곳에는 거점병원이 없는 상황임
- 발달장애인 가정 1,071명을 상대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열 명 중 네 명(40.2%)이 '치료·재활을 위해 이사를 한 적이 있다' 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남(한국일보, 2022.12.10.)
- 의료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거점병원·행동발달증진센터 확충이 필연적이며 동시에 만성질환 관리 및 장애 관리 등을 위한 장애인 건강주치의 제도를 확대 방안도 함께 고민해야 함

○ **발달장애인을 위한 고용정책 제고 필요**

- 현행 정책 수준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성인 발달장애인의 생애주기에 따른 정책욕구 분석 조사된 반면, 노년층에게 있어서는 미충족 욕구가 큰 것으로 나타남
- 고령 장애인이 고령 비장애인에 비해 빠른 시기에 노동시장에서 이탈하며, 직업재활시설 근로장애인의 평균 연령은 매우 젊은 편임. 근로장애인의 평균 연령은 30대가 34.4%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20대가 31.7%, 40대가 19.3% 순으로 높은 것으로 조사됨(경기도장애인직업재활시설협회, 2023)
- 정부는 2023년 5월에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기본계획'을 발표하여 중증·고령 장애인의 소득을 보장하고 일자리 경험을 제공하기 위한 장애인 일자리 지원을 2023년 3만 개에서 2027년 4만 개까지 단계적 확대 예정임
- 장애인 개인의 특성·지원 이력에 기반한 AI 활용 맞춤 상담 및 챗봇·모바일앱 신설, 무장애 사용환경 구축(음성안내, 느린말 지원, 알기쉬운 정보제공 등)도 함께 추진할 계획을 마련(관계부처합동, 2023)

○ **지역사회와 입소시설 사이의 중간적 대안적인 주거모델 필요**

- 고령의 발달장애인들은 단기 거주시설과 장애인 자립주택에 대한 미충족 욕구가 큰 것으로 밝혀졌으며, 그 시기 동안 사회적응을 체험할 수 있는 제3의 주거공간에 대한 욕구가 높음
- 장애인의 지원에 대한 패러다임이 자립생활 추진으로 본격화되면서 정부는 2041년까지 '탈시설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에 대한 중장기 로드맵'을 발표 (국무조정실, 국무총리비서실, 2021)
- 장애인의 자립을 지원할 때 탈시설 추진의 방향과 방식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며, 그들이 지역사회에서 자신에 대한 통제권을 갖고 의사 표현을 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어떤 방식으로 자립역량을 강화하고 연속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할 것인지에 대한 통찰이 필요함

8. 기후변화 취약계층의 사회적 취약성 실태조사 필요성 및 추진방향(한국환경연구원)

《 요약 및 평가 》

◇ 기후변화로 인한 피해의 발생 빈도가 증가하며, 지역계획 차원의 취약계층 생활환경 개선, 주거환경 개선 등 실효성 있는 적응 대책 수립 필요성 증대
◇ 기후변화 취약계층 적응 대책의 실효성 강화를 위해 경제, 사회, 주거환경, 기후 등 다각도로 고려한 사회적 취약성 실태파악 및 기후위기 적응대책 점검필요

□ 기후변화 취약계층 정의

○ **기후변화 취약계층**은 **기후변화에 민감성이 높은 집단**으로 생물학적, 사회경제적, 문화적 등 요인에 의해 상대적으로 기후변화에 취약하며 사회적 취약성이 높은 집단으로, 범위가 더욱 넓은 특성을 가짐

- 노인, 영유아, 저소득층, 장애인, 이주민, 1차산업 종사자, 건설업 및 운송업 종사자 등을 기후변화 취약계층 유형으로 언급(IPCC*, 2022)

* IPCC(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 기후 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

- <제3차 국가 기후위기 적응대책 강화대책('23.06.)> 발표 및 신규 중점과제로 '국가 기후위기 취약계층 실태조사 추진' 과제가 발표됨(관계부처 합동, 2023)
- 우리나라 국민의 최소 30% 이상이 기후변화 취약계층에 해당하며, 사회적 취약성 등급 평가 및 실태를 정책에 반영하는 논의가 필요

□ 기후변화 취약계층 적응의 현안 및 실태조사 필요성

○ 체계적으로 기후위기 취약계층의 사회적 취약성 실태를 평가할 수 있는 **우선순위 지원 대상 파악 및 국가 단위로 기후위기 취약계층 실태조사** 추진 방안 마련이 필요함

- 사회, 경제, 주거환경 등 복합적인 특성을 고려하여 취약계층 유형별 밀집도, 주거환경 등 여러 요인을 고려한 우선순위 반영 및 **'사회적 취약성 지수'** 구성
- 우리나라의 경우, 사회적 취약성의 복합 특성을 고려해 기후변화 취약계층의 심각성을 고려하고 이를 정책에 적용한 사례가 희박하며 최소 읍면동 단위로 지역별 사회적 취약성의 실태평가가 필요함

○ 가장 취약한 기후변화 취약계층의 특성 파악을 위한 포커스그룹 인터뷰 및 데이터 사례분석의 결과,

- (사례1) 기후변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폭염대응 물품지원, 돌보미 활동 등을 수행하는 현장활동가를 대상으로 의견을 조사한 결과, 저소득층 독거노인이면서 주거 취약계층인 집단에 속하며 기초생활수급자 및 장애인 주거 취약계층 집단이 지원 우선순위가 가장 높았음. 그러나, 열악한 주거환경의 1인 청년가구, 소년소녀가정, 다문화가정 등 다양한 집단이 수혜자 대상으로 고려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함
- (사례2) 서울시를 대상으로 폭염일수 발생이 높은 지역의 사회적 취약성 현황 조사 결과, 사회·경제·주거환경에 대해 복합 사회적 취약성을 보이는 취약계층 밀집 주거지역이 폭염에 더 노출되는 현상이 관측됨

○ **사회적 취약성이 높은 기후위기 취약계층의 복합 특성과 지역별 현황의 차이를 사전에 고려한 기후변화 취약계층 적응 대책 수립과 이행이 필요**

- 경제·사회적 요인, 녹지 접근성, 의료기관 접근성 등 인프라의 현황, 주거 낙후지역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사회적 취약성 실태평가 시행
- 폭염 외에도 홍수, 한파 등 기후 원인별로 사회적 취약성 평가 분석 필요

□ 국외 사회적 취약성 실태조사 추진사례 및 의의

○ 다수의 나라가 IPCC의 기후위기 대응체계를 고려하여 리스크 및 취약성 개념을 적용해 평가를 진행하고 있으며 특히, 미국과 캐나다 등 일부 국가는 사회적 취약성을 등급화하고 다각도하여 사회적 취약성의 실태를 정기적으로 조사하고 기후위기 대응책에 반영하고 있음

- **(미국)** 2000년에 최초로 사회적 취약성 실태의 평가조사를 발표하였으며, 2014년부터는 2년마다 정기적으로 국가 단위로 사회적 취약성 실태의 평가함 미국 재난관리청은 국가 리스크 평가 플랫폼을 통해 분포 실태를 상시공개
- **(캐나다)** 미국과 유사하게 사회적 취약성 지수의 구성을 통해 국가 단위의 기후위기 취약계층 분포 실태를 다각도로 규명함, 캐나다 자연보전국은

사회적 요인, 개인의 자율성, 주거 환경, 경제적 요인의 4가지 축의 사회적 취약성 지수를 구성하고 이를 기후변화 관련 재해의 발생 리스크와 결부해 기후위기 취약계층의 실태를 조사하여 발표함

○ **미국과 캐나다의 사례는 기후변화 취약계층의 실태를 국가 단위로 파악하고 이를 기후변화 대응정책과 연계하였다는 점에 의의**가 있음

- 지역별 사회적 취약성의 높고 낮음을 파악할 수 있는 정보를 주기적으로 생산한다는 점에서 인상 깊음

□ 실태조사 추진방향 및 적응대책 적용을 위한 제언

○ 기후변화 취약계층의 실태조사 수행 시 다양한 사회적 취약성 결정요인의 고려와 지역의 인적 지식과 기존 데이터의 활용이 필요하며, 실태조사 결과를 보다 장기적인 차원에서 적응계획에 반영해 기후변화 취약계층 적응 대책의 실효성 강화를 위해 4가지의 방향이 고려될 수 있음

① 다각도의 기후변화 취약계층 실태평가를 위한 사회적 취약성 평가지수 마련

- [그림5]의 경우 사회적 취약성 평가지수의 도출 체계를 제안한 것으로, 향후 다각도로 취약계층의 사회적 취약성 검토와 지역별로 차등적인 현황을 반영
- 각 요인별 가중치 적용, 평가등급 산정을 위한 평가 체계에서 소년소녀가장, 쪽방촌 거주자 등 기후변화에 대한 민감도가 높을수록 우선 지원대상 포함

② 지역의 인적 지식 및 국가의 사회보장정보시스템 등 기존 정보 활용

- 지역의 읍면동 단위 복지 담당 공무원의 협조를 구하여 지역의 인적 지식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실태조사 운영이 필요함
- 지자체가 활용하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인 '행복이음' 등의 시스템을 활용하여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연구원, 지자체 복지 담당 공무원 등 의견을 반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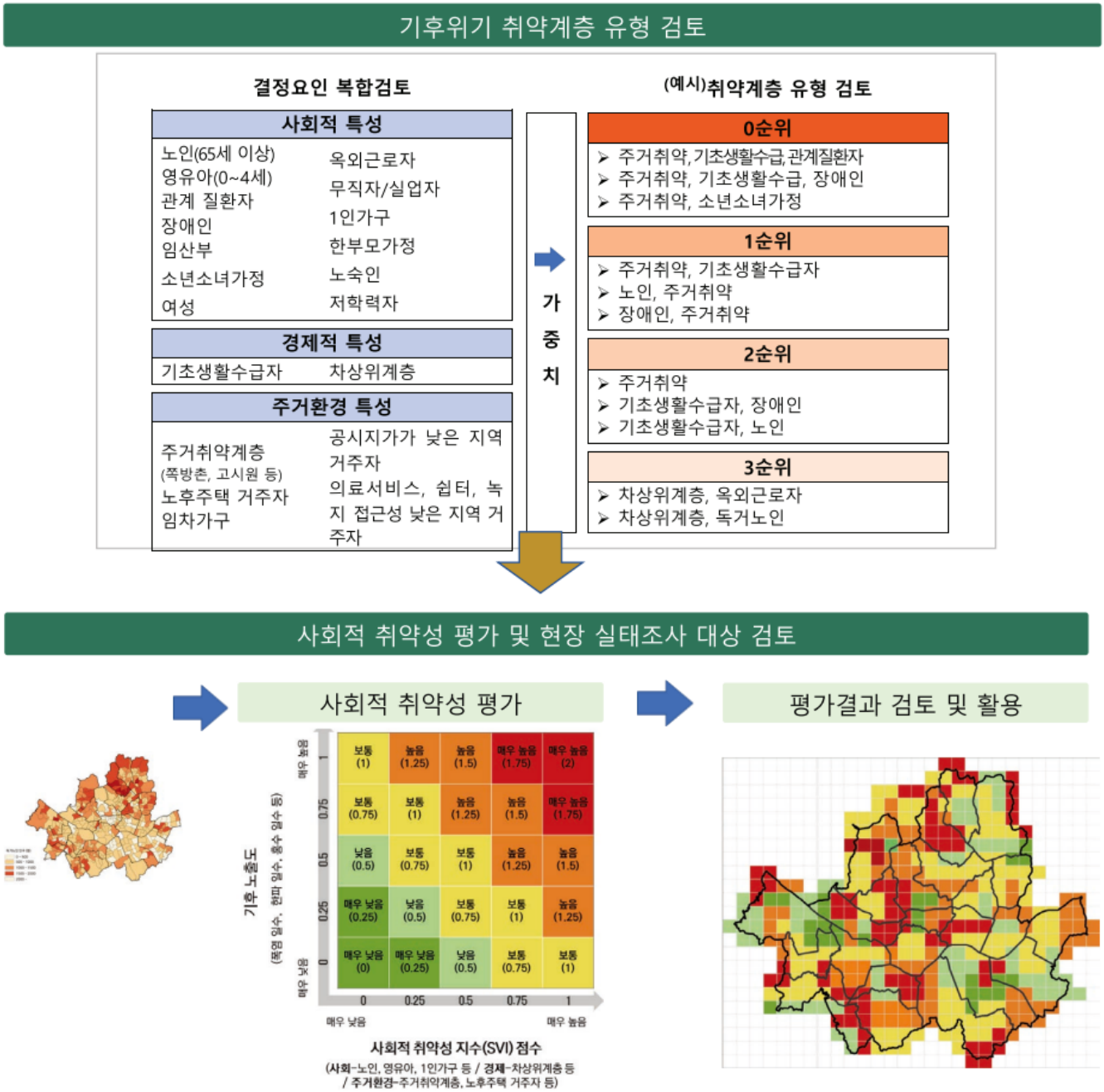
③ 사회-생태 형평성의 장기적 개선 추구

- 생태적 형평성의 경우 열섬 완화, 레크리에이션 및 휴식, 대기질 조절 등 도시의 취약계층 밀집지에도 제공되는지 조사 필요
- 사회적 형평성의 경우 의료기관 접근성, 무더위 쉼터 등 적응지원 시설 접근성 등의 조사 필요

④ 기후변화 취약계층 실태와 지원정책 간 촘촘한 연계

- 사회적 취약성 조사결과와 적응대책을 연계하는 방안을 담은 지역 공무원 대상 가이드라인 마련이 필요함
- 실태조사를 통해 정책수요를 상세히 파악하여 지역환경 개선, 단기 현물성 지원, 돌보미 서비스 등 정책과 관련한 신규 중점과제 발굴이 중요함

그림 5
실태조사 추진방향



9. 전북의 생태 · 환경자산 정책 [전북연구원]

: 보호와 규제 중심에서 인식 증진과 경제적 지원으로 전환

《 요약 및 평가 》

◇ 민·관 협력의 쌍방향 정책, 인식 증진과 경제적 지원의 포지티브 정책으로 생태·환경자산의 가치 창출을 위한 정책과제 방향 전환이 필요한 시점으로, 전북형 생태계 서비스지불제 도입, 훼손된 생태환경의 녹색복원 사업, 생태·환경자산의 인식조사, 전라북도 자연환경 조례 개정을 향후 추진 과제로 제안

□ 연구목적 및 현황

○ 전북은 삼천리 금수강산의 축소판, 다양한 생태·환경자산 보유

- 동부산악권은 산림면적이 평균 71.8%(전국 평균 63%)에 이르고 백두대간과 지리산·덕유산국립공원, 용담호와 옥정호, 진안·무주국가지질공원 등 다양한 산림자원과 생태·경관자원을 보유
- 산림면적은 무주(81.7%), 진안(75.6%), 장수(75.2%) 순이며, 임실(69.2%), 순창(66.4%)도 도 전국 평균보다 높은 산림면적을 보유

○ 지난 30여 년간 생태·환경자산은 지속적 감소 및 생태적 가치 하락

- 토지피복지도 분석 결과 전북의 자연공간 면적은 지난 30여 년간 330㎢(4%)가 감소하였으며, 농업지역에서 도시지역으로의 변화가 가장 많았던 것으로 분석됨
- 산림생태축과 하천생태축 단절·훼손사업 추진으로 생태축의 연결성 저하와 서식지 파편화가 가속화되고 멸종위기야생생물의 로드킬이 빈번하게 발생

  * 국립생태원의 '22년도 동물 찻길 사고(로드킬) 분석 결과 전북은 '19~'21년동안 로드킬 발생 건수가 3,366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남(국립생태원, 2023)
- 전북에서 지난 30여 년간 추진된 개발사업(환경영향평가 협의 대상사업) 분석 결과 산림생태축과 하천생태축에 대한 선형적, 점적 개발사업이 많이 추진됨

  * 금강정맥 단절 사업이 25개로 많았으며, 완주~익산~군산 구간에서 산업단지와 관광지 조성에 따라 단절·훼손된 곳이 두드러짐
- 군산, 익산, 전주를 중심으로 도시지역과 주변지역, 산업단지개발지역을 중심으로 산림생태축 단절·훼손지가 집중 분포한 것으로 분석됨

□ 주요내용

○ **전북의 생태·환경자산 정책은 보호와 행위규제의 '네거티브 정책' 중심**

- 우리나라의 자연환경정책(생태·환경자산 포함)은 국가와 지자체 중심의, 개발행위 규제가 중심인 일방적인 네거티브 정책이 중심이었음
- 네거티브 중심 정책 추진은 생물다양성과 보전가치가 높은 생태적 우수지역의 신규 보호구역 지정 등 생태계 보전을 위해 필요한 정책에 대한 민간의 반대와 참여 축소를 불러옴

○ **국제사회에서는 생태·환경자산이 자연기반해법의 핵심 실현수단으로 부상**

- 세계적으로 기후위기 극복과 탄소중립 달성 등을 위해 경제와 산업, 환경, 사회 등 인간 활동의 각 분야에서 우선적으로 실천해야 할 과제의 하나로 "자연기반 해법(nature based solutions; NbS)"이 주목받고 있음
- 지역개발 측면에서 바라보면 자연기반 해법의 등장은 미래 국토·도시·환경 프로젝트가 기존의 경제발전 중심의 접근방법에서 생태·환경자산의 가치를 중심에 둔 생태계 기반 접근방법(ecosystem based management)으로 전환
- 따라서 세계 각국은 지역사회가 보유한 생태·환경자산이 무엇인지를 분류하고, 생태·환경자산이 지역사회에 어떠한 자연 혜택(생태계서비스)를 가져다 줄 수 있는지를 파악하여 다양한 정책 의사결정에 반영하고자 노력하고 있음

○ **전라북도 민선8기 도정과제인 '생태·환경자산 가치 창출'**

- 전라북도는 민선8기 도정과제의 하나로 '생태·환경자산의 가치 창출'을 제시한 바 있으며 세부 추진 과제로 '전북 우수 생태자원의 보전 및 활용 기반 확대'를 포함시킴
- 옥정호·용담호, 완주·고창 등 생태탐방로 조성, 전북 서해안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인증('23.5) 등 지질공원의 인증·운영
- 생태공간 조성 확대와 효율적 활용을 위해 체류형 탐방객 확대와 인구소멸 위기 대응을 목표로 기존의 천리길과 생태관광지, 마을 및 생태·문화 자원을 선형으로 연결하는 '전라북도 에코캠핑 삼천리길' 사업 추진('24~)

○ '24.1.18.부터는 글로벌 생명경제 구현을 비전으로 내세운 전북특별자치도가 출범하면서 생태·환경자산을 활용한 다양한 정책이 본격 추진이 필요한 시점임

- 전북의 특성을 반영한 신산업 활성화, 농생명산업 육성, 외국인 유입을 비롯한 다양한 정책이 망라되어 있음
- 생명경제 전환의 핵심사업으로 생태·환경자산의 가치 창출 과제 발굴 필요

□ 결론 및 시사점

○ **이제는 생태·환경자산의 가치창출을 위한 '포지티브 정책'으로 전환**

- 미래 생태·환경자산의 가치 창출은 관과 민간의 협력에 기반한 쌍방향의 정책 추진이 전제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인식 증진과 경제적 지원 중심의 '포지티브 정책'으로의 전환이 필요**함
- 생태계를 보전하면서 주민들의 인식을 증진하고 경제적인 지원도 동시에 달성하는 정책으로 국내외에서 '**생태계서비스지불제**(payment for ecosystem services; PES)'의 도입이 확대되고 있음
  * 우리나라도「생물다양성법 제16조」에 따라 정부·지자체장이 토지소유자 등의 생태계서비스 보전·증진 활동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고 보상 등을 지급하는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 사업을 추진 중임('21년 28개 추진, 총 1,694백만원)

○ **「전북특별자치도 생태·환경자산 플러스(+)」 정책과제 제안**

- 전북이 가진 생태·환경자산이 지속적으로 보전하면서 지역사회에 다양한 생태계서비스를 창출할 수 있도록 전라북도가 추진해야 할 과제가 필요
- 전북의 생태·환경자산 보전과 지역주민 인식 증진 및 경제적 혜택 제공을 위해 **「전북형 생태계서비스지불제」 발굴**, 사업의 타당성과 국가예산 지원 가능성을 판단하기 위해「전북형 생태계서비스지불제 시범지역」선정을 제안
- 따라서, 전북형 생태계 서비스지불제 도입, 훼손된 생태환경의 녹색복원 사업, **생태·환경자산의 인식조사 및 평가지도 구축, 전라북도 자연환경 조례 개정을 향후 추진 과제**로 제안함

《 농산업경제위원회 》

10. 생산가능인구 감소 대응을 위한 기업의 생산성 제고 방안(국제무역통상연구원)

‹‹ 요약 및 평가 ››

◇ 저출산 및 고령화 생산가능인구 감소 ⇨ 생산성 제고 방안

□ 연구배경

○ 우리나라의 생산가능인구는 저출산 및 고령화의 여파로 2020년 37,379만 명으로 정점을 찍은 뒤, 2050년에는 지금보다 약 35.3% 감소한 24,189만 명 수준이 될 전망

○ 청장년층이 생산가능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감소하고, 장년·고령층 비중은 증가하는 등 생산가능인구의 구조적 변화는 노동생산성에도 악영향

○ 생산인구 감소의 부작용을 완화할 수 있는 우리 기업의 생산성 제고 방안 마련이 절실한 실정

□ 노동생산성 현황

○ 2022년 우리나라 노동생산성은 42.9달러로, OECD 37개국 중 29위로 하위권 (OECD 평균 53.0)이며, 노동생산성 증가율은 둔화 추세

○ 현재 기술혁신 관련 지표가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생산성 증가율은 점차 둔화하는 '생산성의 역설'을 경험 중

○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생산성 격차는 OECD 최고 수준/대·중소기업 간 생산성 격차는 디지털 기술의 확산으로 인해 더욱 심화될 전망

○ 산업 간 노동생산성 격차의 심화/제조·서비스업 생산성 격차는 49.8로 OECD 평균인 80.2를 크게 하회

○ 노동시장의 경직성 심화/낮은 노동시장 유연성은 노동생산성 및 성장잠재력 저하를 초래할 우려

□ 정책제언

○ '생산성의 역설' 극복을 위한 기업의 디지털 전환 활성화

* 기업은 디지털 전환 중요도에 대해 공감하나, 디지털 전환 수준은 초기 단계에 불과

○ 기업의 자체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부지원 효율화 및 대·중소기업의 상생협력 강화

○ 산업간 생산성 격차 축소를 위한 제조업의 서비스화 등 산업 고도화 추진

○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를 위해 노동시장 규제 해소 및 겸업 확대 등 일하는 방식의 변화 유도

<< 시사점 >>

1 전북특별자치도는 금융중심지 지정을 위한 정책적 제도적 지원을 강화하고 있음/디지털 금융 및 핀테크 금융 육성 전략 수립을 통한 접근 필요

2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도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나 현금성 직접 지원 방식보다는 혁신기술 테스트베드 설치 등을 통한 최신 정보 제공, 산-학-연 합동 자문 컨설팅 및 교류의 장 제공 필요

11. 주요국 축산부문 온실가스 감축정책과 시사점 (농촌경제연구원)

≪ 요약 및 평가 ≫

◇ EU, 미국, 일본 저탄소 농업 기술 ⇨ 온실가스 저감농업 기술 활성화

□ 연구배경

○ 국제적으로 온실가스 감축목표와 실행 전략이 요구되는 가운데 온실가스 감축 목표 이행을 위한 농업정책 추진 기반구축 필요

○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 수립에 따라 저탄소 농업정책 추진을 위한 기반 기술 구축과 로드맵 대응 마련

○ 축산부문에서 주요국의 온실가스 감축 수단 분석을 통하여, 2030년 감축목표 달성을 위한 축산부문 온실가스 감축 정책 제시

□ 주요국의 온실가스 감축 정책

○ EU: 온실가스 감축수단으로 생산성 향상, 혼농임업, 사료 첨가제, 가축분뇨 관리, 가축분뇨의 혐기성 소화, 육류 대체품 등

- 농가들은 농장 평가도구를 자발적으로 적용하여 측정·보고·검증을 실시하여 실제 농장 전체 온실가스 저감량을 평가 받음
- 5년 후 저감량에 따라 저감 톤 당 결정된 금액을 지원 받음

○ 미국: 동물 생산 체계에서 온실가스 감축은 퇴비 관리와 방목지 관리로 구분됨

- 퇴비 관리: 늪 보호를 위해 혐기성 소화조 활용, 혼합 혐기성 소화조 활용, 연못, 저수지, 늪 가리기, 퇴·액비 분리기 사용, 질화/탈질화작용
- 방목지관리: 콩과식물의 간파

○ 일본: '21년 5월 농림수산성은 '미도리 녹색 식량 시스템 전략'을 수립하여, 전략을 토대로 '21년 10월 '농림수산성 지구온난화대책 계획'을 개정 공표

- '가축분뇨 관리방법 변경', '아미노산 균형 개선 사료' 등의 방안과 가축개량 및 ICT 활용 등 사양관리를 통한 '개체당 온실가스 배출 저감' 방안 제시
- J-크레딧 제도: 온실가스 배출의 감축량 및 흡수량을 국가에서 '크레딧'으로 인정하는 제도
- 농축산업자는 부여받은 크레딧을 저탄소 실행계획을 수립하는 기업 등에 판매하여 수익을 창출

<< 시사점 >>

1 EU, 미국, 일본은 축산분야의 배출량 비중이 매우 높은 가운데 감축기술 개발을 선도하고 있음

2 EU, 미국, 일본 등 선진국의 온실가스 감축기술들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연구하여 향후 우리나라 축산 여건에서 효율적인 수단들을 발굴하고 개발할 필요가 있음

3 전북특별자치도 축산분야는 사육두수 증가로 배출량이 계속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감축기술이 많지 않음

4 타 정부나 지자체의 온실가스 감축 등을 활용하여 향후 축산 악취 개선 및 환경개선 할 수 있는 방안 및 정책 개발 필요

12. 전라북도 소상공인 경영실태 및 지원사업 개선방안 (전북연구원)

‹‹ 요약 및 평가 ››

◇ 전라북도 소상공인 경영실태 분석을 통한 활성화 방안

□ 연구배경

○ 소상공인정책의 궁극적인 목표는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 경영안정을 통해 지속가능한 성장을 지원"하는 것임

○ 지역 소상공인 현황 및 경영실태에 대한 세부정보 파악함으로써 근거기반의 정책수립에 기여하고,

○ 전라북도 소상공인 지원사업의 개선방안을 도출함으로써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 및 안정적 경영환경 지원정책을 모색

□ 지원사업 개선방향과 과제



○ 대내외 경영환경 변화에 대한 모니터링을 통하여 소상공인이 안정적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

○ 소상공인 지원사업 간 통합·조정·연계 및 접근성 강화를 통해 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정책효과 극대화

○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 및 자생력확보를 위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정책 기반 마련, 소상공인 수요 맞춤형 지원

《 시사점 》

1. 지역소상공인단체 역할 확대 지원
2. 소상공인 정책지원 아카이브 구축
3. 단위형·규모형 소상공인 지원
4. 전북소상공인 등록시스템 구축·운영
5. 소상공인 성장사다리 구축
6. 소상공인 실태조사/소상공인 체감지수 개발
7. 사회보험료 지원/소상공인 둥지내몰림 방지

《 문화건설안전위원회 》

13. 전북대표관광지 육성사업 성과 및 발전방안 연구 (전북연구원)

《 요약 및 평가 》

◇ 주변 관관자원과의 연계・확산으로 대한민국 '여행체험 1번지' 기반 확충

1 추진배경

○ 시·군별 경쟁력 있고 특화된 거점 관광지 선정으로 관광경쟁력 강화

○ 전북 **대표관광지 후속사업 육성**을 위한 **추진방향 설정** 및 **추진전략 제시**

2 주요내용

○ 전북 **대표관광지 육성사업('24) 이후 발전 가능 관광자원 발굴** 및 **육성**

○ 기존 사업의 종합적인 평가, **시사점 도출을 통한 추진방향 설정**

- 후속사업 발굴 선정기준 및 후속사업 선정(안), 평가체계 국축 및 개선방안 제안

3 종합평가

○ 기존 지역관광 약점 보완 및 브랜드 가치 향상에 기여

○ 전북 각 시·군별 대표관광지 방문객 증가, 고용창출 및 수익 발생

○ **지역활력 증진 및 지역관광사업 지속성 확보**

○ 관광객 수용태세 정비, **지역브랜드 형성**, **관광지 매력도 증가**

4 후속사업 추진방향

○ **유사성·중복성 제거**, **지역만의 차별화된 관광콘텐츠 확보 강화**

○ **계절별 특징**을 살린 콘텐츠 개발로 **비수기 관광객 유입** 노력 필요

○ **대표관광지 및 주변관광지 연계점 확보**에 주력

《 시사점 》

1 국내관광 트렌드 맞춤 차별화된 체험형 관광콘텐츠 개발

2 대표관광지 선정시 '특정 테마' 제시 및 액티브 시니어 등 타깃맞춤 관광사업 발굴

3 계절성 극복 및 사계절 관광지화 전략 필요

4 지역경제 활성화 및 주민참여 포용형 복합관광공간 창출 필요

5 사업추진실적 평가 및 모니터링을 통한 효율적 개발성 창출

14. 저출산 극복을 위한 주거지원 방안 (국회예산정책처)

≪ 요약 및 평가 ≫

◇ 집 걱정 없이 아이를 키울 수 있는 여건조성을 위한 적극적인 지원 대책

1 추진배경

○ 주택가격 상승으로 결혼 및 출산 주저 요인 극복 방안 마련

○ **혼인 후 주택 대출 및 청약 요건 미혼에 비해 불리함 해소**

※ 소득요건 : (전세자금) 미혼 5천만원, 신혼 6천만원, (구입자금) 미혼 6천만원, 신혼 7천만원

2 주요내용

○ **(공공분야)** 혼인가구 중심 신혼부부 특별공급→**혼인 여부 무관 자녀 출산시 특별공급**

○ **(민간분야)** 생애최초 · 신혼부부 특별공급 시 출산가구 우선공급

○ **(공공임대)** **출산시 신규 공공임대 및 기존 공공임대 재공급 물량 우선** 지원

3 금융지원

○ 신생아 특례 구입자금 대출 신설, **기존 대비 소득요건 2배 수준 상향**

- (특례) 출산가구 1.3억 이하 / 자산요건은 기존 구입자금 대출과 동일 (5.06억 이하)

○ 신생아 특례 전세자금 대출 신설, 기존 대비 소득요건 2배 이상 상향

- (특례) 출산가구 1.3억 이하 / 자산요건은 기존 구입자금 대출과 동일 (3.61억 이하)

4 청약제도

○ **(기존)** 2인 가구 소득기준 1인 가구 소득기준의 2배보다 낮아 청약 시 불리

○ **(개선)** 추첨제 신설, **맞벌이가구 월평균소득 200%기준 적용**

- 민간주택 청약은 이미 **'소득제한 없는' 추첨제 존재** (현행기준 유지)

○ 기존 청약 방식에서 벗어나 **부부 개별신청 허용**, **다자녀 기준 완화**, **배우자 이력 규제 미적용**, **배우자 청약통장 가입기간 합산** 등 청약기회 확대

≪ 정책효과 ≫

○ 출산가구의 주택공급, 금융지원 강화 및 청약제도 개선을 통한 저출산 극복 방안 마련

《 교육위원회 》

15. 지방교육재정 특별교부금 국회 보고 의무화 및 향후 과제('23.12.)(국회입법조사처)

1. 특별교부금 국회 보고 의무화

○ 특별교부금의 전년도 운영 결과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2023. 10. 24.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이 개정

○ 지방교육재정에 대한 국민-정부 간의 정보의 비대칭을 해소하고 건전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함

2. 특별교부금 제도 개선 요구 및 후속 조치

○ 특별교부금은 재원의 특성상 **교육부장관의 재량이 상대적으로 높아, 배분과 집행과정에서 나타나는 임의성, 비합리성에 대한 지적이 제기**

- 특별교부금은 ①국가시책사업, ②지역교육현안, ③재해대책 수요에 대하여 6:3:1의 비율로 재원을 구분한다고만 규정하고, 교부의 기준이나 심사 방법 등에 대해서는 행정부에 위임하도록 설계

○ 따라서 특별교부금의 규모 조정, 재원 투입의 합목적성을 제고, 배분과 관리 및 운영의 합리성·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 개선 요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짐

(1) 2008년 감사원 감사보고서

○ 2008. 5. 28.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을 비롯한 복수의 단체**가 **특별교부금을 자의적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이유로 공익감사를 청구**

- 감사원은 ①특별교부금 국가시책사업심의회 외부위원 수의 확대, ②심의회 운영의 엄정성 확보, ③사업평가 및 집행 결과의 보고 시스템 개선, ④교육청의 대응투자 확보, ⑤교육청의 특별교부금 사업별 집행결과 보고 및 적정성 검토 체계 마련 등 제도 개선을 요구

(2) 2010년 국민권익위원회 권고 개선안

○ 특별교부금에 대한 예산심의·결산심사 등 재정통제 장치가 미비, 운용의 불투명성에 대한 비판이 지속되어 2010년 **현행법령에 대한 부패영향평가 실시**

- 수요 재원, 관리·운영체계, 부패통제 장치에 대한 개선 권고

(3) 2015년 기획재정부 예산집행지침 개정

○ 기획재정부는 **2015년 지침**에서 「지방교부세법」 제4조제2항제2호에 따른 특별교부세와 함께 **특별교부금에 관한 지침을 구체화**

(4) 2017년「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개정

○ 2017. 12. 30.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3조제3항을 개정, **특별교부금의 재원을 교부금 내국세분의 4% → 3%로 축소**하고 나머지는 보통교부금으로 전환

3. 보고의 내실화 방안

○ **국가시책사업 수요의 경우 사업(프로그램)별 예산제도에 따라 정책-단위-세부 사업을 구분·보고하도록 정비, 사업별 산출 및 성과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보고**

○ **지역교육현안 수요의 경우 선정 과정 정보를 함께 보고하도록 정비 필요**

4. 나가며

○ 사후 통제로서 국회 보고 의무화의 효과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사전 통제 장치가 마련 필요**

- 전년도 특별교부금 사업에 대한 지적·검토가 반영되려면 **당해 회계연도의 특별교부금 운영계획 함께 보고**
- 국가시책사업심의회(외부위원 1/2 이상)를 보완하여 사전심의 기구에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추천하는 전문가를 포함하는 방안 마련**

16. 학교수업 내 에듀테크 활용 정도가 중학생의 교육적 성장에 미치는 영향 분석 ('23.11.)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연구정보원)

Ⅰ. 서 론

○ 국내 수업현장에서 에듀테크를 활용한 교육의 효과성을 밝힌 연구는 드문 실정

○ 국내의 에듀테크 효과성 연구들은 대체로 단기간의 실험 상황에서 소수의 사례를 바탕으로 분석

○ 본 연구에서는 학교에서 일상적으로 활용되는 에듀테크의 적용 정도가 실제 학생들의 교육적 성장에 도움을 주고 있는지 아래의 내용을 중심으로 효과성을 연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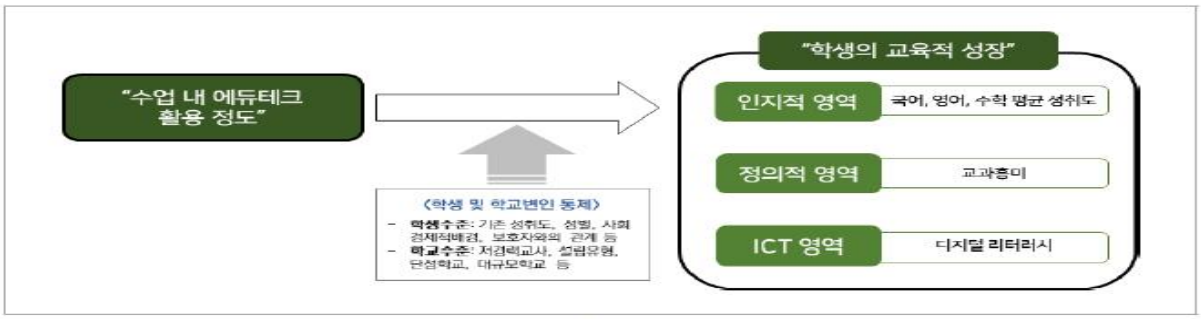
첫째, 학교수업 내 에듀테크 활용 정도는 학생의 교육적 성장(학업성취도, 교과흥미, 디지털 리터러시)에 영향을 미치는가?

둘째, 위 효과가 유의하다면 에듀테크 활용 정도의 효과가 기존 성취도에 따라 차이가 있는가?

Ⅱ. 연구방법

1. 연구모형

○ 학교수업 내 에듀테크 활용 정도가 중학생의 교육적 성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하고자 본 연구는 다음 [그림 1]과 같이 연구모형을 설정



[그림 1] 연구 모형

○ **인지적 영역**에서는 국어, 영어, 수학 **평균 성취점수를 활용, 정의적 영역**에서는 국어, 영어, 수학 **교과에 대한 흥미**를, ICT **영역**에서는 **디지털 리터러시를 효과 변인으로 설정**

2. 분석자료 및 변인

○ 분석자료는 『서울학생종단연구 2020』 2차년도 중학교 패널(Middle School & Beyond; MS&B) 데이터를 활용

○ 최종 분석에 활용된 사례 수는 서울시 중학교 98개교에 재학하고 있는 2학년 학생 총 4,663명임

Ⅲ. 분석결과

○ 학교수업 내 에듀테크 활용 정도가 학생의 교육적 성장에 긍정적 효과를 나타내는지 인지적·정의적·ICT 영역이라는 세 가지 측면에서 살펴보고, 기존 성취도에 따라 이 효과성에 차이가 있는지 상호작용항을 투입·분석함

1. 인지적 영역: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효과

○ 학생의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효과에 대하여 무조건모형(null model)을 분석한 결과 **학교수준 분산이 통계적으로 유의**

○ **연구모형 결과**를 살펴보면, **에듀테크 활용 정도가 높을수록 중학생의 학업성취도는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남**

- 기존 성취도에 따른 에듀테크 활용 정도의 효과는 없는 것으로 나나탐

○ **기존 성취도나 사회경제적배경(SES)이 높고, 수업태도가 긍정적, 디지털기기 의존도가 낮을수록 중학생의 학업성취도 점수가 높음**

2. 정의적 영역: 교과흥미에 미치는 효과

○ 학생의 교과흥미에 미치는 효과를 무조건모형(null model)부터 살펴보면 **학교수준 분산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여 다층모형을 적용하여 분석

○ **중학생들의 교과흥미에는 에듀테크 활용 정도의 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남

3. ICT 영역: 디지털 리터러시에 미치는 효과

○ 학생의 디지털 리터러시에 미치는 효과를 살펴본 결과, 무조건모형(null model)에서 **학교수준 분산이 통계적으로 유의**함

○ **연구모형 결과, 학교수업 내 에듀테크 활용 정도가 클수록 학생들의 디지털 리터러시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남

○ 에듀테크 활용 정도와 기존 성취도의 상호작용 효과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남

- **기존 성취도가 낮은 학생**들에게 **에듀테크 활용에 따른 디지털 리터러시 함양 효과가 더 극대화됨**

Ⅳ. 결론

○ 본 연구의 주요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표 5> 참고).

<표 5> 연구결과 요약

	[인지적 영역] **학업성취도**	[정의적 영역] **교과흥미**	[ICT 영역] **디지털 리터러시**
학교수업 내 에듀테크 활용 정도	(+) - 에듀테크 활용 정도가 많을수록 학생의 학업성취가 높아짐	× - 에듀테크 활용 정도에 따른 효과가 나타나지 않음	(+) - 에듀테크 활용 정도가 많을수록 학생의 학업성취가 높아짐
기존 성취도에 따른 영향력 변화	×	×	- 기존 성취도가 낮은 경우 에듀테크 활용 정도의 긍정적 효과가 더 크게 나타남

주. (+)는 해당 종속변수에 대한 정적 효과를, ×는 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음을 의미함

○ **인지적 측면**에서 학생의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에듀테크 활용 정도의 효과는 **학교수업에서 디지털 기기를 적용한 에듀테크 활용 수업 정도가 많을수록 학생들의 주요교과(국어, 영어, 수학) 성취도가 더 높게 나타남**

○ **정의적 영역 측면**에서 **교과흥미에 있어서는 학교수업 내 에듀테크 활용 정도가 효과가 없는 것**으로 분석

○ 학교수업 내 **에듀테크 활용 수업의 효과**가 학생의 기존 성취도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지 살펴본 결과, **디지털 리터러시에 한해서만 그 차이가 유의**한 것으로 분석

- **기존 성취수준과 상관없이 학교수업 내 에듀테크 활용 정도가 높을수록 서울 중학생들의 학업성취도는 전반적으로 높아지는 경향**

○ **연구결과**는 **에듀테크 활용 교육 확대라는 현 교육부 및 서울특별시 교육청의 정책 방향성이 어느 정도 학교현장에 긍정적 효과로 발휘**

- 학교에서 에듀테크 활용 수업이 보다 확산될 수 있도록 **교원 대상 에듀테크 관련 워크숍, 매뉴얼 개발 등의 지원 필요**

○ 그러나 단순히 기기 보급에만 집중하기보다 **체계적인 유지·관리 시스템 구축, 학생들의 지나친 디지털 기기 의존을 방지하기 위한 교육 필요**

17. 2023 교육기본 통계로 살펴본 한국 교육 현황 (한국교육개발원)

≪ 요약 및 평가 ≫

◇ 2023년 교육기본통계 조사 결과가 발표되었음. 주요 결과와 그 의미를 살펴봄

□ 문제진단

○ 유치원 학생 수의 감소 추세가 여전함. 공립유치원이 신설됨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사립 유치원이 폐원하는 상황은 매우 우려스러운 현상임. 이는 유아교육 정책에 시사하는 바가 크며, 초·중등교육에 바로 영향을 미칠 요인으로서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할 부분임

- 유치원의 감소폭(121개↓)이 크고, 초·중등학교 19개교 증가, 고등학교 6개교 증가, 기타* 5개교 증가하여 전년 대비 91개교 감소

* 기타에는 특수학교, 고등공민학교, 고등기술학교, 각종학교, 방송통신중·고등학교가 포함됨

○ 다문화 학생 수의 증가 추세가 지속되고 있음. 특히 국내출생의 비율이 매우 높다는 점은 시사하는 바가 큼

- 다문화 학생 수는 181,178명으로 전년대비 12,533명(7.4%↑)증가
- 국제결혼가정(국내출생)의 다문화 학생은 전체 다문화 학생의 71.7%였음

○ 학업 중단율이 증가하고 있음. 고등교육기관 학생 수가 여전히 감소하고 있으며 지속될 전망임. 이는 고등교육기관의 생존을 위협하는 요인임

- (학업중단율) 2022년도 초·중·고교 학생의 학업중단율은 1.0%(52,981명)로 전 학년도(0.8%, 42,557명)대비 0.2%p 상승
- (고등교육기관 학생 수) 전체 재적학생 수*는 3,042,848명으로 전년(3,117,540명) 대비 74,692명(2.4%↓)감소

* 재적학생 수 = 재학생 수 + 휴학생 수 + 학사학위 취득유예생 수

○ 학위과정 외국 학생은 2015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비학위과정 유학생은 코로나19의 영향으로 감소하였다가 2022년부터 2년 연속 증가하고 있음

- (학위과정 외국 학생 수) 181,842명으로 전년(166,892명) 대비 14,950명(9.0%) 증가하였음
- (비학위과정 외국 학생 수) 52,602명으로 전년(42,089명) 대비 10,513명(25.0%) 증가하였음

□ 정책제언

○ 학생 수 예측에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요구됨. 외국인 가정이나 중도입국 관점에서의 교육뿐만 아니라 이제는 내국인 관점에서의 다문화 교육 정책 또한 충분히 고려할 필요가 있음

○ 학업 중단율의 증가는 코로나19로 인한 일시적인 감소 이후 다시 증가하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으나, 학업 중단 사유별 변화 추이, 고등학교의 사유별 학업 중단자 수에 비추어 볼 때 공교육을 저해하는 우려스러운 현상으로도 이해할 수 있어 관련한 다양한 데이터와 함께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음. 고등교육기관 학생 수의 감소 추세는 지속될 전망이므로 외국 학생 수 변화의 분석과 함께 고등교육기관의 생존 전략을 꾀할 필요가 있음. 추가적으로 교육대학과 사범대학의 학업 중단율 또한 교원의 위상과 관련하여 주목해야 할 지표임

18. 지방재정과 지방교육재정의 합리적 운영방안 (한국지방행정연구원)

Ⅰ.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2025년 이후 지방교육재정을 둘러싼 큰 변화가 예상되는데, 먼저 취학전 유아 교육과 보육이 통합되어 기존의 지자체 사무였던 보육사업이 교육청으로 이관될 것이고,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Regional Innovation System & Education)가 시행될 예정임

○ 이처럼 생애주기별로 대변화가 예고된 가운데 지자체 차원에서 관련된 향후 수요를 주시하고 대응할 필요가 있음

○ 이에 본 연구에서는 변화 상황을 바탕으로 지자체의 추가 재정수요를 분석한 후 향후 지자체의 보육사업과 고등·평생교육사업이 성공적으로 시행하기 위한 지방재정과 교육재정 운영의 합리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Ⅱ. 주요 연구내용

○ 교육재정 환경의 변화와 지자체의 재정부담을 생애주기별로 분석한 결과, 유·초·중등기의 교육재정은 매우 여유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유보통합과 RISE로 인한 재정수요는 크게 팽창될 것임을 알 수 있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음

○ 첫째, 유·초·중등의 경우 현재 지방교육재정교부금과 지자체로부터의 전출금으로 조성된 지방교육재정이 여러 선행연구와 감사원, 국무조정실의 지적, 언론보도, 잉여금 규모 등으로 살펴볼 때 매우 비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이는 교육부의 '2023년도 보통교부금 국회보고 자료'(2023.3)에서 확인되고 있는데 기준재정수요 중 재정결함보전 약 13조 4,700억원 중 12조 6,500억원을 재정안정화지원금으로 편성, 수요를 맞추고 있는 것으로도 확인됨

○ 둘째, 반면 유보통합에 따라 2025년도부터 보육사업이 교육청으로 모두 이관, 기존에 지자체 사업으로 매칭하던 보육관련 국고보조사업 지방비를 모두 교육청으로 전출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여 예산은 그대로 집행하면서 실적은 안되는 지방재정 상황이 예측됨

- 특히 민선 지자체장의 입장에서 매우 중요한 보육분야의 사업을 하지 않을 수 없다는 특성상, 사실상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은 커질 수밖에 없다고 보여짐

○ 셋째,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가 2025년도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인 가운데 RIS 등 기존의 5개 대학재정지원사업과 타부처 대학재정지원사업들이 지자체 중심 재정사업으로 이관될 예정임

- 이 경우, 본 연구의 분석결과 지자체 입장에서는 국고보조사업 형태로 사업들이 운영될 것이며, 이 때 지방비를 매칭하게 될 것임
- 국고보조사업의 경우 그 파급효과와 사업성격에 따라 지방비 매칭율이 달라지는데, 현재의 RISE 사업은 국비:지방비 비율이 70%:30% 정도 될 것으로 분석됨
- 따라서 2025년도부터는 RISE 사업을 지자체 중심으로 운영할 경우 RISE 사업 예산규모의 30%를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게 되어 RISE 시행에 따른 지방재정 부담은 전체 RISE 사업의 30%만큼 가중될 것임

○ 이러한 상황에서 다양한 교육재정의 환경변화와 함께 특히, 유보통합과 RISE를 성공적으로 시행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지방교육재정 운영방식은 개선되어야 할 것이며, 이를 지방재정과 연계하여 다음과 같이 세 가지 정도의 대안을 제시

Ⅲ. 지방재정과 지방교육재정 운영의 합리화 방안

1) 지방교육세의 사용범위 확대

□ 교육세와 지방교육세 사용범위 확대 기조 형성

○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정부는 2025년도부터 교육세입의 50%(유특회계 전출금 제외)를 고등·평생특별회계에 투입하겠다고 발표하였음

○ 또한 교육부와 기획재정부(2022)는 공동으로 초·중등 교육과 고등교육 재정 투자 간의 불균형이 심각한 상황이라고 인식하면서 지방교육재정 교부금 개편이 필요하다고 인지하고 있음

- (기획재정부 의견) 내국세에 연동된 교육교부금은 지금까지 유·초·중등을 관할하는 교육청만 쓸 수 있었는데 기획재정부는 초·중등 교육과 고등교육재정 투자 간의 불균형을 해소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함
- (교육부 의견)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본격적으로 대비하기 위해 교육재정 부문 간 균형과 상생 및 발전이 중요하다고 밝히면서 교육재정을 통합적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였음

○ 지방교육세의 경우도 현재는 세수 전체를 교육청에 전출하여 유·초·중등교육에만 사용토록 하고 있음

- 그러나 전술한 바와 같이 2025년도부터는 지자체 주도로 고등·평생교육을 운영하는 RISE사업 시행에 따라 지방비 투입은 불가피한 상황임

□ RISE 사업에 지방비 매칭 의무화 제시

○ (지자체 자체재원 추가) RISE 시범지역 운영 안내서(교육부, 2023.3)를 살펴보면 재정투자 및 집행계획에서는 기존 RIS 자율과제 등의 예산에 자체재원을 추가하여 RISE 방식의 지원을 추진토록 되어 있음

○ (RIS사업 지방비 30%) 한국연구재단에서 안내하고 있는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사업(RIS) 홈페이지에서는 총 사업비의 30% 이상은 지방비로 부담할 것을 제시하고 있음

○ (HIVE사업 지방비 10%) 한국연구재단의 고등직업교육거점지구 사업(HIVE)안내 홈페이지에서도 전체 사업비의 10%는 지방비에서 매칭하도록 되어 있음

□ 지방세 법정전출금 50%의 사용범위 확대

○ (중앙처럼 지방도 50% 고등·평생교육에 활용) 중앙정부에서 교육세입의 50%를 고등·평생특별회계로 전출하기로 한 바와 같이 지방에서도 지방교육세 등 법정전출금의 50%를 고등이나 평생교육으로 사용대상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 이 때 50%의 대상은 크게는 두 가지 안으로 검토할 수 있을 것임

- 1안은 지방교육세와 시도교육청 전출금의 50%인데, 지방교육세는 고등과 평생교육에도 세수를 활용하자는 취지이고, 시·도 전출금은 처음 전출할 당시와는 달리 교육청 재정이 여유가 있는 상황에서 이 또한 지자체 수요로 급증할 고등·평생교육사업 등으로 전환하자는 취지임
- 2안은 학교용지부담금이나 교육급여 보조 등 특수목적 전출금을 제외한 법정 일정비율 전출금{지방교육세, 담배소비세의 45%, 시·도세 전출금(서울 10%, 광역시·경기·제주 5%, 그 외 도 3.6%)} 전체의 50%를 고등·평생교육, 보육사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 교육재정 변화와 고령화가 심화되고 있는 지자체에서 그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공간을 열어두는 방안의 검토가 가능할 것임

2) 지방재정의 교육청 전출방식 개선

□ 국세 및 지방세 일정비율 전출방식의 개선 필요성 대두

○ 국회예산정책처(2022)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산정 방식이 경직적이고 예측 가능성이 낮으며 교육재정 수요와 부합되지 않는 점 등을 문제로 지적하였음

- 구체적인 논거로 1) 초중등교육 예산을 집행하는 시·도교육청의 재정 여력은개선되는데 중앙 정부의 재정 부담은 증가하고 있으며

2) 초·중등교육 부문과 고등교육 부문 간 정부지출 비중의 불균형이 국내적·국제적으로 심각하다는 점 등을 들음

○ 개편 방안으로 1) 내국세가 아닌 보다 안정적인 경상 GDP증가율에 연동되는 방식으로 개선하고 학령인구 변화 추이를 반영하는 방식 2)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총액을 교육재정 수요의 국제비교 지표에 기반한 산정방식으로 개선하는 방안 3) OECD 상위 30% 혹은 50% 국가의 초·중등 교육재정 지출 비중을 활용하여 교부금 규모를 산정하는 방식 등을 제안함

○ 지방재정으로부터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금의 경우도 현재의 지방세 일정비율 방식에서 수요에 대응한 보조방식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음

□ **교육수요 대응 보조방식으로의 전환 검토**

○ (교육청 기본 운영비는 기 확보) 교육청의 세출예산 중 인건비나 인적자원운용, 기관운영비, 재무활동비 등 유·초·중등의 기본적인 학교운영비는 이미 중앙정부로부터의 이전수입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충당이 되고 있는 상황임

○ 따라서 지자체 이전수입의 경우도 용도를 특정하지 않은 일반재원으로 지방세 수입의 일정비율을 이전할 필요가 있느냐는 의문점이 있음

□ **지방세 수입의 일정율 전출 방식을 수요 비례 보조방식으로 변화 모색**

○ 유보통합에 따른 관련 국고보조사업 지방비의 교육청 전출, 고등평생교육사업의 지자체 사무화에 따른 추가수요 발생에 따라 초중등교육 지원을 위해 경직적으로 일정비율을 지자체에서 교육청으로 전출하고 있는 교육비 전출금을 일정 비율이 아닌 교육수요에 따른 전출로 변경할 필요가 있음

○ 현재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교육 관련 경비는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규정」에 의해서도 지출하고 있는데, 제2조에서 보조사업의 범위를 6개(학교의 급식시설·설비사업, 학교의 교육정보화 사업, 학교교육과정 운영의 지원에 관한 사업 등)로 구분하고 있음

○ 현재는 교육경비보조사업을 6개의 해당 범위에 대해서만 지출하고 있으나, 사업의 범위를 특정하지 않고 교육청과 교육지원청 전체 사업들에 대해서 지자체가 보조사업 형태로 지원하는 방안도 모색할 필요가 있음

3) 지자체 주도의 RISE 예산사업 시행 실현

□ 지자체 주도의 RISE 예산 시행 준비 및 지원 필요

○ RISE 사업의 핵심 키워드는 '지자체 주도'이지만, 2023년 3월에 발표된 RISE 운영 안내서를 살펴보면 RISE 예산을 운영함에 있어서 시·도의 역할은 거의 드러나지 않고 있음

○ 실제 교육부 담당자는 "그동안 교육부가 대학지원사업을 기획하면 한국연구재단에서 독립적으로 대학 선정·평가를 해 온 것처럼, 라이즈센터가 시·도로부터 독립적인 기구가 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예산도 시·도가 아니라 라이즈센터에 지급할 것"이라고 함(조선일보, 2023.3.8.)

○ 그러나 시·도 RISE 센터는 시·도가 비영리법인을 설치하거나 선정하여 운영하는 공기관으로서 실제 본격적으로 운영하게 되면 시·도는 출연금 및 운영비 등을 지원하게 되는데 실제 시범지역으로 선정된 부산(부산테크노파크), 대구(대구정책연구원), 충북(충북연구원) 등 7개 지역은 모두 기존 시·도 출연기관임

□ RISE 사업의 포괄보조방식으로 지자체 주도 실현

○ RISE 사업예산 운영에 있어서 RISE 시범지역 운영안내서대로 2025년부터 전체 시·도에서 시행된다면 사업의 운영방식은 국고보조 형태로 갈 가능성을 예측할 수 있음

○ 이 때 특정 국고보조사업과 같이 사업내용에 대해 매우 구체적으로 교육부에서 제시를 하게 될 경우 지역-대학간 협력으로 인재양성-취·창업-정주에 이르는 선순환 발전 생태계 구축이라는 모종의 목적달성이 힘들어질 수 있음

○ 따라서 RISE 사업의 국고보조 형태는 포괄보조금(block grants) 방식으로 하여 유사사업을 블록화하고, 블록에 포함된 사업에 대해서는 용도를 제한하지 않고 보조금을 교부하는 형태로 가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Ⅳ. 기타 참고자료

Ⅳ. 기타 참고자료

1. 광역의회 교섭단체의 의의와 과제 ('23.11.) (한국지방행정연구원)

《교섭단체의 의의와 현황》

○ 교섭단체란 일정한 규모 이상의 의원들이 의정활동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국회법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및 의회 규칙에 따라 구성하는 원내 정파를 말함

○ 즉, 교섭단체는 동일한 정당소속의 의원 또는 동일한 정치적 이념과 목표를 지향하는 의원들로 구성되는 의회 내 정치단체를 말함

《광역의회 교섭단체의 과제》

○ 현행 광역지방의회 자치법규(조례 및 규칙)에 따른 교섭단체 구성의 현황을 살펴보면 사실상 다수당에 해당하는 원내정당 수준에 머무르고 있음

* 1당 체제의 교섭단체 운영이 아닌 다수의 교섭단체가 구성될 수 있도록 구성요건 기준을 완화할 수 있는 전체 광역지방의회 교섭단체 간 논의 필요

○ 국회 교섭단체의 경우 「국회법」 제34조(교섭단체 정책연구위원)를 통해 인적 지원의 근거를 마련할 수 있고, 「정치자금법」 제27조(보조금의 배분)를 통해 재정지원 근거를 마련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남

○ 반면, 광역지방의회의 경우 이를 지원하기 위한 상위법의 근거 마련이 부재

○ 「지방자치법」 개정을 통해 구성·운영의 근거를 규정한 후, 광역의회별 법규 제·개정 토대 마련 필요

* 상위법 부재로 광역의회의 교섭단체는 형식적인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만 규정할 뿐, 권한과 역할, 지원 등의 내용은 규정 마련이 어려운 실정

○ 광역의회 교섭단체의 경우 권한과 역할에 관한 사항이 자치법규 내 제한적으로 규정되어 있고, 그 범위 또한 제각각인 것으로 나타남

○ 인적 지원의 경우 타 부서 직원을 비공식적으로 지원받는 제한적 지원을 받고 있으며,

○ 재정지원의 경우 지원이 가능한 규정이 어느 곳에도 마련되어 있지 않은 실정

《광역지방의회 교섭단체 활성화 방안》

① 상위법 상의 교섭단체 구성 · 운영 등 제도기반 규정 마련

②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 기준」 개정을 통한 운영 예산 확보 근거 마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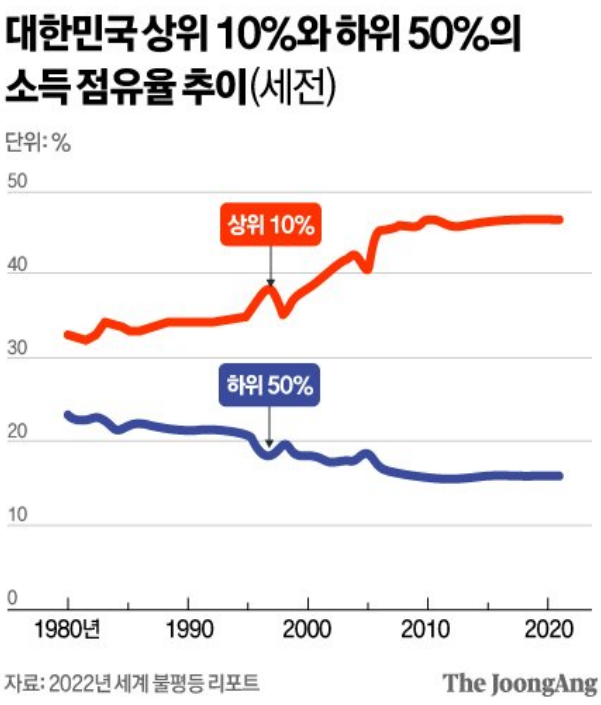
③ 단순 규정 명시가 아닌, 제 기능 수행이 가능토록 구체적 제도개선 규정 필요

- '교섭단체'에 대한 명확한 정의 규정
- 구성요건에 대한 최소 의원수(혹은 비율) 등의 원칙적 기준 마련
- 권한 및 기능 증대를 위한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의장과의 직무협의 규정 마련
- 자치법규 상 통일된 형식으로의 교섭단체 규정 등

2. 노동시장 격차 해소가 교육 과열 · 저출산 해결 열쇠('24.1.11. / 중앙일보)

대한민국이 상위 소수가 더욱 많은 과실을 가져가는 '승자 독식 사회'화 되기 시작한 것은 1998년 외환 위기 이후다. 1995년 이전 대한민국의 상위 10%는 전체 소득의 35% 정도를 차지했다. 그런데 2000년 이후엔 이 수치가 45%를 훌쩍 넘겼다. 상위 1% 집중현상은 더욱 심각하다. 우리나라 하위 50%의 1인당 연간 평균소득은 약 1234만원인데, 상위 1%의 평균은 이들에 비해 무려 46배 많은 5억6000만원이다. 우리나라의 상위 1%에 대한 소득 집중은 지난 10년 급격하게 증가했다. 반면 미국, 일본, 프랑스는 모두 불평등이 다소 완화되었다.

- 한국 상위 1% 집중 심각 -



의과 대학의 인기가 하늘 높이 치솟은 것도 이즈음이다. 급기야 최근에는 초등학교 의대 준비반이 등장할 정도다. 왜 이토록 의사가 되고 싶어할까? 이유는 간단하다. 의사의 평생 소득이 다른 직종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기 때문이다. 종합병원 의사의 평균 연봉은 2억원이 훌쩍 넘는다. 개원의는 평균적으로 이들의 2배 정도 버는 것으로 추정된다.

한국노동연구원 홍민기 박사의 2016년 연구에 의하면 우리나라 상위 0.1% 최상위 고소득자는 대기업 임원 29%, 의사 22%, 금융업 종사자가 20%이다. 하지만 이 중에서 정해진 은퇴 연령이 없는 의사만이 오랫동안 안정적으로 고소득을 영위한다. 이것이 의대 광풍의 핵심 원인이다.

- 의사 정년 없고, 평생소득 높아 / 의대 광풍 핵심 원인으로 작용 -

- 언어·제도 탓,병원은 내수 중심 / 0.1% 의대 가는 사회 희망 없어 -

- 고임금 일자리 촘촘히 만들고 / 실손보험 개편 등 국가개입 필요 -

- 좋은 일자리, 미국이 한국의 15배 -

미국도 의사가 고소득을 누린다. 하지만 미국엔 로펌, 컨설팅, 정보기술(IT)업계의 다른 고소득 전문직 수가 많다. 대기업 일자리 수도 많다. 2022년 기준 포춘(Fortune)지 선정 글로벌 500대 기업 중 미국 기업이 136개인 반면 대한민국은 18개에 불과하다. 미국과 우리나라의 세계적 대기업에 고용된 인원은 각 1480만 명, 100만 명 수준이다. 미국 인구가 3억 3000명으로 우리보다 6.5배 많지만, 좋은 일자리 수는 15배나 많다. 이렇듯 좋은 직업들이 다양하게 존재하는 미국에서는 꼭 아이비리그나 그 수준의 대학을 나오지 않더라도 좋은 일자리에 대한 접근성이 높다. 그렇기에 우리나라와 같은 의대 광풍 현상은 존재하지 않는다.

의사와 다른 직군의 소득 차이만큼이나,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격차도 크다. 대기업의 연봉이 중소기업에 비해 높은 것은 만국 공통이지만, 우리나라에서는 그 격차가 유달리 크다. 2021년 한국경영자총협회 조사에 의하면 우리나라 종업원 500명 이상 기업의 임금은 5~9인 사업장 대비 약 2배다(2019년 기준). 반면 일본은 1.3배, 미국은 1.5배, 프랑스는 1.6배 수준이다. 더구나 이들 국가는 그 격차가 줄고 있지만, 우리나라 대기업-중소기업 격차는 점차 커지고 있다.

- 직종 · 사업규모별 소득격차 지나쳐 -

독보적 고소득 직종인 의사가 되기 위한 유일한 길은 의과대학에 가는 것이고, 연봉이 훨씬 높은 대기업에 입사할 수 있는 확실한 길은 명문대에 입학하는 것이다. 극한 경쟁과 과도한 사교육비 지출로 요약되는 대한민국 교육 과열의 근본 원인이 바로 이러한 직종별, 사업 규모별 큰 소득 격차에 있다.

격차 자체를 부정하자는 것이 아니다. 건강한 격차는 필요하다. 그러나 그 격차가 지나친 것이 문제다. 격차가 클수록 자녀 교육에 투자해서 명문대 입학에 성공했을 때 누리는 이득이 크다. 그러므로 교육에 대한 과잉 투자는 학부모와 학생의 입장에서 자연스러운 선택이다. 반면 그 격차가 크지 않다면 무리하면서까지 극한 대입 경쟁에 뛰어들 필요가 없어진다. 그리고 지나치게 과열된 교육은 모두를 불행하게 하여 저출산의 주요 원인이 됨은 물론이다.

-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 진짜 해법 -

상위 0.1%의 인재들이 의사가 되는 현실 또한 국가적 손해다. 가장 유능한 인재들이 일하는 병원 산업은 내수 시장 중심이다. 의료에는 언어, 문화, 제도의 장벽이 존재한다. 그렇기에 소수의 외국인 진료와 일부 병원의 해외 진출이 사실상 병원 산업이 가진 확장성의 전부다. 우리 사회의 가장 뛰어난 인재는 고부가가치 제조업이나 기술 기업에서 혁신을 통한 생산성 혁명에 투입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세계적 제조업·기술 기업은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수출을 늘려 국가 발전의 중추적 역할을 한다. 결국 무한 경쟁으로 사회의 비효율성을 초래하는 교육 문제 해결의 열쇠는 노동시장의 지나친 격차 해소에 있다. 어떻게 해야 하나? 우리는 입시제도와 교육 정책의 변화만으로는 백약이 무효함을 이미 알고 있다. 근본적인 이유가 해결되지 않았는데 과열이 사그라들 리 만무하다. 누군가는 고소득자 세금을 올리자고 선동할 수 있겠지만, 한국의 소득세 최고구간 세율은 (지방세 포함) 49.5%로 세계 최고 수준이다.

무엇보다 더 많은 고임금 일자리가 촘촘하게 존재해야 한다. 즉 고부가가치 과학기술 제조업 및 서비스업 육성이 중요하다. 현행 제조업 일변도인 산업 구조의 다양화도 필요하다. 전국경제인연합회의 2022년 분석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서비스업 일자리의 30.0%가 도소매 및 숙박·음식업 등 저부가가치 산업에 몰려있고(OECD 9위),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 등의 고부가가치 지식기반산업 비중은 6.2%로 낮은 편이다(OECD 28위).

기울어진 운동장을 좀 더 평평하게 하는 적절한 국가의 개입도 필요하다. 지난 20년간 다른 전문직에 비해서 의사의 소득만이 유달리 증가한 중요한 이유가 실손보험이다. 병·의원 이용 시 본인부담금이 대폭 줄거나 심지어 공짜가 되니 의료 이용이 폭발적으로 늘었다. 상당수는 도덕적 해이에 기반한 불필요한 의료 이용일 가능성이 높다. 이는 건강보험재정 악화와 의사 수입의 확대로 이어졌다. 실손보험의 본인 부담을 대폭 늘려야 한다. 비급여 의료에 대한 가이드 라인도 필요하다.

또한 연구 개발에 종사하는 과학기술인의 보상을 늘려야 한다. 적어도 공공기관에서는 과학기술인의 임금을 올리고 은퇴 연령을 늦출 수 있을 것이다.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을 단순히 이윤을 나누어 가지라하는 방식은 하수다. 중소기업이 자체적으로 생산성을 올릴 수 있도록 정부와 대기업이 돕고, 나머지는 시장기능에 맡겨야 한다.

기억하자. 승자 독식의 사회 구조가 변하지 않는 한 과도한 사교육 투자도 세계에서 제일 낮은 출산율도 해결이 요원하다. 지나치게 기울어진 운동장엔 미래를 위한 건물을 세울 수 없다.

- 김현철 홍콩과학기술대학 경제학과·정책학과 교수, 의사